



2020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KBS PUBLIC SERVICE MEDIA

더불어 소위 ‘언택트(Untact:비대면)’ 환경에서 공영 미디어에 부여된 새로운 책무들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첫째, 미디어 생태계가 고도화·상업화 하면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KBS의 공적 가치를 방송법과 KBS의 설립 목적에 근거하여 ‘KBS 방송규범’으로 명시함으로써 제작자들이 자신의 책무를 보다 분명하게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KBS 방송규범을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 ‘공정성’, ‘인권의 존중’, ‘사회통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평화공존·통일지향’, ‘글로벌화와 국제협력의 증진’ 등 6가지로 세분하여 KBS 제작자가 부당한 외부의 압력에 영향 받지 않도록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공정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작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통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KBS 공론장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평화공존과 통일지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강화된 성인지 감수성과 시청자의 높아진 인권 의식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항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강화하였고, 소수자 차별 방지의 대상을 이주민과 외국인, 성소수자, 다양한 가족형태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형사 피의자 초상 공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사회의 재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질병을 ‘재난’에 추가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취재·보도시 제작자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준칙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감염병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저작권 이슈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저작권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제작자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저작권법을 반영하고 판례 및 관련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작, 유통할 경우 제작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상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고, ‘방송심의회와 평가’에는 변경된 KBS 내부의 심의절차와 방법을 실었으며, 부록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의 준거가 되는 상위 규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청자의 높아진 차별금지 인식과 강화된 성인지 감수성 추세를 반영하여 <방송언어가이드라인>과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부록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PD, 기자, 변호사, 연구원 등 제작자, 법무실무자, 연구자가 참여하여 편집위원회를 꾸림으로써 제작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약 6개월 동안의 개정 작업을 마치고, 『2016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의 편집위원을 맡았던 학자의 자문도 거쳤으며, 마지막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완성하였습니다. 편집위원회에 참여한 직원들, 공영미디어연구소 관계자, 그리고 자문교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S 제작자는 개정된 『2020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내재화하고 이를 제작의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KBS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신뢰 제고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년 9월 3일 제57회 방송의 날

KBS 사장 양승동



목차

발간사 ...	3
01. 가이드라인의 의미 ...	9
02. KBS의 방송규범 ...	11
03. 사실, 의견, 진실 ...	21
04. 표현과 윤리 ...	23
05. 소수자 차별 방지 ...	29
06.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	35
07. 장애인 ...	41
08. 취재와 인권 ...	47
09. 여론조사 ...	85
10. 오프 더 레코드와 풀 취재 ...	93
11. 인터뷰 ...	99
12. 해외취재 ...	107
13. 편집과 포스트 프로덕션 ...	111
14. 출연자 ...	121
15. 생방송 ...	127
16. 정치와 선거 ...	131
17. 경제 ...	151
18. 문화와 예술 ...	155
19. 자연 ...	159
19-1. 동물 출연 ...	163-1
20. 환경 ...	163



목차

21. 음식과 조리	169
22. 기술, 생활과학, 소비자	173
23. 재난방송	177
24. 스포츠	191
25. 영상자료의 이용과 처리	195
26. 소셜 미디어 이용 원칙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	203
27.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211
28. 방송 이벤트와 협찬	217
29. 저작권	225
30. 외주제작 및 외부 제작요원	247
31. 방송심의와 평가	251
32. 방송의 사후 처리	255
33. 시청자 서비스	259
34. 방송에 의한 피해 구제 및 분쟁의 처리	263
부록	
■ 방송기준	277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81
■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317
■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안내서	323

으로써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KBS의 제작활동을 보호하고, KBS가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를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제작자가 준수해야 할 내·외부의 규정과 법적 의무들이 관련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작자 모두는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이를 제작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대부분의 제작자들은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지만, 논쟁적인 사안을 비롯하여 특정한 사안은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벗어나 보다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제작자는 상급 책임자와 적극적으로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법률 자문이나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 이 과정에서 방송 책임자는 제작자를 보호하고 시청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1.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

KBS는 방송의 제작과 편성의 독립성을 국민과 시청자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흔히 방송의 자유로 통칭되는 이 자유는, 정보와 의견의 자유로운 유통이 있어 야만 진실이 밝혀지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됨으로써 민주사회의 유지와 발전이 가능하다는 역사적 교훈과 국민적 합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방송의 자유는 누구에게도 양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제작자는 이 방송의 자유라는 권리를 사려 깊게 행사하고 이를 침해하려는 모든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지켜 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자는 편성의 독립, 제작의 자율성을 위해 내외부의 모든 부당한 간섭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동시에 제작의 자율권만을 내세워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제작자가 제작과정에서나 방송종료 후,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협박을 받는다면 제작자의 전문가적 양식에 따라 판단하되 신속히 책임자와 협의하며,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만약 제작자와 방송책임자 사이에 관점이 달라 의견이 서로 엇갈릴 경우,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여 합리적인 의견 조정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송책임자는 회사의 법규와 사회적 통념, 윤리적 기준에 의거해서 제작자의 취재·제작 및 제반 방송활동을 지휘·감독하며 제작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도 이견이 잔존하여 이것이 방송활동에 심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KBS 방송 편성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KBS의 방송책임자는 방송의 자유와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제작자들이 권력에 맞설 때나 개인적인 용기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을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2. 공정성

KBS는 시청자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언론을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성, 전문성, 고품질과 함께 공정성을 추구한다. KBS가 추구하는 공정성은 특정 견해, 세력, 집단에 편향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구현된다. 즉 시청자가 특정한 사안을 편견 없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공정성은 정확성, 균형성, 다양성, 중립성과 같은 가치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진실성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고 구현된다. 제작자가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로 프로그램을 정직하게 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게 된다.

2-1. 정확성

KBS의 모든 보도 프로그램과 사실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정확성은 단지 사실을 확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사실에 기초한 정확성만을 내세우다가 사실의 전후관계나 전망, 판단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왜곡하거나 만들어 낸 자료를 사실로 제시하거나 현저하게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해서는 안 된다.

제작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실 확인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이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적

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뉴스 및 시사, 교양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도할 경우 확보한 자료의 진위를 검증하는 등 기초조사를 충실히 하여 사실의 정확성을 담보해야 한다.

- ① 가능하면 복수의 정보원을 확보해서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급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해 둔다.
- ② 제3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다룰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보원의 전문성, 진정성, 연관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통상 그 내용을 다른 정보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때 사실로 간주한다.
- ③ 속보나 특종 경쟁에 앞서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하지 않는다.
- ④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경우 사실성 확인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확인 가능한 자료나 취재원 등을 통해 그 사실이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에 방송한다.

2-2. 균형성

균형성은 특정 사안에 관련된 당사자의 견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의 폭과 비중을 고려하여 그 의견들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룰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2-3. 다양성

KBS는 대립되거나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관련된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을 편들지 않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이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복잡한 사안의 경우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전달하여 사안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상의 여론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념하여 상반되는 의견이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4. 중립성

중립성은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의 경우 대립되는 어느 한 쪽의 관점에 속하지 않도록 입장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KBS 제작자는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 관점에서 취재, 보도, 방송해서는 안되며 시청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해야 한다.

3. 인권의 존중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KBS의 방송과 표현의 자유도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방송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제약으로 본의 아니게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방송은 때때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 사회집단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작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각별히 유념한다.

- ①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혼인의 형태 등을 조롱의 대상,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이주민과 외국인,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 성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권익을 존중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차별적인 내용이나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③ 범죄사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관련 범죄나 성범죄 피해자,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KBS는 인권 사각 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4. 사회통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KBS는 사회의 이질성과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KBS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 직업,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정치적 입장이나 신념, 국적, 인종, 장애 및 신체조건, 성적 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혼인 여부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차별은 혐오를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방송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제작자는 차별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는 달리 은밀히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 차별의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는, 단순히 소수 대상 프로그램을 일부 편성한다는 차원을 넘어 KBS의 편성과 제작의 전 과정을 통해 일관되게 기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세대 간, 사회계층 간 정보기술 활용 능력차이로 인해 KBS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방송은 다양한 사회집단 및 세력의 '의견형성과 표현의 장'인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해소를 증개하는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정책 선택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립, 사회적 규범에 대한 세대 간의 의견 차이, 문화적 이해를 둘러싼 수용집단 간의 차이 등 집단 간 갈등의 요소는 무수히 많다. 협력과 조화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논리가 지배적이기 쉬운 여론형성 과정에서 KBS가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책무는 매우 크다.

따라서 KBS는 민주사회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는 상호교류를 통해 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혀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안전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찬반의 두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할 때, 현실적으로 KBS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경우 KBS는 민주사회의 '공론장'으로서,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이 자유롭게 전개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

KBS가 제공하는 공론장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전달되고 교류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찬반이 대립되는 중요한 사안일 경우, 그 사안에 대해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설명하고, 대립되는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하며, 토론 및 논의 과정을 가감 없이 방송하여 시청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찬반이 대립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판단

은 제작자가 상급 책임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5.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평화 공존·통일 지향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후세에 전승해야 할 일관된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우리 문화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며 시청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남과 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은 우리민족 앞에 놓인 최대의 현안이다. KBS의 프로그램은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남과 북의 평화공존과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한 방송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KBS는 통일지향 방송을 위한 체제 정비와 기준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통일에 적극 대비하며 통일 지향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한다.

- ① 북한은 언젠가는 통일되어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할 정치적 실체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가급적 편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실상을 전 해줌으로써 북한과 우리,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특히 외부에서 제공된 북한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 ② 북한의 중대한 정치변동 등을 보도할 경우 외신, 북한이탈주민, 중국 동포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의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북한 인사를 보도 할 때는 이름과 직책을 반드시 확인한다.

- ③ 통일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시 여러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인간 존엄성 존중, 민족의 이익 수호, 민족의 화해 증진 등의 가치를 판단의 우선 가치로 삼는다.
- ④ 통일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제작진이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청자가 듣고 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가감 없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⑤ 통일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주고,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시키며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6. 글로벌화와 국제 협력의 증진

글로벌화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KBS는 우리 사회 내부의 과제를 해결하는 일과 세계의 균형발전으로 인류의 복리를 도모하는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방향 설정에 유의해야 한다.

KBS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사회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고 품위 있게 소개하고, 국내 최고·최다의 핵심 콘텐츠 생산자로서 한류 등 문화콘텐츠의 확산과 공유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나날이 변모하는 지구촌의 모습과 정보를 시청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건전한 해외문화를 소개한다. 이를 위해 국제방송, 위성방송 등 국제 사회를 향한 방송채널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KBS의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사안을 다룸에 있어 인종, 민족, 국가 등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편향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작자는 한국과 세계,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시청자들이 항상 사려 깊고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을 우선해서 생각하고, 국제사회에서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정확한 맥락을 짚어 내야 한다. 또한 타민족의 입장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선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작자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인류애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소재를 적극 발굴, 프로그램화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나 관점은 어떤 식으로든 프로그램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현실 세계에서 얻은 사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조적이고 미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처리하는 것(연출) 자체가 제작자의 개입과정이고 또 그것이 제작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제작자는 양식과 양심에 따라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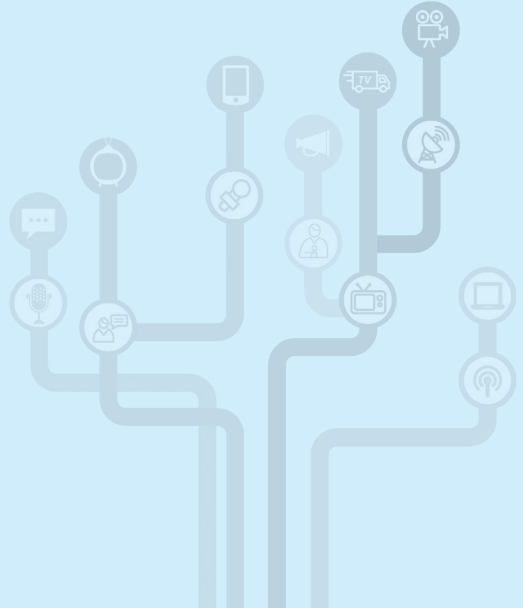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 ①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
- ② 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04

표현과 윤리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과 심의 위반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권에 관한 사항과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의 윤리성 문제이다.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는 취향의 차이에 관한 것에서부터 엄정한 윤리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종종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일으킨다.

KBS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존중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고 합의한 사회적 가치를 적극 수호해야 한다. 또한 KBS는 일반 시청자들의 정서와 윤리의식을 반영한 법률적 심의기구들의 판단을 존중하여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시청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방송 내용은 삼감으로써 시청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시청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도발적인 방송 자료를 방송하거나 공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준

들을 감안해 편집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명백하게 공지해야 한다. 성 표현, 폭력과 범죄, 거친 언어 표현, 선정적인 내용 등은 이러한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1. 성 표현

성은 인간의 본능적 속성이다. 성에 대한 대중의 취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 왔으며, 근래에는 성적 묘사에 대해 관대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 표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 프로그램에서의 노골적인 성 표현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필수적이고 그 정보를 방송할 만한 가치가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 한하며, 충격을 주거나 말초적 흥미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드라마 등과 같이 작품의 예술성이 존중돼야 할 경우에도 성에 관한 표현이나 묘사는 방송의 특성에 유의하여 시간대와 시청대상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① 가족 시청 시간대(평일 오후 7시~10시/토·공휴일 오후 6시~10시)에는 성관계의 묘사가 등장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성인 시청 시간대일지라도 지나치게 노골적이거나 변태적인 성행위 묘사, 비윤리적인 애정관계 설정은 삼가야 한다.
- ③ 성적 행동의 묘사는 분명하고 합리적인 편집방침에 따라야 하고 불필요하게 등장해서는 안 된다.
- ④ 성폭력에 관한 영상은 가능한 한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 ⑤ 드라마 내용의 흐름 상 필요하거나 실제 사건을 재연함에 있어서도 사실성의 추구에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불쾌하거나 충격적인 성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⑥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⑦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 또는 유희의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어린이·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상세한 묘사를 삼가야 한다.
- ⑧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남녀의 과도한 신체 노출 장면이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2. 폭력과 범죄

사회와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자가 표현의 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특히 개연적 허구를 다루는 드라마의 경우, 내용 전개 상 꼭 필요하거나 제작자의 적절한 연출 의도에 맞게 활용된다면 그러한 권리는 존중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폭력이 세부적으로 묘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폭력 그 자체를 위해, 또는 극적 효과를 쉽게 올려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폭력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태도는 인정될 수 없다. 특히 제작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프로그램의 폭력 묘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 ①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 ② 범죄수법 등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재연하는 것은 범죄를 모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③ 도박, 또는 그와 유사한 위법적 행위를 모방 충동을 느끼도록 묘사해서는 안 된다.
- ④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마약, 각성제 사용의 묘사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악용이나 오용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 ⑤ 불필요하게 공포감과 잔혹함을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 ⑥ 가족 시청 시간대에 잔혹한 폭력을 다룬 프로그램과 예고가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 ⑦ 지나치게 가학적인 장면은 삼가야 하며 특히 웃음, 극적인 장면 연출을 목적으로 한 가학적 행위는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3. 선정적인 소재 선택 및 표현

KBS의 프로그램, 특히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KBS 자체 심의규정에서 제한하는 반사회적 가치를 조장하는 표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편견을 갖게 하는 표현을 하지 않으며 시청자들에게 품위 있는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소재 선택 및 표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배제하도록 신중을 기한다.

- ① 특정한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치게 세밀한 묘사
- ② 미신, 소문, 비과학적 사실 등 사실 관계가 모호하거나 타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
- ③ 배설물, 욕설 등 부적절한 소재
- ④ 상업적 홍보의 가능성이 있는 소재
- ⑤ 출연자들 간의 과도한 사적 방담
- ⑥ 부도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 관계를 미화하는 내용
- ⑦ 드라마 상의 내용 전개와 필연적으로 관련이 없는 성적 표현
- ⑧ 자살이나 자해 방법들에 대한 노골적이고 자세한 묘사
- ⑨ 기타 방송의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소재

4. 언어

KBS의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품위와 교양을 견지하고 쉬운 우리말을 쓴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등의 바람직한 언어 사용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① 시청자 중심의 경어를 사용한다.
- ② 표준어 사용과 보급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사투리, 비속어 등은 드라마, 코미디 프로그램 등의 원활한 상황 전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정한다.
- ③ 출연자들의 사담이나 반말을 지양한다.
- ④ 부도덕한 이야기, 성적인 비유, 사회의 통념을 깨는 말을 삼간다.
- ⑤ 성(性), 국적, 연령, 직업, 지역, 종교, 학력, 질병, 장애 유무 등과 관련한 차별적 언사를 해서는 안 된다.
- ⑥ 무례한 언사를 해서는 안 되며, 출연자 간의 인신 공격적 표현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하를 하지 않는다.
- ⑦ 상업광고와 관련한 직·간접 홍보성 언어 사용을 금한다.
- ⑧ 비속어, 은어, 인터넷 조어, 혐오 표현(hate speech) 등을 자막으로 표기하는 것을 자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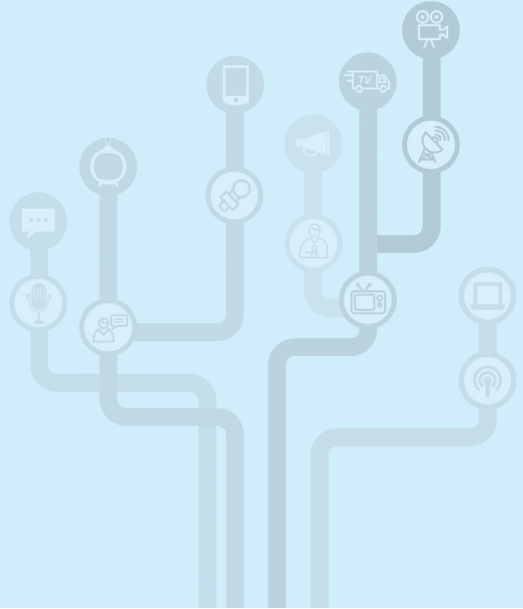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05

소수자 차별 방지



1. 방송 기회의 제한

방송 매체가 각기 다른 시청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은 주요 방송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작자들은 폭넓고 다양하게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며 오직 능력 있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작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도 고루 참여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전체 장르에 걸쳐 모든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편견과 고정관념

현대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다양하고 골이 깊다. 따라서 외국인, 노인, 장애인 등 수적인 다소(多少)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 등 사회적 관계에서 열

세에 놓여 있는 소수자(minority)를 무시하거나 그들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갖기 쉽다. KBS 프로그램은 특정 직업의 종사자를 놀림거리로, 노인을 무능력자로, 전과자를 범죄인으로,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등의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차별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제작자는 의식의 저변에 대한 자기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3. 차별 방지의 대상

방송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재, 주제, 내용, 출연자, 등장인물, 언어, 표현 방법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失効)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3-1. 장애인

누구든 장애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작자는 장애인들의 자존감, 존엄성, 인격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 ①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 ② 장애인을 ‘수동적 존재’, ‘불행한 희생자’로 묘사하는 등 동정 어린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미담 보도’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③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삼가야 하며,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방송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고민해야 한다.

3-2. 노인

우리 사회는 현재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 및 문제점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노인 프로그램은 단순히 편성의 구색 맞추기 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노인을 단순한 효도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노인에게 위로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

- ① 방송에서 노인을 표현할 때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시키거나 부정적 이미지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 ②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독사 등 노인문제를 다룰 때는 개인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노인 프로그램은 사회 전반의 흐름에 무관심해지고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취업, 생계, 복지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향상,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3-3. 여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 가운데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작자는 언어의 사용이나 영상 표현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① 기획과 편성 단계에서부터 성평등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갖고, 방송에서 특정 성(性)의 시각이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② 가부장제를 강화시키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특정 성(性)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묘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③ 여성성, 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성별 분업에 의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삼가야 하며, 남녀 개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전체 프로그램의 맥락과 상관없이 방송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를 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 ⑤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성적 암시가 포함된 영상과 언어를 사용하여 인물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⑥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정당화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성범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순결이 훼손된 일 또는 수치스러운 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북한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북한 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쳐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열등한 것으로, 북한 주민을 이등 국민으로 묘사함으로써 민족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탈북이나 고위층의 망명 사건 등에 대해 일정한 시점까지 엠바고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및 귀순자 관련 인터뷰나 프로그램 제작 시에는 이들의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5. 이주민과 외국인

많은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불법 체류나 범죄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차별이나 편견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방송은 출신국가, 민족,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하며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외국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은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해, 이들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③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동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며, 어눌한 한국어 표현 및 행동 등에 주목한 구경거리의 대상으로 묘사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잠재적 범죄자’, ‘전염

병 원인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 ⑤ 혼인이나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혐이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문화적 적응과 상호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6. 성소수자

제작자는 성소수자가 '동등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방송은 그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성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하며, 그들을 혐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뉘앙스의 표현이나 비하 또는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지 말아야 하며, 에이즈 등 특정 질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은 그 적절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3-7. 다양한 가족형태

방송은 1인 가구, 미성년 부모,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비정상적 또는 부정적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특히 미혼부모의 경우 그들을 잘못을 저지른 사회적 실패자로 묘사하거나, 주위의 눈치를 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의한 '피해자'로 묘사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3-8.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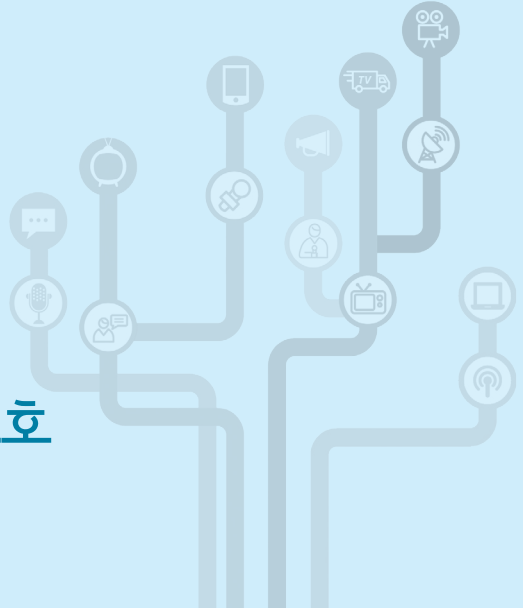
직업의 귀천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의해 개인이 차별적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드라마의 성격 묘사나 직업 설정 시 출신지역이 선입견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계없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 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학교,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차별적 표현에 대한 사과와 정정

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출연자가 무심코 행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차별적 표현을 통해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며, 차별의식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진행자는 차별받고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즉시 해명한 뒤에 사과하고, 그 발언을 정정하도록 한다.

06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우리 사회는 이 나라의 내일을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며 건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KBS는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소질과 능력이 계발·신장되어 조화롭고 건전한 인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전인교육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수익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들 프로그램을 위해 확고한 중장기적 편성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모으는 데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익은 단지 그들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제작자는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방송의 영향

제작자는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성, 상업성 등 부정적 내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항상 방송에 노출되어 있고 무비판적으로 방송의 내용을 수용하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이 모방하기 쉬운 위험한 방식의 행위를 담은 방송을 어린이가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나 많은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디지털 콘텐츠에서 다루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이고 폭력적 내용, 동물학대, 자살, 자살기도, 자해, 섭식장애, 음주, 흡연, 마약물 복용, 성 행위, 알몸 묘사 등은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 보호 시간대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청소년 보호 시간대 전후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2. 보호자의 동의

민감한 주제나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방송에 어린이나 청소년을 인터뷰하거나 출연시키는 경우, 제작자는 사전에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어렵고 다루는 주제가 민감할수록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자신의 의사와 달리 표현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린이가 수업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면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출연, 인터뷰 시 주의점

어린이를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안 되며, 내용 전개

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를 출연시키거나, 그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범죄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나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해당 어린이·청소년의 출연 및 인터뷰에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직접 인터뷰할 필요가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 ① 어린이와 청소년이 피해자인 범죄를 다룰 때 피해 사실을 필요이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피해부위를 직접적으로 자세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 ② 어린이와 인터뷰 하는 경우, 제작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태도를 삼가야 한다. 어린이는 어른의 질문에 대해 자기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어려우므로 어린이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 ③ 또한 인터뷰를 할 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격을 존중하여 경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4. 익명

청소년과 관련된 반사회적 이슈나 범죄행위를 방송할 때, 방송에 등장하는 청소년 개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하며 되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그것이 개인 자체보다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 설혹 본인과 부모가 그의 신원을 밝히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제작자는 그 청소년의 장래를 생각하여 꼭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5. 방송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어린이·청소년이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제작자는 이들 개인의 안전이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물리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전한 상황 속에서 제작에 참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① 어린이들이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방송제작 현장에 반드시 인솔자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 ② 산업안전에 대한 주의 뿐만 아니라 제작 현장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③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을 위해 제작 현장의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6. 출연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

KBS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를 항상 보호해야 한다. 제작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때 프로그램의 취지나 촬영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구하고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충분히 사전설명을 한다.
- ② 어린이들이 장시간 제작에 참여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어린이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제공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KBS는 필

요 이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례

- <KBS 2TV - 위기탈출 넘버원> (2012.10.08)
- 결정사항 : 권고(2012.11.07)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 제1항, 제45조(출연) 제1항 위반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기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에서, 가해자가 어린 여중생을 넘어뜨려 성폭행을 시도하고, 넘어진 여중생이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모습 등의 성범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재연장면에 청소년을 출연시키고, 이러한 장면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출하였다. 이는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기법으로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 되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충분히 설명해 준다.

- ② 출연자가 부분 시각 장애인인 경우 확대 복사한 대본을 준비한다.
- ③ 지적 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대본을 만들도록 하며, 인터뷰를 할 때 전문용어나 외래어 등 어려운 용어 사용은 자제한다.
- ④ 방송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정확히 알려 주어 대기 중이나 귀가할 때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다.
- ⑤ 장애인 출연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조인을 배치하여 이동이나 의사소통을 돕는다.
- ⑥ 보장구를 소지했거나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게는 보장구 및 보조견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2. 장애인 출연자

- ① 지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 평소 방송에 접근할 기회가 적은 장애인도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적합한 출연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다.
- ② 장애인 출연자는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고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한다.
- ③ 장애인 출연자에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형식,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다.
- ④ 출연 장애인이 청각 장애인일 경우 진행자는 그 장애인이 진행자를 인지하고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또한 말을 할 때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입을 가리지 않는다.
- ⑤ 출연 장애인이 언어손상을 가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짧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진행자는 그 장애인이 말을 할 때 교정하려 하지 말고, 말하는 동안 조용히 기다린다. 만약 진행자가 답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해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중하게 다시 물어보도록 한다.

3. 장애인에 대한 묘사

장애인을 묘사하는 영상이나 용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 ①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한지 장애인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한다.
- ② 장애가 이야기의 중심이 아닌 이상, 장애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하게 장애를 부각하거나 장애로 인한 환경을 과장, 축소하는 등 왜곡하지 않는다.
- ③ 특정 장애 부위를 집중해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④ 장애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은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한다.
- ⑤ 장애를 비하하는 언어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한다. 장애에 의한 차별과 편견이 있는 용어는 드라마 등 맥락 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한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자막으로 처리할 때에는 현재 통용되는 용어를 병기할 것을 유념한다.

- 장님, 소경, 애꾸눈, 사팔뜨기 → 시각 장애인
- 귀머거리 → 청각 장애인
- 병어리, 말더듬이, 언청이 → 언어 장애인
- 절름발이, 앉은뱅이, 외팔이 → 지체 장애인
- 굼추 → 척추 장애인
- 정신박약, 얼간이 → 지적 장애인

- ⑥ 장애인이나 장애 문제를 다룰 때에는 법률적인 규정에 기반하여 장애 관련 용어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작에 임한다.

4. 보도 및 취재 시 유의점

- ① 사건·사고 보도에서 장애인이 가해자나 피해자일 경우 그 장애가 해당 사건·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장애를 해당 사건·사고의 원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
- ② 취재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은 정보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 참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이들 장애인에게 방송접근권을 보장하여 정보 전달과 일상생활의 연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인 한국수어통역방송(청각장애인을 위해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방송), 자막방송(청각장애인을 위해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 화면해설방송(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 ① 법 제69조 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 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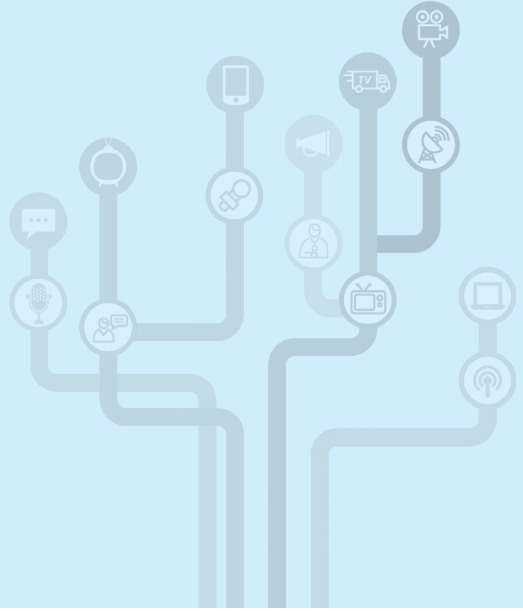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4조(한국 수어·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공직 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 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 방송
4. 그 밖의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08

취재와 인권



1. 제작자의 윤리

방송내용이나 취재·제작 과정에 대해 취재원과 시청자가 제기하는 불만 가운데 으뜸을 차지하는 것이 인권에 관한 사항이다.

제작자는 인권침해가 비록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취재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로 인한 심의기구와 사법기관의 타율적 제재는 제작자에게도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취재·제작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KBS의 이미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방송의 자유(또는 표현의 자유)가 인권과 충돌할 때 법은 두 법의 사이의 중요성을 저울질하고 상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제작자는 이러한

법률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은 시청자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때로는 방송의 자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법과 충돌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극한적인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한 방송 여부는 KBS 내부의 신중한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 결정은 뚜렷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고 정당해야 하며,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제작자가 취재·제작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인권 문제와 관련된 법률규정, 판례, 그리고 이를 참고로 한 제작지침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꽤 복잡하고 미묘해서 제작자들이 명쾌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원의 심급별 판결이 다르거나 국가별로 판결이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 방송과 인권에 관해 제작자는 취재제작과정에서 취재원과 시청자에게 겸손하고 진실하며 성실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2. 취재원 보호

취재원 보호는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 중의 하나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제작자가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제작자는 우리 법률 상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직면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제작자는 취재원에게 설득력 있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1. 취재원의 명시

신뢰성 있는 보도를 위해 제작자는 취재원을 명시해야 한다. 공공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나 공인이 제시한 학술적·정책적 분석과 전망을 보도할 경우에는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취재원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취재원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책임 있는 보도를 하기 위해서
- ② 단순한 소문과 구별하기 위해서
- ③ 오보나 정보조작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2-2.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익명보도 원칙

부조리와 비리의 폭로, 고발 등 공익제보와 관련된 취재원(특히 내부 고발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 ① 취재원을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뢰성 있는 보도를 위해서 취재원 보호를 조건으로 하는 취재 방법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② 취재원의 신변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취재원이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함부로 취재원 보호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 ③ 시청자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이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사안인 경우에는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할 수 있다.
- ④ 국가 안보 등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 실정법의 요구가 있으면 취재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2-3. 취재원 비닉권의 부정

취재원 비닉권이란 취재원에 대해 함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주도 있으나 연방차원에서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라 형사재판 절차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례

리크 게이트(Leak Gate) 사건

2006년 미국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의 신분 누설사건인 이른바 ‘리크 게이트(Leak Gate)’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구속됨. 범죄수사에 있어서 언론의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취재원 비닉권을 부정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Branzburg v. Hayes, 1972)

미국 켄터키주의 일간지 〈Courier Journal〉의 기자 폴 브란츠버그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마초를 마약으로 제조한다는 사람들을 취재하여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했다. 그는 대배심의 소환에 응하기를 하였으나, 그가 직접 접촉한 마약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켄터키주 기자특권법과 미국 수정헌법 제1조(언론의 자유)에 근거하여 그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기자라고 해서 일반인이 누리지 않는 특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에는 증언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핵심적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장과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수사의 경우 여기에 대해 기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 ② 기자의 증언이 중요한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확고한 증거가 없다. 기자의 증언 거부하는 수사를 곤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내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언론기본법〉에 취재원 비닉권 조항이 있었지만, 1987년 이 법이 폐지되면서 지금은 법적 공백 상태로 남아있음.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의 권리에 비닉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하위 법에서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음. 취재원 보호에 대한 예외적 차원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기자들이 처벌을 각오하고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음.

3. 인격권의 침해

방송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에는 명예훼손, 성명·초상·음성권 침해, 경제적 이익에 대한 침해 등이 있다. 형법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여타의 침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속한다. 민사상의 분쟁에 있어서는 형사상의 분쟁과 달리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

3-1. 명예훼손

(1) 유형별 명예훼손

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한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표현방법에 따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공익성(공인과 공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②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의 적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된다.

③ 의견과 사실이 혼합된 경우의 명예훼손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④ 전파(傳播)에 의한 명예훼손

다른 매체를 인용, 보도한 경우에도 전파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따라서 기사를 전재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에 방송해야 한다.

(2) 명예훼손 관련 법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①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2. 기타 인격권 침해**(1) 폭로·공개에 의한 인격권 침해**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사람에게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때 발생하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단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은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침해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감시·도청·촬영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대방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사실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익성(공적인 인물과 공적인 사실)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인정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 ① 개인 집이나 사무실에 침입해 몰래 촬영(몰래카메라 사용)하는 경우
- ② 손님을 가장해 촬영, 녹음하는 경우
- ③ 본인 승낙 없이 알려지지 않은 가족관계, 불미스러운 과거경력 등을 보도하는 경우
- ④ 사전에 동의 없이 전화, 대화를 녹음하거나 개인의 편지를 방송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출력하는 경우

(2)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과 신체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성명·초상·경력·이미지 등 개인의 고유한 속성인 인격적 징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인격권으로부터 유래한 권리이다. 초상권의 문제는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의 단계에서도 그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촬영을 할 때에는 촬영의 목적이나 방법, 장소 등이 적절한지 항상 주의해야 한다.

① 초상권의 내용

- 촬영 및 작성 거절권: 얼굴, 기타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
- 공표 거절권: 촬영된 초상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 초상 영리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② 초상권 침해의 범위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촬영하거나 개인의 고유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또한 허락을 얻어 촬영된 영상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나 일단 공표된 영상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범죄보도를 할 때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를 불러내어 얼굴을 들게 하고 이를 정면에서 촬영하거나 얼굴을 가리려고 발버둥치는 피의자를 역지로 촬영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경찰 등에서 피의자가 조사받는 장면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 된다.

③ 공인의 초상권 보호

공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작자는 기사내용과 화면이 다를 경우에 적절한 표시로 그 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텔런트나 영화배우, 유명인 등의 초상권과 같이 개인의 초상권이 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재산권(초상 영리권) 침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사례

〈KBS 1TV 저녁 9시 뉴스〉(1995.03.28.)

‘부르는 게 값’이라는 제목으로 수백만 원짜리 호화 웨딩드레스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때 배경 화면으로 임수경씨(19대 국회의원)의 결혼식 장면을 사전 허락 없이 약 15초가량 사용했다. 이후 KBS는 그 방송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다.

④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

일반인의 초상권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복수의 인물이 촬영되어 보도 대상자 이외의 인물이 방송되는 경우
- 불특정 다수의 인물을 촬영, 방송하는 경우

- 과거의 자료영상에 포함된 특정 인물의 모습을 사용할 경우

또한 재해와 재난을 당해 비탄에 빠진 피해자와 유가족, 기타 민·형사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촬영 또는 방송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 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의 극적 요소를 고려해 무리한 인터뷰를 시도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일반인의 활동에 대해 정보의 공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신원이 공에 밝혀져야 하는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

4. 인격권 침해 방지 방안

4-1. 당사자 불특정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공익성 요건의 (공적인 인물과 공적인 사실)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당사자를 불특정 인물로 표현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전체 일반인이 아닌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하거나 성만 표기하거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배려를 했다 하더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또한 당사자를 불특정하기 위해 성급한 일반화를 할 경우, 예를 들어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과 영관급 고급간부’라고 표현했을 경우 실제 해당자 모두에게 각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집단명예훼손)을 주의해야 한다.

4-2. 공익성과 진실성

① 공인(공적 인물)

공인이란 그 재능이나 명성, 직업 때문에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인물이 된 사람을 뜻한다. 정치인, 선출직 공직자, 정부 관리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연예인, 주요 인사, 덕망 있는 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인의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자신의 프라이버시 공개를 어느 정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불과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적 공간이나 비밀 등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② 공적 사실

공적 사실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우선한다. 보도적 가치, 교육적 가치, 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실은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한 해설이나 공중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사항의 공개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또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해서는 논평을 할 수 있다. 논평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한, 피논평자가 사회로부터 받는 평가가 저하된다 하더라도 논평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으로 이루어진 보도인 평론이나 해설은, 공공적 사항에 관한 공정한 논평인 한 그 평가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의견인지, 사회의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으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논평이라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논평을 하거나, 의견임을 빙자하여 사실상 특정인의 명예를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③ 진실성

여기에서의 진실한 사실이란 표시된 내용의 세부에 있어서도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다소 합치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하다.

판례

‘공공의 이익’의 범위(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이고,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3. 공익성과 상당성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즉 상당성이 있는 경우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초로, 취재진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 ① 행위자가 누구인가(일간지, 주간지, 방송 등 발행 또는 보도 주기에 따른 특성)
- ② 신속성을 요하는 기사인가(신속성을 요하는 보도 vs 기획 기사)

- ③ 취재원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 ④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
- ⑤ 제보자의 제보 이외에도 이를 소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는가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취재 노력은 상당성 판단에 있어 핵심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녹취물을 방송할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는 물론 정당한 반론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당국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실질적인 변동 없이 보도한 경우 취재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이 요구되며 언론기관의 사실 탐지능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따로 확인 취재를 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담당수사관 등에 대한 비공식적인 취재만으로 사실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보도하거나 수사당국의 공식발표가 있는 경우,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담당 수사관 등으로부터 비공식으로 취재하여 기사화한 때에는 취재원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검찰·경찰의 공식발표 요건

공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관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공식적인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 것은 공식발표로 인정된다.

판례

언론사 승소 판례(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A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안기부 인천 분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는 요지의 허위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A가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B와 안기부 요원인 공소 외 1이었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것이 결국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안기부의 추적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A가 거문도에까지 와서 사망하게 된 경위와 그 사망 원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터에 안기부직원인 공소 외 1이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가는 배에 A와 동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나아가 A와 공소 외 1의 일행이 거문도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까지 나왔으나 그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까닭에 피고인(기자)이 위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판례

언론사 패소 판례(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언론사들이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주부가 위자료를 노리고 남편에 대한 청부폭력’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으나, 이후 재판 결과 보도대상자들의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공보관으로서의 직무가 불명한 담당경찰관이 아무런 결재절차 없이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취재를 요청한 것을 두고 공식발표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믿은 것만으로는 상당성 인정 안 됨). 또한 대법원은 ‘원고들은 평범한 시민이고, 취재 당시 검찰에 의한 공소가 제기 전인 단계로 아직 피의사실의 공표가 금지되고, 피의자들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단계였으므로 피해자들의 명예보다 보도의 공익이 무거웠다고 할 수 없다.’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피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판례

“위법성 조각”(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은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례

“위법성 인정”(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평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수기는 그 내용과 기술방법으로 보아 원고의 인격을 비방하는 인신공격의 표현이 상당히 포함되고 있어 그 수기의 게재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의도로서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신문에 비해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해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 것인 바, 잡지발행인이 수기를 잡지에 게재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원 문장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잡지에 게재하였다면 잡지발행인으로서 위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5. 비밀 취재

5-1. 일반 원칙

비밀 취재는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상대방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촬영이나 인터뷰, 전화 녹음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재는 공개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비밀취재는 예외적인 방법이다. 비밀취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① 공개된 취재 방법으로는 취재가 안 되고 다른 수단으로는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논의의 여지 없이 명백한 경우
- ② 해당 영상이나 음성이 없이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그 취재의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
- ③ 취재 목적이 공공성, 공익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경우.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의 보도는 공공성, 공익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비밀 취재는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단순히 언론사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혹은 일반적인 취재 방법에 비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비밀 취재를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비밀취재를 해야 할 경우에 제작자는 데스크 또는 책임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비밀 취재 기법을 이용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취재할 수 없는 내용이나 장면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법을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그 효과는 떨어지고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불신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5-2. 비밀촬영

취재장비의 발전으로 카메라를 숨긴 상태에서의 촬영과 녹음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취재는 그 유용성보다는 적법성과 취재 대상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도청’으로서 이는 형사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범죄나 비리 현장을 고발한다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적 가

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촬영이 허용될 수 있다.

소형 카메라는 물론 통상적인 방송용 카메라를 사용해 상대방이 카메라가 작동되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취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밀취재에 해당된다. 자연스러운 음성 녹음을 위해서 이펙트 마이크로 녹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녹음이 이루어진 사실과 방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취재 대상자가 녹취된 내용의 방송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방송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녹취 내용을 방송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순한 흥미 유발을 위해 비밀촬영 기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밀촬영의 경우에는 항상 형사·민사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례

1997년 3월, 한 방송사에서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 아래 모 대학교 학생들의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여 방송하였다. 취재팀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정적인 내용은 방송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신입생 환영회의 식사 장면과 여흥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취재장소를 식당으로 국한하며 술을 마시는 장면 등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촬영을 허락하였고, 장기자랑과 건배장면까지 연출해 주었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그 학교 학생들의 신입생 환영회 모습 이외에도 다른 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와 관련해 숨진 학생의 사망 사실과 막걸리 사발식 장면, 나이트클럽의 무대 장면, 유흥가 밀집 장면 등을 편집하여 방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학교 학생들이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본인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모습과 음성까지 그대로 방송하였다. 법원은 프로그램 제작자의 행위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초상권에 속하는 공표 거절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행위로 보고 정신적인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자료 1천 6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5-3. 비밀녹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화를 녹음해서 그것을 직접 방송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고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밀 촬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 고발이나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녹음해 방송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무전기의 음성을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5-4. 오락 프로그램에서의 비밀촬영

오락프로그램에서 주인공을 몰래 촬영하거나, 설정된 상황에서 일반인이 보이는 반응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기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방송되기 전에 주인공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특정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③ 촬영 당한 사람이 항의할 경우 촬영을 중지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5-5. 제보자가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녹취한 자료

제보자가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녹취한 테이프 자료를 입수했을 경우, 방송 여부의 결정은 공익성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익성이란, 공인의 공적 사실과 관련된 부조리와 비리 감시, 재난과 재해로부터의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생존권 문제 등 국민 대다수의 기본적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 간 민·형사 분쟁 또는 일반 국민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은, 중대한 공익

적 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 한 절대로 방송해서는 안 되고, 방송할 경우에도 공인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밀리에 촬영된 영상자료는 제보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생활과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정한 목적에 따라 자료가 왜곡되거나 침삭됐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제보자에 의해 몰래 촬영된 영상자료를 입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 ① 입수한 자료의 공익적 가치
- ② 자료의 신빙성, 왜곡 여부
- ③ 제보의 목적과 의도
- ④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권, 사생활 침해 여부
- ⑤ 방송 뒤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판례

‘X파일 방송 사건’

2005년 초 한 방송사 기자는 1년여에 걸친 심층취재를 통해,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한 중앙일간지 사주와 대기업 임원이 나는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와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테이프는 당시 안기부 직원이 도청한 것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방송사가 해당 내용을 보도하려 하자, 도청록에 등장하는 기업 측에서 방송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했고, 방송사 보도국 내부에서도 예상되는 법적인 분쟁을 우려해 방송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해 7월, 도청록을 입수한 또 다른 방송사가 이 녹취록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사회적 관심사로 확대됐다. 이 사건으로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잇따라 구속되고, 중앙일간지 사주와 대기업 임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등 파장이 계속됐다.

이 사건은, 불법 도청된 녹취 테이프를 방송에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정당

한 사명인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 인지를 놓고 많은 논쟁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개된 도청록 가운데 특정 정파에 불리한 내용만 발췌되고, 다른 정파와 관련된 내용은 생략된 사실이 드러나는 한편, 도청록을 입수한 기자가 제보자에게 사례비를 전달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언론윤리 논쟁은 더욱 증폭됐다. 해당 기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보도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극히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때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의 정보공개 시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8년'이나 지났고 보도 당시의 정치질서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6. 범죄에 대한 보도 및 방송

6-1. 모든 범죄의 피의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① 단정적 표현 금지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피의자(용의자 포함, 이하 '피의자')의 범행 증거가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피의자를 유죄인 것으로 표현하는 보도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경찰 내부의 수사인 내사의 경우에는 용의자, 용의자의 단계를 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되기 전에는 피의자라는 법적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 주범, 공범, 범인 일당 등의 용어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원칙 문제를 떠나서라도 피의자가 무죄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보도로 인해 피의자가 입게 될 피해를 사전에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작자는 수사당국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항상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범행에 대한 일방적인 여

론 재판이나 사회 불만 심리에 영합해서도 안 된다.

②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사실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전에는 아래와 같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 등이 공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가. 피해자의 신원 파악 등과 같이 사건수사를 위해서 공개수사가 불가피한 경우
- 나. 연쇄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피해확대 방지를 위해 공표가 필요한 경우
- 다. 국정에 관한 사항이나 국민이 의혹을 가지는 사건 등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약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특히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판례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4406 판결)

피의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한편으로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이 사건 보도내용은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유해식품에 관한 것으로서 보도의 필요성과 긴급·신속성이 인정되고, 그 취재원이 수사를 직접 담당한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마친 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수사내용과 향후 대책 등을 공식발표 한 것(보도내용과 검찰의 발표내용 사이에는 과장이나 윤색이 없었음)으로서 그 신뢰도가 높고, 사안의 특

성상 관련자들에 대한 보충취재를 통해 원고들의 항변의 진위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6-2.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보도한다

피의자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피의자의 전과, 프라이버시, 가족관계 등을 보도할 때에는 과연 보도할 만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흥미를 위해서 피의자의 신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피의자인 상태에서 프라이버시가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피의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피의자의 모습이나 신원이 공개되고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 모습이 방송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청사 내에서 인신 구속 중인 상태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녹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사례

1981년 윤경화 씨 살인사건에서 조카며느리인 고숙종 씨가 피의자로 지목됐다. 언론은 고숙종 씨가 범인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고씨의 친정과 출신학교, 미성년자인 네 자녀, 남편의 이름도 보도했다. 이 때문에 남편은 공무원직을 사퇴했고 대학에 다니던 두 자녀는 중퇴했다. 그러나 나중에 법원은 고씨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피의자가 공인이 아니라면 그의 초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개의 법률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흉악범이나 성폭행범의 초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는 초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적인 인물의 공적인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중대 사안의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의자가 조사받는 장면이 방송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질병, 가족사 등 내밀한 사적 영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피의자에 대해 보도할 때 제작자는 피의자가 '내 가족이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중대 사안은 단순히 국민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정당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을 말한다. 무엇이 중대한 국민적 관심사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상급 책임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6-3. 범행을 미화하거나 모방범죄를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범행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피의자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할 경우, 범행이 자칫 미화될 우려가 있다. 또 범죄 수법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모방 범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례

1994년 지존파 일당이 시민 5명을 납치, 살해하고 암매장하거나 불태운 엽기적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TV 보도는 피의자들과의 일문일답 형식을 빌려 피의자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소개했다.

기자: 범행 동기는?

피의자: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는 놈들이 싫었다. 압구정동 야타족들,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싶었다. 시작도 못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안타깝다. 개인적인 원한은 없지만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그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우리 사회가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자들에게 내리는 벌이다.

기자: 그렇다고 죽일 필요까지 있었는가?

피의자: 우리들 얼굴을 알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 중형차 이상 타고 다니는 사람만 보면 죽이고 싶었다.

6-4.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범죄 속보기사 작성 때 유의해야 할 점이다. 경찰의 수사상황, 특히 잠복근무나 전화감청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사상황 보도와 범인 검거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공익적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서술과 묘사는 자제해야 한다.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언급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도 자제해야 한다.

6-5.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신상에 관계된 보도는 자제한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 혹은 보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경우는 보도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사자의 시신이 수습되는 장면을 노출시키거나 성폭행 뒤에 살해당한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정폭력, 성범죄 등을 다룰 때는 그 사건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힘써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 단순한 호기심 충족 차원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①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터뷰나 내레이션 등으로 표현할 때,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방송을 통해 피해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고 이로 인해 수치심, 모멸감,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방범죄의 가능성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② 피해 상황을 재연의 형식으로 표현할 때도 자칫 선정적일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연출 방식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 ③ 피해자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 신체 상처 부위나 상처 사진을 방송하는 것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이 방송 전체의 맥락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

6-6. 범죄 전과나 시효가 만료된 사건의 취급은 신중히 한다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일 경우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7. 실명과 익명

7-1. 방송은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보도활동에 있어 ‘누가?’는 육하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허락을 얻어 방송하는 것은 실명으로 한다. 단 실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익명으로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익명보도를 남발하게 되면 권력의 남용이나 비리를 감시하는 보도기관의 역할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실명보도를 할 때는 보도되는 당사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오보, 억울한 누명의 가능성,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보도의 경우에는 한층 주의가 요구된다.

익명보도 또는 실명보도 여부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폭넓은 취재를 통해 얻어진 정확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7-2. 실명보도의 폐해와 익명보도의 원칙

- ① 범죄 피의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법원의 형량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의자에 대한 신원 노출은 원칙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범죄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피의자가 공인인지의 여부, 범죄사건의 중요성, 비범성(非凡性) 등을 고려하고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이익(인격권)과 공공의 이익(언론의 자유)을 비교형량하여 사회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③ 참고인은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참고인일 뿐 피의자가 아니므로 참고인에 게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도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 ④ 피해자의 경우, 익명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보도해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보도한다. 성폭행 후 피살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보도한다.
- ⑤ 자살미수 또는 동반자살 미수의 당사자는 익명으로 한다. 특히 미성년자는 학교 폭력, 교사 체벌 등의 사안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경우에도 익명으로 보도한다.
- ⑥ 폭력 또는 폭력단 관련 사건으로 보복을 당할 염려가 있는 취재원은 익명으로 보도한다.

7-3. 심신 장애자

- ① 심신 장애자가 피의자이거나 피의자로 추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보도한다. <형법> 제10조의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이 심신 장애자로 판단하면 본인에게 형사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② 심신 장애자라 하더라도 사회적 중대 관심사로 부각된 사건이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인물로서 지명수배된 경우에는 공익성을 고려해 실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 ③ 실명으로 보도한 피의자가 법원에 의해 심신 장애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익명으로 바꾼다. 익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특히 관계되는 영상의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안이한 익명 인터뷰, 모자이크 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8. 호칭

범죄사실의 보도에 있어서 호칭은 특정인이나 특정 직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호칭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8-1. 익명을 사용할 경우의 호칭

① 성명

한글,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 김○○씨, 김모씨, K씨 등으로 표기한다. 단 이니셜만으로도 주변 정황에 따라 누구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 실명과 전혀 관계없는 A씨, B씨 등의 이니셜을 사용하고, 그 이니셜이 실명과 관련이 없음을 고지한다.

② 공인의 경우

- 가. 공직자 또는 대기업 고위관리자 등의 경우, 직책이나 직함이 범죄사실, 사고 등 기사 내용의 일부를 구성할 때는 직책, 직함을 익명처리된 성명 표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나. 단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폭행사건 등과 같이 사건의 내용이 특정인의 직책, 직함과 무관한 경우에 직책, 직함, 경력, 이력 등을 표기하여 특정인임을 알 수 있게 하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텔레비전 방송보도 중 사용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해, 방송보도의 대상인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판례

주위 사정에 의한 피해자 특정 I(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 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기사에는 '10년의 세월이 지나' '(경남)교육감 선거', '교육감 출마 예상자', '전직 교육 고위 간부', '군(郡) 지역 고교 교장', '모 상업계 교장'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포함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당사자는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다.

판례

주위 사정에 의한 피해자 특정 II(서울지방법원 2000. 6. 21. 선고 2000가합1377 판결)

'K변호사'라는 성의 이니셜만으로 표기되었으나, 한편 이 기사에는 주부 'L모씨(34세, 서울 노원구 상계동)가 유산을 타기 위해서 계모 'H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을 'K변호사'가 수임하였으며, 위 소송 위임과 관련해 수임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적시된 경우 이 기사를 읽어본 독자 중 적어도 위 주부와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이 사건 기사에서 이니셜로 표기된 사람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8-2. 절차에 따른 호칭 구분

구분	호칭
① 체포 이전	'직명'이나 '익명' 사용. 단 질병 등으로 체포를 면제받고 있는 때에는 '옹의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② 체포·지명수배 등 (기소 이전)	'옹의자' 또는 '직명' 사용. 단 '직명'을 사용할 경우에도 원고의 최초 부분에서는 한번 '옹의자'를 사용한다. 직함이 없는 일반인과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③ 체포(구속) 후 수사 단계	원칙적으로 '피의자'.
④ 불기소, 기소 유예	'직명'이나 '익명', '경칭'
⑤ 혐의 없음	'경칭'
⑥ 기소·재판 중	원칙적으로 '피고인'.
⑦ 판결 이후	유죄는 '피고인', '직명'. 항소의 경우 '피고인', '직명'. 무죄는 '경칭', '직명'
⑧ 형 확정	'직명' 또는 '실명'
⑨ 가출옥·형기만료	가출옥은 '직명', '경칭', 형기만료는 '경칭', '직명'

9. 소년법

최근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건 보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려질 경우 원만한 인격 형성이나 성년 이후 사회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법> 상 '소년'으로 규정되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의 보도는 성인 범죄피의자의 경우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년법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해 본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이나 영상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는 단순히 흥미유발을 위해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밀접할 경우, 가해자를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실명을 통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으므로 실명보도에 주의가 필요하다.

피의자를 지칭할 때 소년범 자신과 가족 등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을 일으킨 청소년의 경우나, 흉악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커 그 범죄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체포를 위해 지명수배 중인 소년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대전 ○○구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정도로 표시하면 무방할 것이다.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생존의 경우에는 익명, 사망의 경우에는 실명으로 하도록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사망했다더라도 본인이 차를 훔쳤거나 무면허인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10. 유괴·인질사건

유괴·인질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생명의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고 취재·보도해야 한다. 보도는 엄격하게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추측이나 예단을 포함한 과장된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당국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보도 시점 유예(이하 엠바고) 등의 협조요청을 할 경우 담당 데스크와 상의하여 협조한다. 단 수사당국은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엠바고 요청이 단순한 수사 상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엠바고는 1개 언론사라도 반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유괴된 사람을 구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보도할 수 있다.

엠바고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뚜렷한 이유가 있거나 모든 피의자가 체포되었을 때, 또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제된다.

유괴범이나 인질범과의 인터뷰, 전화 통화, 성명서 등을 방송할 경우 반드시 담당 데스크 및 책임자와 협의해야 한다.

유괴나 인질사건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건보도 내용이 범죄자에게 도움이 되어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해를 입을 수 있는 보도는 신중을 기한다. 유괴사건에 관한 전모는 가능한 한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취급하도록 한다.

사례

1997년 8월 30일 서울 잠원동에 사는 8살 박초롱초롱빛나리양이 유괴되었다. 경찰은 먼저 비공개 수사에 들어갔다. 다음 날 경찰은 전화 발신지 추적을 통해 범인이 전화를 건 커피숍을 덮쳤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실제로 범인은 커피숍에 있었지만 경찰이 범인을 검문하고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기자들에게 유괴사건을 알리면서 엠바고를 요청했다. 9월 3일부터 경찰은 공개수사에 들어갔다. 나리양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개수사 시점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도 있었지만 기자들은 경찰의 공개수사에 협조했다. 각 언론은 사건 내용과 함께 인상착의, 몽타주를 보도했다. 방송은 범인의 전화 음성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또한 범인이 잡혀야 한다는 당위성이 담긴 리포트를 계속 보도했다. 공개수사와 언론의 공개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9월 11일, 범인의 아버지가 경찰에 전화를 했다. 방송에 보도된 범인의 전화 목소리가 자기 딸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말한 것이다. 범인은 이렇게 해서 잡혔다. 나리양은 범행 당일 밤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괴사건 해결의 성패는 언론의 협조 여부가 핵심적이다. 언론이 비공개 수사 협조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를 잡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어린이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을 피의자가 알게 되면 어린이를 살해하고 잠적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공개수사 때에

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피의자 검거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11. 잠입취재와 동반취재

일반적으로 취재는 공개적으로 수행해야 시청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은밀한 취재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고 공정성을 훼손하며 윤리성을 의심받기 쉬운 만큼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 특히 선정성이나 시청자의 공연한 호기심을 의식한 취재는 삼가야 한다.

그러나 적법성을 벗어난 취재를 해야만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취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책임자와 사전 협의하여 취재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방송 시 이러한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시청자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11-1. 잠입취재

어떤 사건 현장에 접근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자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잠입취재를 할 수 있다. 범죄의 현장, 또는 취재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외국의 경우 등이 그렇다.

① 범죄현장의 경우

범죄현장에 대한 잠입취재라도 제작자가 범인들과 공모한다거나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식의 취재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도 안 된다. 고객이나 손님으로 가장해서 취재를 할 경우에도 범죄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범죄현장을 취재해야 한다.

범죄현장을 적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빈 집에 들어갈 경우,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사당국 등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작자가 검찰이나 상급기관의 직원이라고 신분을 속여 현장에 접근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② 취재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외국의 경우

취재비자 발급이 거부될 때는 관광객 등으로 위장해 취재하는 수가 있다. 단 이는 해당국의 실정법을 어기고 취재하는 것이므로 사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취재현장에서 적발돼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는 만큼 국익과 개인의 신변안전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취재에 임해야 한다.

사례

탈북자들의 동향,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 등의 취재를 위해서는 중국의 국경지대를 방문해야 하나, 중국이 취재비자 발급을 거부해 부득이 잠입 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주 일대의 고구려 유적 훼손 등의 보도도 모두 잠입취재로 얻은 결과다. 한국 언론사의 지속적인 잠입취재로 중국 당국의 감시가 더욱 엄격해지고 심지어 접근마저 불가능하게 되어 가고 있다. 잠입 취재를 시도할 때는 시청자의 관심, 취재의 절박함, 장기적인 이해득실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11-2. 동반취재

방송의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동행하는 취재는 그것이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를 현장에서 취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금할 일은 아니다. 취재현장을 안내받기 위해 제보자와 동행하는 것은 물론, 잠입취재의 일환으로 제3의 인물을 동반해 취재할 수도 있다. 또 범죄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반해 취재할 수도 있다.

마약사범 검거와 같은 특수 임무를 동행 취재하고자 할 경우, 명백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취재진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실행할 수 있다. 단 동행 취재 방식이, 피의자와 주변 인물,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방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수사 또는 방재당국의 현장 작전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취재는 자제해야 하며, 사건 현장이 취재활동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제보자 동반의 경우

제보자의 신변과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취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범인임이 확실한 수배자를 알고 있을 때는 자수를 권고하도록 한다.

② 제3의 인물을 잠입시켜 동반할 경우

탈법 행위를 취재할 경우, 연기학원 등에서 연기자를 임시로 고용하거나 일 반인을 대신 들여보내 내부를 취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잠입취재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범죄 장면을 취재해야 하며 범죄를 유도하거나 취재 대상자를 매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이 촬영되어 범죄와 연관된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를 현장에서 취재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책임자와 협의한 후 취재해야 한다.

사례

1996년 12월 24일, KBS 1TV 저녁 9시 뉴스에서 도서 지역의 야생동물 밀렵 행태를 취재하기 위해 취재팀이 야생동물 보호단체 활동원과 함께 경찰에 접근했다. 그리고 경찰을 매수하려고 돈을 집어주는 상황을 연출하고 소형 카메라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순찰을) 알아서 할 테니까 눈치 봐서 하세요.'라고 말하는 단속 경관의 뒷모습을 촬영해 방송하였다. 그리고 이 경관은 야생동물의 밀렵을 눈감아 줬다는 내용의 당사자로 인정되어 사흘 후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③ 수사기관 동반

수사기관에서 취재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동반취재를 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영장을 발급받아 체포 또는 수색하도록 해야 한다. 제작자는 범죄 혐의자들이 현행범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1-3. 함정취재

탐사보도를 위해 취재대상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취재 기법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린 국내 판례는 아직 없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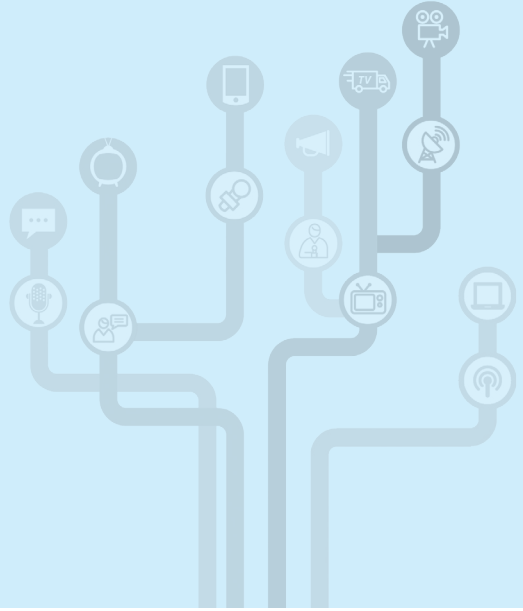
사례

일본에서는 1972년 미·일 간 오키나와 비밀협약 사건을 보도한 마이니치신문 니시아마 기자의 경우 함정취재로 간주하고 있다. 니시아마 기자는 일본 외무성에 근무하는 여성 사무관을 유혹해 비밀 정보를 빼내 특종기사로 보도했는데 최종심에서 취재의 정당성이 문제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비밀문서를 입수했을 때, 제작자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손에 넣었고 문서를 넘겨준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시청자에게 밝혀야 한다.

09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선거방송의 경우 과학적 여론조사 기법을 이용한 선거 예측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 기획프로그램은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알아 볼 수 있다. 여론조사는 오락프로그램에서도 이용된다. 쇼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가 선호하는 대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흥미 있는 구성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자는 여론조사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여론조사를 기획하거나 결과를 인용할 경우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1. 여론조사의 기획

여론조사는 그 성격에 따라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조사, 특정 사안

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알아보기 위한 의견조사, 그리고 특정 내용에 대한 특정 계층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그 방법에 따라 과학적 조사방법을 이용한 과학적 조사와 과학적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인기투표와 같은 유사 여론조사로 구분할 수도 있다.

제작자가 여론조사를 활용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여론조사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조사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선거 예측조사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결과의 함의가 큰 조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학적 조사방법을 이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오락프로그램에 잠시 활용할 목적이라면 유사 여론조사로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의 활용 목적에 따라 조사방법을 선택하거나 조사결과를 인용할 때는 조사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여론조사의 방법 및 감리

2-1. 여론조사 방법

과학적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 신뢰도가 높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선거방송 관련 여론조사는 조사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문 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목적은 물론 예산의 규모, 조사결과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2. 여론조사의 감리

선거결과 예측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전문 조사기관에 맡겨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작자는 전문 조사기관이 조사설

계를 제대로 했는지, 표본은 올바르게 추출하는지, 실제조사는 성실히 수행하는지 등을 감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가 끝난 뒤 조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인수하여 여론조사 사후 감리를 실시한다.

3. 선거방송에 이용되는 여론조사

선거방송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후보자 지지도조사와 투표 당일 투표 종료 후에 발표할 수 있는 선거 예측조사이다.

후보자 지지도조사를 수행할 때는 과학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표할 경우, 결과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선거 예측조사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행·분석 및 보고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여론조사 방법론을 원용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 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 문하는 행위

-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③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 ④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⑥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기타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된 내용은 ‘16. 정치와 선거 3. 선거방송의 일반적인 주의 사항 3-6.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준용한다.

4. 출구조사

현행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항 ‘투표의 비밀 보장’ 조항에 의해 출구조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출구조사의 결과 역시 현행법 상으로는 선거 예측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5. 여론조사 보도

5-1.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 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 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앞서 밝힌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 여론조사의 공표와 관련된 내용은 ‘16. 정치와 선거 3. 선거방송의 일반적인 주의 사항 3-6.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준용한다.

5-2.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검토사항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조사결과를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득이 조사결과를 인용해야 할 경우,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인용해야 한다.

- ① 조사기관 및 조사의뢰자가 불분명한 경우
- ② 질문의 내용이 응답을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게 몰아가는 경우
- ③ 응답자의 선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④ 신뢰 구간에 따른 표본오차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 ⑤ 검증된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⑥ 무응답자의 비율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선거 여론조사의 인용과 관련된 내용은 ‘16. 정치와 선거 3. 선거방송의 일반적인 주의 사항 3-6.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준용한다.

5-3. 여론조사 결과 해석 및 보도 시 유의할 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 ① 조사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학적 조사방법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조사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한다. 표집방법이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결과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보도한다. 과학적 해석에 입각해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조사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④ 지지율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표현을 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또는 ‘하락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여론조사 결과의 추세, 최대 표본오차, 표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⑤ 찬반 의견을 묻는 조사의 경우 무응답자 및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 주의해야 한다. 제작자는 반드시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몇 %가 실제로 응답했는가?’라고 질문해야 한다. 만일 전체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응답하지 않았거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면, 실제로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그 안전에 대해서 ‘찬성을 표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⑥ 조사 결과에 대해 주관적인 표현을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예상을 넘는’ 반대를,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 ‘의외의’ 지지율 상승 등의 표현은 여론 조사 결과를 주관적 평가로 운색하는 것이 된다.
- ⑦ 조사결과에 나타난 수치에 근거해서 어떤 사실을 ‘확증’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다. 조사결과와 수치는 어떤 사실을 ‘제시’하거나 ‘보여줄’ 따름이다.
- ⑧ 조사결과에 나타난 수치가 곧 여론 그 자체는 아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을 탐색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여론조사의 수치는 여론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6. 유사 여론조사

제작자는 과학적 여론조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종의 인기투표 방식인 유사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 오락프로그램의 인기투표와 같은 경우, 전국을 대표하는 체계적인 표본을 근거로 의견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간단히 전화, 인터넷, 팩스, 엽서 등을 이용한 시청자 참여를 통해서 의견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단 유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그 조사가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시청자에게 밝혀야 한다. 즉 인기투표의 결과를 마치 전국 시청자를 대표하는 의견인 것처럼 발표해서는 안 되며, 인기투표의 점수가 곧 객관적인 점수에 대한 과학적 예측치인 듯한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에서 ‘누가 이길 것으로 보는가?’에 관한 여론 조사보도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단순히 희망사항을 반영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제작자는 유사 여론조사도 편파 시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유사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이 명백하게 편향되어 있거나, 특정 계층의 의견만을 수집했다면 틀림없이 시청자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제작자는 유사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설문 문항을 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10

오프 더 레코드와 풀 취재



1. 오프 더 레코드

언론의 의무는 국민에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언론은 모든 정보를 취득한 그대로(on the record) 보도한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신문이나 방송이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전부 혹은 일부 보도하지 않거나,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off the record)가 있다. 오프 더 레코드는 취재원이나 취재 대상에 관한 일부 정보를 익명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프 더 레코드의 사용은 그 효용 못지않게 여러 가지 폐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시청자가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출처의 익명화는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제작자는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오프 더 레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1-1. 오프 더 레코드의 종류

정보의 이용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익명보도: 정보를 이용하지만 추상적인 단어로 취재원을 표시하는 경우
- ‘한 외교소식통은 ~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라고 말했다’
- ② 배경설명: 취재원의 일반적인 직책과 함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외무부의 한 관리에 따르면, ~’
- ③ 심층배경 설명: 취재원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경우
- ‘~로 보인다’, ‘~할 전망이다’
- ④ 보도금지: 정보를 전혀 기사화하지 않는 경우

1-2. 오프 더 레코드의 성립

제작자는 오프 더 레코드에 함부로 동의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따라 오프 더 레코드 제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 특히, 정부나 대기업 등 권력기관 관계자들을 포함한 취재원의 상당수는 해당 정보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제작자는 면책을 위한 오프 더 레코드 제안에 대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제작자가 일단 취재원과 약속을 했으면 취재원 보호라는 직업윤리 상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또 취재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취재원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나 시기가 달라진다.

1-3. 제작자의 검토사항

취재원이 오프 더 레코드를 제의할 때에는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일단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되면 그에 의해 많은 제약과 분쟁의 소지, 책임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 ① 먼저 일대 일로 취재를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기자 간담회와 같이 여러 사람이 취재하는 경우에는 오프 더 레코드가 파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한 취재는 일대 일로 하는 것이 좋다.
- ② 그러나 오프 더 레코드는 종종 특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 제의를 거부해야 할 상황이 많을 수 있다. 그런 만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가. 과연 보호해야 할 중요한 정보인가?
 - 나. 왜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는가?
 - 다. 왜 나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가?
 - 라. 어떠한 조건인가?
 - 마. 달리 정보를 얻을 방법은 없는가?
- ③ 오프 더 레코드 제의를 받으면 먼저 취재원을 설득해서 가급적 철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된다면 배경 설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 내용이 확인되면 기사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제 시점은 언제인지 등에 대해 확인을 받도록 한다.
- ④ 일단 오프 더 레코드가 걸리면 책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책임자는 보고를 받으면 취재원의 신분, 오프 더 레코드의 성립 요건, 정보의 중요성, 확인취재 가능 여부, 파급 효과, 분쟁의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법을 지시한다.
- ⑤ 일단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되면 이를 지켜야 하나 취재 대상과 합의하거나 중대한 상황변화가 생기면 꺾 수 있다.
- ⑥ 오프 더 레코드가 걸린 내용은 보완적인 방법으로 별도의 확인취재를 하

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다시 취재원을 설득해 오프 더 레코드를 해제하도록 한다.

1-4.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① 제작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경우
- ② 내용이 명백한 공문서인 경우
- ③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의 경우(예: 다른 일반인들과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오프 더 레코드가 요구된 경우)
- ④ 기자가 직접 목격한 경우
- ⑤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한 취재원 이외의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확인한 경우
- ⑥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

서석재 장관 ‘전직대통령 4천억 원 보유’ 발언 파문 사건

1995년 8월 1일 민자당 지역구 조직책 복귀를 앞둔 서석재 당시 총무처 장관은 약 7명의 기자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식사 첫머리에 식사 중의 발언에 대해서는 오프 더 레코드로 할 것을 청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의 실세급 대리인이 ‘가명 계좌로 4천억이 있는데 2천억 원을 정부에 줄 테니 나머지 2천억 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느냐’고 물어 왔다는 말을 꺼냈다. 그래서 자신이 청와대 경제 수석과 국세청장에게 알아봤으나 방법이 도저히 없다고 했다. 식사가 끝나고 일부 기자들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일부 기자들은 보고는 했으나 기사화하지는 않았다. <조선일보>만이 보고를 받은 편집국장의 판단 아래 오프 더 레코드를 파기하고 이를 기사화했다.

위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위 사건에서 볼 때 서 장관의 발언을 보도한 것은 과연 잘 한

일인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오프 더 레코드의 파기를 옹호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 ① 오프 더 레코드가 전제될 만한 사건이나 사안이 전혀 없었다는 점
- ② 그 자리가 공식발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체 회식의 자리였다는 점
- ③ 이미 시중에 소문이 유포되어 일반인이 알고 있던 사안이었다는 점
- ④ 그 내용이 총무처 장관이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공적 정보’였다는 점
- ⑤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 아닌, 직무와 관련된 사실이었다는 점
- 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실명제의 존재 의미나 정치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국가운영의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오프 더 레코드를 지키는 것보다는 파기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반면 (조선일보)의 보도에 방법 상 문제가 있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즉 기사에서 서 장관의 발언을 직접 확인해 줄 수 있는 다른 두 사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으로 보아 서 장관의 발언 내용을 직접 인용하지 않아도 기사화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 장관의 발언을 직접 인용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① 서장관의 오프 더 레코드 요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목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② 일단 동의했다면 소속 정치부장과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쳐야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사례는 사건 자체의 충격으로 인해서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언론계 내부에서도 오프 더 레코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으로서 오프 더 레코드의 적용 기준과 방법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2. 풀(pool) 취재

풀 취재는 대표취재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 ① 취재를 희망하는 모든 언론기관의 취재진이나 기자가 취재장소에 접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
- ② 취재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해서 취재진의 수를 줄여 안정된 분위기속

에서 취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 ③ 취재진의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기자와 관계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을 만한 장소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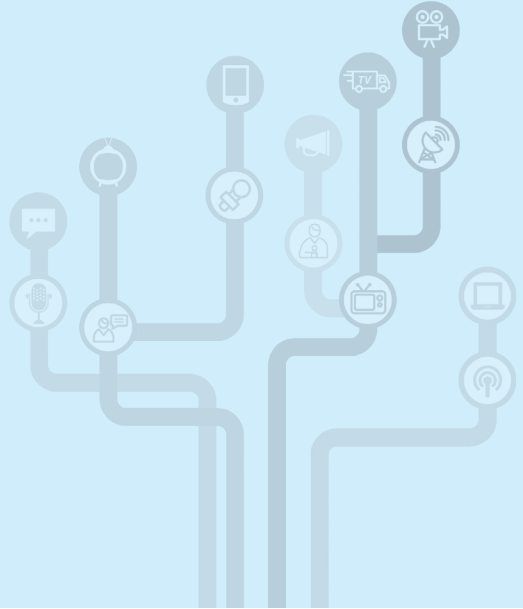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풀 취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풀 취재는 피치 못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해야 하며 단순히 취재의 편의를 위해 수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① 모든 보도기관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취재해야 한다는 취재 보도의 일반 원칙에서 벗어난다.
- ② 현장에 직접 접근하여 취재하지 않을 경우 사실을 정확히 수집하고 판단하기 힘들다.
- ③ 출입처 취재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취재원과 시각이 비슷해지거나 서로 담합할 위험이 있으며 균형 있게 보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단 풀 취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풀 취재에 참가해야 하며, 풀 취재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가한 모든 기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 기사를 보완해야 한다.

11

인터뷰



뉴스 및 프로그램에서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증언'의 기능이다. 어떤 사실에 대해 해설자나 진행자가 설명하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또는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사건 및 사태의 파악에 필수적일 때 인터뷰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인터뷰는 당사자가 자신의 체험에 대해 직접 증언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프로그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동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뷰는 의견개진, 설명, 해설, 주장, 진술 등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적절한 인터뷰는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터뷰의 삽입과 선택은 취재와 편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1. 인터뷰 준비

제작자는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인터뷰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좋은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터뷰 대상자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사전에 수집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제작자는 인터뷰 대상자가 답변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답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답변 내용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제작자, 다시 말해 KBS가 져야 하는 것이지만 인터뷰 대상자 역시 답변 내용에 책임이 있으므로 인터뷰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2. 섭외

섭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뷰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다. 특히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사회적, 학술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을 때, 또는 동일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의 진술, 증언 등이 엇갈릴 때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인터뷰가 프로그램에 포함되는지도 인터뷰 대상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특히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인터뷰의 사용목적의 의도적으로 변질, 왜곡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프로그램명과 취재자 및 제작자의 직책, 성명, 직위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실제로 방송될 인터뷰의 분량도 이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인터뷰 대상자에게 무제한의 시간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답변이 길어지면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 의도와 벗어나게 편집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제작자는

질문의 모든 내용을 인터뷰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려줄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질문의 주요 취지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 정확한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줄 경우, 인터뷰 대상자는 해당 질문에 대해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하여 프로그램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

또한 섭외할 때, 프로그램이 생방송인지, 녹화(녹음)물인지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이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방송될 것인지, 아니면 제작의도에 맞추어 편집될 수도 있는 것인지를 알리는 일과 같다.

3. 섭외 시 인터뷰에 대한 반대급부 요구에 대해

인터뷰에 응하는 대가로 KBS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료나 기념품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지명도, 프로그램 기여도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사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특히 범죄 관련자가 인터뷰의 대가로 도피자금이나, 도피처의 제공을 요구할 때는 인터뷰 내용이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사례나 대가가 아니더라도 인터뷰 대상자가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작자는 그 조건이 일상적인 사회 통념이나, KBS의 규정 또는 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인터뷰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을 부주의하게 수락하거나, 그와 유사한 느낌을 주면서까지 인터뷰해서는 안 된다.

4. 섭외가 없는 인터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섭외 없이 인터뷰할 수 있다.

- 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터뷰(거리 인터뷰)
- ② 취재원이 취재 사실을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③ 돌발적인 사건이나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견, 지식, 체험 등을 들어야 할 경우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취재 전이나 후에 반드시 인터뷰 대상자가 말한 내용이 방송에 사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고지해야 한다. 이때 사전 양해를 받지 못하면 방송에 사용할 수 없다. 단, 인터뷰 내용이 개인의 권익에 비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로 한다.

5. 인터뷰 취재

5-1. 질문자의 태도

인터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태도이다. 질문자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이어야 하며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 공정해야 한다. 또 질문자는 항상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질문자는 항상 예의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방송 현장의 제작 스태프들도 그러해야 한다.

인터뷰 전에 질문자는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상자의 기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이 뉴스 및 프로그램의 취지나 기획 의도

와 동떨어질 때는 간섭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압력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되며,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격려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피의자나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5-2. 편집과 방송의 약속

인터뷰는 편집과정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작자는 녹화(녹음)를 할 때, 인터뷰가 편집될 수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방송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5-3. 사전 설명

섭의를 할 때 미리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인터뷰 대상자에게 뉴스 및 프로그램의 의도, 인터뷰의 사용 목적 등을 설명해야 한다.

5-4. 인터뷰에 대한 간섭

제작자는 인터뷰 대상자가 일방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기획의도에 맞지 않게 답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인터뷰 길이를 제한하거나,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하고 설명한 뒤에 다시 녹화 및 녹음할 수 있다.

5-5. 비밀촬영 또는 허락받지 않은 녹음, 녹취

이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제작 전에 책임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촬영 후 방송에 사용될 것임을 미리 고지해야 하고, 만약 인터뷰 대상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다. 단 그 내용이 공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양해를 받지 않더라도 방송할 수 있다. 공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허가는 물론이고, 필요할 경우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작자는 가능한 한 비밀취재가 필요 없도록, 사전에 인터뷰 대상자를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5-6. 기습적 인터뷰

사전 통보가 없는 기습적, 돌발적 인터뷰의 경우, 제작자는 사후에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인터뷰의 사용 목적, 제작자의 직위, 성명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5-7. 특정 내용의 강요, 청탁

그 어떤 경우에도 인터뷰의 내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내용의 인터뷰라 하더라도 질문자나 제작자가 그 내용을 지정하여 강제하거나 부탁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거리에서 제작자의 의도대로 인터뷰를 하고서는 그것을 일반 여론으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5-8. 조작 인터뷰

증언을 들을 수 없을 때, 주변인물, 친지, 대역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하는 것은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조작에 해당됨을 인식해야 한다.

5-9. 향응 또는 촌지의 수수

어떤 경우라도 인터뷰의 대가로 현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인터뷰 삭제를 전제로 현금이나 향응을 받아서도 안 된다.

6. 편집

인터뷰 편집의 기본은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취지를 프로그램에서 정확히 살리는 것이다.

만일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길게 답변했을 경우, 자신의 취지와는 다른 내용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발언 취지와는 관계없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맞는 부분만을 발췌해 편집해서는 안 된다.

또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순서는 최대한 지켜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발언 취지가 왜곡되기 쉽다.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초상권 문제 또한 제작자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카메라를 의식하고 답변한 이상 초상권의 이용을 목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인상을 시청자에게 줄 수 있다. 이럴 때 제작자는 본인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익명 또는 가명 처리, 모자이크 처리, 음성 변조 등을 통해 초상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보호조치는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책임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또한 보호 조치만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인터뷰 내용을 그래픽으로 전달하거나 음성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방송에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8. 3-2. (2) 초상권 침해' 참조】

인터뷰 대상자가 인터뷰에 응한 후, 편집 단계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단 녹화된 부분은 KBS의 소유로 간주하고, 편집권이 KBS에 있음을 인터뷰 대상자에게 분명히 한다. 단 이러한 사실은 데스크나 책임 프로듀서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인터뷰의 내용을 모두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해설, 설명 등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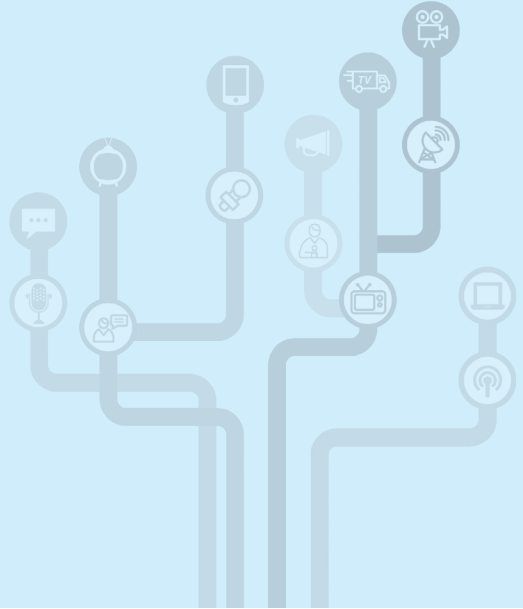
사례

KBS <21세기 강좌>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상진 교수의 강연(1989)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상진 교수의 강연(60분) 가운데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비판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23분가량의 내용을 삭제, 편집한 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강연의 핵심과 결론이 일방적으로 삭제되어 강의의 흐름이 중단되고 논리의 비약이 심했으며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의사가 왜곡되어 자신의 학자적 권위와 명예가 심하게 손상되었다'라는 이유로 사과방송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과방송을 하도록 판결하면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켰다기보다는 스스로 창조하여 꾸준히 연구, 발표해 온 중민이론의 이론적 체계성과 동일성을 손상하고 나아가 자기의 이름에 대해 갖는 원고 자신의 신념과 확신을 훼손시켜 결국 학자로서 또는 저술가로서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KBS의 책임을 인정했다.

12

해외취재



1. 일반지침

- ① 취재에 앞서 해당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정치구조, 법률, 사회, 역사와 문화, 관습 등에 관해 소상히 파악해야 한다.
- ② 특정 인종, 민족, 국가, 종교에 대해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갖지 않고 취재해야 한다.
- ③ 외국 상호 간의 전쟁이나 내전, 내분 등을 취재할 경우 어느 한쪽만이 아닌 해당 국가 모두를 취재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득이 한쪽만을 취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 ④ 각종 조약, 협정 등 미묘한 문제를 취급하는 경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판단하며, 자국 이기주의나 특정 지역적·종교적·문화적 편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⑤ 지명, 인명 등의 고유명사를 우리말로 표현할 경우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한다.

2. 실무지침

- ① 해외취재는 해당국가의 취재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취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흔히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라고 할 때, 이는 관광이나 사업차 입국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언론기관의 취재 시에는 대부분 취재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취재 규제가 엄격한 나라의 취재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KBS 지국이나 현지 대사관과 긴밀히 연락한다.
- ② 취재를 원하는 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에 미리 취재의 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전해야 한다. 이 때 해당 국가의 관례를 충분히 파악하도록 한다.
- ③ 취재할 때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요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예: 안전모자, 안전구두, 안전복, 방탄복(전쟁지역) 착용 등).
- ④ 취재진은 각종 보험 관련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재국가에 풍토병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현지 도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고 체계와 연락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KBS 지국이 있을 경우, 본사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지국에도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한다. 해외 취재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소한 것이라도 현지 지국과 본사에 보고해 필요한 지시를 받도록 한다.
- ⑥ 원칙적으로 모든 취재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얻지 않고 취재를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우호적인 취재활동이라고 간주되어 적발, 또는 법적 처리까지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현지에서 직접 취재 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르는 허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⑦ 전쟁 지역이나 위험 지역에서 취재를 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카메라는 총포로 오해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한다. 일반 해외취재

때와 마찬가지로 통신 수단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카메라맨은 취재 때문에 시계가 좁아져, 위험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취재진은 항상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아무리 위험한 전쟁지역에 들어가더라도 취재진이 무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 ⑧ 분쟁지역이나 위험지역의 경우 취재나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본사와 협의해서 철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취재진의 재량으로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
- ⑨ 먼저 취재한 취재진의 행동은 다음 취재진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으므로 취재 시에는 모든 행동에 유의하고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13

편집과 포스트 프로덕션



1. 편집

1-1. 인권에 대한 배려

편집자는 편집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망자에 대해서는 더욱 사려 깊은 편집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배려는 불특정 다수를 담은 영상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1-2. 편집의 객관성 유지

편집자는 편집에 있어서 정치적, 상업적, 그 밖의 어떤 이해관계나 자신의 개인적 편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편집의 객관성은 단순히 동일한 시간 배분 같은 1차적인 균형의 유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집자는 프로

그램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들을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한다.

1-3. 편집의 권한과 책임

편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편집 데스크와 책임 프로듀서에게 있다. 물리적인 편집은 원칙적으로 담당 기자와 담당 프로듀서가 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데스크나 책임 프로듀서가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편집에 대해 담당자와 책임자의 의견이 현저히 다른 경우나 특별히 사안이 중대한 경우, 부서장과 본부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작자는 자문에 응한 부서장 혹은 본부장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그 책임 또한 부서장 혹은 본부장에게 있다. 이러한 절차로도 의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KBS 방송 편성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편집의 공개 여부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료(기획서, 취재 테이프, 구성안, 취재 노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 등)는 외부의 개인 혹은 단체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 대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편집 시 입회나 사전 시사를 할 수 없다.

- ① 프로그램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편집·시사 입회를 요청하는 경우
- ② 취재 대상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편집·시사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녹화 테이프나 편집 테이프의 시사가 취재허가의 조건인 경우(단 어떤 부

분을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데스크나 책임 프로듀서가 판단한다)

- ④ 프로그램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사나 기자 간담회의 경우

1-5. 인터뷰 편집

인터뷰 편집은 인터뷰 전체의 문맥을 존중해야 한다. 인터뷰에 응한 출연자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발췌하여 발언 의도와 다르게 프로그램의 흐름에 꺾어 맞추는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취재 담당자와 인터뷰에 응한 출연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데스크와 책임 프로듀서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인터뷰에 응하는 출연자가 요구하는 조건이 프로그램이나 KBS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데스크나 책임 프로듀서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방송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제작자가 인터뷰 내용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방송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데스크나 책임 프로듀서의 결정 후에 방송할 수 있다.

인터뷰 시 한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편집을 위해 별도로 촬영한 영상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허용되나,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터뷰의 재사용은 원래의 인터뷰 상황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때 인터뷰 시점을 자막이나 멘트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이미지컷

이미지 컷은 취재대상에 대해 제작자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실사로 바꾼 영상을 말한다. 일반 프로그램에서의 이미지 컷 사용은 표현의 주요한 방법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 컷은 프로그램 제작시, 연출자의 판단으로 발언 맥락을 구체화, 형상화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작자만의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자유롭게 다양한 이미지

수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뉴스에서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2. 음악과 음향

2-1. 음악의 사용

음악의 사용은 프로그램의 모든 장르에 폭넓게 허용된다. 음악의 선택은 저작권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해외 수출, OTT 확장 등 국내외 저작권 환경이 달라질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맥락과 분위기의 조화를 위한 적절한 선곡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메시지가 강한 선곡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뉴스에서는 시·청취자들에게 불필요한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음악의 선택과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2. 음성과 음향

뉴스에서 앵커나 기자,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나 내레이터, 스포츠 중계에서 캐스터나 해설자가 구사하는 방송언어의 어조 및 억양은 시청자에게 다양하게 작용한다. 제작자는 이들 방송언어의 어조 및 억양이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어조 및 억양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뉴스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효과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현장음이 중요한 사실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효과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현장에서 수록된 자연음을 사용하여 편집에서 현장음이 끊어지는 느낌이 없도록 하는 경우에도 전체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3. 음성의 가공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음성의 가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 음성을 가공할 경우에는 알아듣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음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또 음성을 가공했다는 점과 왜 음성을 가공했는지를 자막이나 멘트로 밝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멘트

3-1. 올바른 표현

제작자는 방송에 쓰이는 모든 말과 글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우리말이 보급될 수 있도록 어휘·어법·발음을 항상 정확히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멘트는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간결한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품위 있고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한다. 하나 하나의 단어와 문장이 전체적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멘트의 뉘앙스까지 검토해야 한다. 만일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추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멘트의 내용이 추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3-2. 신중한 표현

방송되는 모든 멘트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변화하는 세태에 따라 개념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특히 성적 묘사나 폭력적인 내용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3. 작가가 쓴 원고

작가가 쓴 원고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담당 프로듀서와 책임 프로듀서에게 있다. 제작자는 방송될 원고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작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4. MC와 출연자의 발언

제작자는 특히, MC나 출연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기획 의도나 내용과 동떨어진 발언, 또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해야 한다. 생방송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 즉시 정정 또는 사과하도록 한다.

출연자의 선정은 제작자가 하지만 그 선택은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논쟁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의 발언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일방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출연자 선정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안이 중대할 때는, 이를 문서 등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예고 프로그램

예고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의 모든 기준에 따른다. 예고 프로그램을 본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아닌 사람이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본방송 제작자의 감수를 거쳐야 하고, 그 책임은 본방송 프로그램의 기준에 준한다. 예고 프로그램 안에 본방송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담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으로 시청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 특히 ‘최초 공개’, ‘독점 취재’ 등의 단정적이거나 배타적인 표현은 사실에 입각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3-6. 번역더빙

외국인의 인터뷰를 번역하는 경우 지나친 의역이나 생략은 삼가야 한다. 특히 원문에 없는 말을 덧붙여 발언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4. 재연

어떤 사실에 기초하여 과거의 일을 재구성하는 이른바 재연(再演)은 유효한 영상표현의 하나이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시청자가 재연된 영상을 실사(현실을 기록한 영상)로 오해하지 않도록 자막, 멘트 등으로 재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② 중요한 사실을 생략 또는 과장하는 방식으로 재연함으로써 총체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③ 재연은 가능한 한 섬세한 사항까지 사실과 일치하도록 연출한다. 필요하다면 재연이 모든 세부적인 사실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는 한계를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사건 재연 시 폭력과 흥기, 상처, 성표현 등을 줄거리와 관계없이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뉴스에서는 재연을 사용한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의 프로그램에서의 재연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나, 부득이 재연하는 경우에도 시청자가 재연과 실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실 프로그램에서의 재연은 객관적 사실을 그리는 데 충실해야 하며, 드라마 구성에서와 같은 심리적 대응 샷이나 리액션 샷은 자제해야 한다.

5. 그래픽 및 영상의 가공

5-1. 그래픽

프로그램에서의 그래픽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그래픽은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하고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근거로 제작해야 한다. 2D, 3D 그래픽 모두 그 색깔과 움직임이 공영방송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높은 완성도를 지녀야 한다.

5-2. 자막

자막에 쓰이는 문자 언어도 음성 언어에 못지않게 국민의 언어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막의 오류는 시청자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작자는 아래와 같은 자막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① 인터뷰한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막은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문 규범에 맞게 써야 한다.
- ② 모든 자막은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자막의 글자 수, 크기, 속도 등은 시청자가 보기 편하도록 설정한다.
- ④ 과도하게 조잡하고 현란한 자막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유의한다.

5-3. 영상의 가공

편집 기자재의 발달은 다양한 영상의 가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실사와 가공된 영상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동일한 소재도 전혀 다른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편집의 기술과 방법이 고도로 발달하더라도 제작자

는 사실을 정확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4. 익명성 보장을 위한 영상가공

취재제작 과정에서 취재원이나 취재 대상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자이크나 포커스 아웃 등의 기법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정보 제공자나 근친자의 신변에 위험이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터뷰를 했을 경우에는 모자이크 등 영상가공이 인정된다.

일단 모자이크나 포커스 아웃 등으로 출연자의 익명성을 보호할 경우에는 인터뷰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익명성의 보호가 더욱 요구되는 경우에는 대역 재연, 음성 대독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역 재연, 음성 대독임을 밝히고, 출연자의 원래 발언과 대역, 대독의 발언이 일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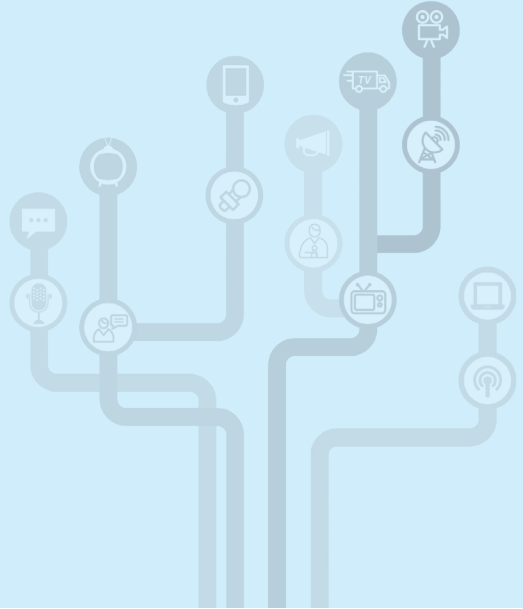
사례

KBS 2TV <독점여성> (1995. 11. 04.)

‘이브의 분노-성희롱’ 편 생방송 도중 성폭력 상담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출연자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제작자는 출연자의 사전진술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여 방송하였다. 이에 직장 상사는 출연자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자신의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KBS가 출연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원고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직장이나 원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출연자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실명으로 출연하여 ‘○차장’이라고 원고를 지칭함으로써 적어도 원고의 직장 동료들이 ‘○차장’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시하였다.

14

출연자



출연자란 KBS가 요청해 출연한 인물이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출연자의 말과 행동은 KBS의 이미지와 곧바로 이어지므로 출연자의 섭외에서부터 방송 후 관리까지 세심한 주의가 따라야 한다.

1. 진행자

진행자는 KBS 프로그램의 얼굴이다. 따라서 진행자는 KBS가 추구하는 방송 정책이나 기준을 숙지하고 프로그램의 공공성, 독립성,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나 찬반이 뚜렷한 주제를 놓고 대립되는 연사들이 출연할 경우에는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진행자는 토론자를 대할 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공정성을 최우선해 시청자의 신뢰

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해설자

해설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시청자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돕는 사람이다. 해설자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하거나 편향적인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해설자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3. 방청 출연

방청 출연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제작자는 양측의 의견이 공평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방청출연자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토론 중에 소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 출연자에게 사전에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4. 출연자의 섭외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출연자는 개인 자격이든, 특정 단체의 대표이든 그 신분이 확실해야 한다. 해당 제작자는 반드시 그 신분이나 단체의 활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의 주제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섭외에 노력한다.

5. 공평한 대우

제작자는 모든 출연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공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출연자가 프로그램 전후, 또는 방송 중에 부당한 취급을 받았거나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출연자에게 사전에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개요와 함께 자신이 어떤 형태로 출연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녹화방송인 경우 편집될 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6. 출연의 제한

6-1. 정치인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역 정치인의 KBS 프로그램 출연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정치인이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의 경우 소속 정당이나 자신에 대한 홍보를 위해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2. 연예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출연을 금지시킬 수 있다. 해당 연예인의 방송출연 규제 및 규제해제와 관련해서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6-3. 전문가

특정 분야의 관련 인사나 전문가가 출연할 경우, 프로그램 출연의 타당성과 적합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6-4. 미성년자

미성년자를 출연시킬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 ①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미성년자를 출연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②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미성년자를 동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히 어린이를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6-5. 기타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나 그 사안에 관련된 사람은 출연할 수 없다.

7. 출연자의 용모

7-1. 간접 광고

옷이나 모자, 액세서리 등에 간접광고의 우려가 있는 문구나 상표가 들어 있는 의상 착용을 금한다.

7-2. 용모

출연자가 방송 내용과 관련 없이 과도한 노출이 있거나 혐오감을 주는 복장, 장신구 등을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프로듀서와 책임 프로듀서가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한다.

8. 출연자의 익명성 보장

출연자가 익명을 요구할 때 제작자는 기술적으로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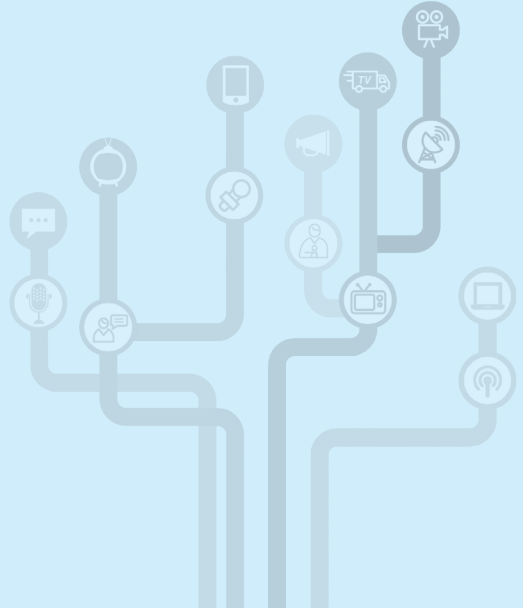
9. 토론 참가 거부자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의견과 입장이 대립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참석을 요구하면 종종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작자는 불참하는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대리할 수 있는 출연자를 찾거나 지금까지의 발언과 출판물 등을 기초로 의견을 소개하는 등 대립되는 의견을 공평하게 소개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토론에 참가하기를 거절하거나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할 경우, 제작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작자가 그 불참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빈 의자 화면을 보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대신 진행자는 시청자를 위해 간단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불참의 사유를 밝히는 것이 좋다.

15

생방송



생방송은 녹화 방송과는 달리 편집이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 따라서 생방송에 참여하는 사회자와 패널 등 모든 출연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말이나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한다.

1. 사전에 알려야 할 사항

제작자는 생방송에 앞서 출연자에게 비속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사항, 직·간접적으로 상품의 광고 효과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또한 전 출연자들에게 KBS가 요구하는 품위를 지키도록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2. 진행자

진행자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애드리브(즉흥적 멘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애드리브도 KBS의 방송 기준이나 프로그램의 제작 방향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구사되어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진행자는 표준말을 써야 하고 비속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출연자나 방청객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자극적인 언사나 모욕적인 발언을 삼간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의 돌발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의연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한다. 출연자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적절히 제지하고 진행자 스스로 그러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고 사과한다.

3. 시청자 전화 참여

시청자가 전화로 생방송에 참여할 때에는 예상되는 통화 수요에 맞는 기술적 준비를 하고, 수신 담당자는 그 의견을 가감 없이 충실하게 기록해야 한다.

생방송에 참여시킬 통화자는 반드시 주소, 성명 등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또한 통화자에게 비속어, 명예훼손, 지역감정 유발, 인종 차별, 혹은 광고성 발언 등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주어야 한다.

4. 전화의 차단

KBS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는 의견을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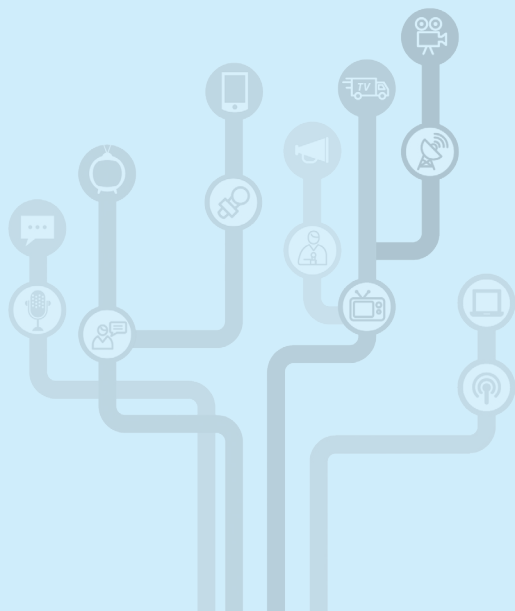
되어 있는 소재나 주제를 다룰 때, 압력단체나 개인이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을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즉각 음향을 차단하거나 진행자의 제지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익명의 전화

사회 고발성 프로그램을 생방송할 경우에는 익명의 제보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혹은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그 제보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KBS는 그 법적·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16

정치와 선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방송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이며,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소중한 가치이다. KBS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와 모습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작자는 정치에 대한 시청자의 높은 관심, 시민사회의 견제기능, 그리고 현대 정치와 선거에서 방송이 갖는 막대한 영향력 등에 유의하여 방송이 정치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일반 기준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취재 보도에 있어 프로그램 제작에 정확성, 공정성, 진

실성을 중요한 가치로 상정한다.

1-1. 평등과 형평

정당 내부 행사를 보도할 경우에는 보도 자체가 다른 당과의 형평에 맞는지, 혹은 보도 내용이 편향적이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선거방송의 경우 모든 후보를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큰 방송에서 모든 후보를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시청자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서 형평의 개념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후보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등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를 다루는 것이 그 한 방식이다. 평상시 국회를 다룰 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 보도하는 것도 형평을 중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역시 보다 복잡한 안전장치를 갖춘 일종의 여론 반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신뢰도를 갖춘 여론조사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2. 이상과 현실

정치는 이상과 현실의 양 측면을 지닌다. '현실'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 관한 판단은 시청자가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작자 역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1-3. 소수에 대한 배려

정치는 수의 논리가 지배한다. 비록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경우라도 다수가 의사 결정을 지배한다. 물론 소수도 자신의 논리를 다수에게 충분히 호소할 권

리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다수의 의사만이 통용되는 경향이 있다. 수의 논리가 선거로 대표되는 정치 과정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는 더욱 소수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는 영원한 다수, 소수는 영원한 소수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때로는 소수가 보다 참되고 진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사안을 보도할 경우에는 특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1-4. 용어 사용에 대한 유의

방송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말했다’, ‘밝혔다’, ‘설명했다’, ‘주장했다’는 모두 다른 말이다. 예를 들어, A는 밝히고, B는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미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명이 난 셈이 된다. 또한 제작자는 사회과학적 용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어 프로그램의 내용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정치인과의 신뢰관계와 유착관계

오랜 기간 정치권을 취재하다 보면 정치인의 필요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필요에 따라 특정 정치인과 가까워질 수 있다. 제작자에게 있어 취재원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신뢰받지 못하면 취재 자체가 봉쇄되고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작자는 취재원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다.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치인과 제작자의 관계가 유착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인에게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정보를 얻기 위해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으로 취재한 정보나 동료 제작자의 취재 메모를 그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1-6. 정책과 인사

정치 프로그램은 항상 정책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인물 위주의 정치 보도는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자칫 시청자의 관심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오도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인재 기용을 의미하는 인사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와 개각으로 요약되는 인사는 정치 과정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이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작자의 중요한 의무이다.

1-7. 가치판단의 문제

어느 사안에 대해 한 당사자나 한 정당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특정 사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공평하게 수렴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고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출입처로부터 얻은 정보는 그것이 정확하고 객관적인지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2. 정치 보도의 실제

2-1. 의정활동

국회 의정활동의 촬영은 대체로 가능하다. 단 보도 목적이 아니면, 본회의장의 경우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상임위원장 또는 특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도 목적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특위 위원장은 의원, 상임위원, 특위 위원외의 뜻에 따라 촬영을 금지할 수 있다.

의원의 발언을 편집할 때에는 원래의 발언 의도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특히 서로 분리된 발언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중간에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한다.

2-2. 프로그램에서의 자료 활용

보도본부에서 촬영한 국회 자료는 일반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코미디나 드라마에 사용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그 표현수위나 표현기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3.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회기 내에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가진다. 그러나 국회 의사당 복도에서의 의원의 발언처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특위에서의 발언이 아니면 보호받지 못한다. 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특위 발언이라 하더라도 국회 자체에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제작자는 의원의 발언을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2-4. 국무위원의 방송 출연

국무위원은 법령이나 국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작자는 출연을 거부할 수도 있다. 출연거부 사실은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간결하고 적절하게 알릴 수 있다.

3. 선거방송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선거방송은 선거운동 보도나 선거 관련 기획 방송을 비롯한 모든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선거방송은 곧 KBS가 시청자로부터 공정한 방송 혹은 신뢰받는 방송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따라서 제작자는 KBS의 모든 선거방송이 독립성,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유용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기획·제작·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KBS는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시청자가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방송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주요 공직선거에서 다루어야 할 방송은 후보 경력방송, 방송연설, 방송광고, 토론방송, 투표 및 개표방송 등이 있다.

3-1. 선거보도의 기본원칙

① 독립성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작자는 독립적인 보도·편집·제작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② 공정성

선거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성이다.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보도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다. 그러나 공정성을 프로그램 내용 차원에서 구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개별 프로그램 내부에서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각 후보자를 불편부당하게 대하는 것에서부터 연속 기획물에서 각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③ 정확성

선거보도에서는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하고 정확한 뉴스 전달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다. 단편적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사실의 집합체인 전체 정보 차원의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객관성

선거보도는 공정성의 원칙을 기초로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과 주장, 쟁점에 대해서는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선거 과정에서 논쟁의 다양한 영역에 적절한 비중을 두어 다루는 자세를 견지한다.

⑤ 유용성

선거보도는 선거를 감시하는 보도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보도를 추구한다.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해당 공직 수행의 자격을 판단한다는 검증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인, 후보자에 대한 보도에 균형을 맞추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민 중심의 보도를 통해 유권자가 여론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형평성

후보자가 많을 경우 주요 정당 소속 여부나 지지율을 감안하여 보도하되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3-2. 선거법 준수

① 공직선거법

선거방송은 법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방송과 관련된 제작자는 현행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음의 조항을 숙지해야 한다.

-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제70조 방송광고
-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 제73조 경력방송
-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108조의3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각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합의에 따라 선거법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이 빈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방송에 종사하는 제작자는 선거방송 관련 법조항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법 개정어 맞추어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 자체가 불법인 행위를 무심코 방송하는 것도 위법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되는 만큼, 선거 관련 법조항에 대한 제작자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및 시민운동단체의 선거방송 감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법의 정신에 따라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도록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과 더불어 <심의세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선거방송 전반에 걸친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선거에 즈음해서 발족되는 각종 시민운동단체 역시 방송 뉴스를 비롯한 각종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불공정 방송 사례를 고발한다. 제작자들은 KBS의 선거방송이 공정한 보도, 균형 있는 제작의 모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3. 검증 보도

① 후보자 검증

경력·학력·재산·병역·전과 등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과 자질 검증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경우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보도해야 한다. 특정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힌다.

선거 보도에 관한 자료의 출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근거 자료는 두 사람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에게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그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에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와 취재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터뷰 대상자 또는 취재원의 신원이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취재원이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에는 취재원의 신원을 데스크 등 보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폭로성 주장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과 방송·지면·온라인·모바일·SNS 등을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이나 단순한 인신 공격성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단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주장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데스크 등 보도 책임자와 상의해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매체가 보도한 사안을 알릴 경우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앞의 조건에 맞춰 엄밀히 보도했지만 폭로성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③ 정책과 공약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보도할 경우 채용 조달 방안, 우선순위, 이행 방법 등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께 보도하도록 노력한다.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에 관한 비교 평가를 할 경우 정당이나 후보

자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 해서는 안 된다.

3-4. 정당과 후보의 보도 순서

선거 보도에서는 정당과 후보자의 순서도 민감한 대상이다.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

후보자의 공약이나 입장, 유세, 동정 등에 관한 보도 순서는 소속된 정당의 국회 의석 순서에 따르고,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후보자의 보도 순서는 그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정당은 아니지만, 국회 활동에 참여하는 정치단체 소속일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보도 순서를 정할 수 있다.

또한 보도 시점 직전 KBS 또는 전국 단위의 언론사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3%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의 경우 지지율을 감안해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기호 순으로 보도한다.

소수정당이나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라도 포함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론조사의 기준은 후술하는 여론조사 항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3-5. 공명선거 보도

금권 선거나 관권 선거, 불법 타락 선거 운동은 철저히 감시해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정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각종 단체의 선거부정 감시활동을 보도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

련된 활동인지 철저히 확인한다. 이 경우 단체 활동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과 KBS 선거방송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 간 기계적 균형보다 위반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3-6. 선거 여론조사 보도

① 보도 원칙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 결과를 보도(최초의 공표·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만을 보도해야 한다. 이때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위법하다고 공지됐는지 여부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여서는 안된다. 아래 표본의 크기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안된다.

1. 국회의원 선거구·시·군 단위 조사: 500명
2. 광역 단위 조사: 800명
3. 복수 광역 단위·전국 단위 조사: 1,000명

선거여론조사의 가중값 배율이 성별·연령대별·지역별로 각각 0.7~1.5를 충

족시켜야 보도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최초 보도(TV·라디오의 단신과 리포트, 출연, 온라인 기사를 포함한다)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일시·대상·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을 함께 보도해야 한다. 또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미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자사나 다른 언론 등에서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판세를 비교 분석해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보도해야 한다.

1.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일시·대상·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 이미 공표·보도된 복수의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판세 등의 비교·분석 시
 분석 의뢰자, 분석기관·단체명,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분석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② 여론조사 보도의 제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및 공표 금지 기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금지기간에도 그 사실을 밝혀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조사 시점 등을 명확하게 한 다음 보도해야 한다.

③ 과학적 해석 보도

과학적 표집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응답자로 참여하는 인터넷 여론조사 또는 ARS 여론조사, 개별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여론조사는 보도하지 않는다.

선거여론조사 결과 후보자 또는 정당별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보도한다.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주의한다. 조사결과가 갈등적 사안의 한 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할 경우에는 경쟁자나 경쟁 집단 사이의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보도는 자제한다. 후보자 캠프와 선거 전문가의 선거 전망과 판세 분석 보도는 최대한 신중하게 한다. 인기투표·모의투표 등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지 어려운 유사 여론조사의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3-7. 영상취재와 편집

① 영상취재 시 유의점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최대한 동등한 촬영 조건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거리 유세와 선거 운동은 같은 조건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정당 간, 후보자 간 촬영 거리와 촬영 각도, 화면의 크기와 밝기 등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되 최대한 동등한 조건을 유지한다.

선거 유세와 인터뷰 녹취 촬영은 정면 바스트 샷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 후보를 특정 샷으로 촬영할 경우 다른 경쟁 후보에게도 최대한 균형을 맞춘다. 선거 공약 등에 대한 인터뷰는 생생한 화면 확보를 위해 되도록 실제 유세 현장의 녹취를 사용한다. 촬영 시 유세를 보는 군중의 규모나 반응은 촬영 당시 최고치를 촬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 시 유의점

각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편집은 화면 크기와 화면 각도, 노출 시간 등을 동등하게 한다. 촬영된 화면의 편집은 인위적 조작을 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과는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세시 군중 규모나 반응은 촬영된 화면 가운데 최대치를 사용한다. 군중의 환호 등 현장음의 크기를 왜곡하지 않는다.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현격한 화면 톤의 차이는 영상편집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상의 후 보정할 수 있다.

③ 방송 화면 사용 제한

자료화면으로 선거유세 장면을 사용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국민갈등을 조장하거나 경쟁 후보자를 비방하는 화면과 음향은 방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이 단순하게 정당의 동정을 보도할 경우 특정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가 부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후보자의 단순 실수 또는 특정 후보자나 정치인에 대한 군중의 부정적인 반응 등 선거를 희화하거나 후보자 등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화면과 음향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 단,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데스크 등 보도 책임자와 상의해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3-8. 후보의 방송 출연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재·보궐선거)에서는 정당 후보자 방송연설과 광고방송이 실시된다. 절차와 제한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다.

정당 후보자 방송연설과 광고방송의 편집권은 정당에 있으며 방송사는 그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방송사는 송출만을 담당하게 되지만 그렇더라도 프로그램의 적법성, 품위, 사회윤리에 대한 적합성 등에 대한 책임은 방송사라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므로 정당 측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방송 출연은 후보가 '의식적,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넘어서는 후보의 '출연'은 선거에서 부당한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후보의 대중집회 연설이나 모든 매체에 개방된 기자회견은 '출연'이 아니라고 해석되지만, 이 또한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① 후보가 정당을 대표해 출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프로그램이 (i) 그 후보의 지역구나 선거 지역에 관한 것이 아닐 때, (ii) 후보를 지역구나 선거 지역과 직접 연관시켜 이야기하지 않을 때, (iii) 또는 지역 후보로 인식되지 않을 때, 후보는 정당을 대표해 출연할 수 있다. 어떤 의미로 든 대표성이 없던 후보가 선거 기간 중 갑자기 대표성을 내세우려 할 때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② 후보 가족의 방송 출연

법적 금지규정은 없지만, 후보 가족을 출연시켜야 할 필연성이 없는 한 가족

인터뷰나 출연은 자제한다.

③ 선거 홍보물, 포스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보여 주거나 들려 주어서는 안 된다. 뉴스나 프로그램을 위해 촬영할 경우 제작자는 후보가 자신의 홍보 포스터 앞에 서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의 방송 출연

연예인을 비롯하여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정하는 기간 이전까지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로서 등록한 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송 이외의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사례

후보자가 출연한 영화나 후보자가 부른 노래를 방송하는 행위, 후보자의 사진이 들어 있는 음악 앨범의 표지를 화면에 비추는 행위, 후보자가 집필한 저서의 일부를 라디오 DJ가 낭독하는 행위, 후보자가 출연한 CF를 방송하는 행위 등은 모두 <선거방송심의규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9. 선거 관련 방송 사항

① 경력방송, 방송연설 및 방송광고

KBS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

기간 중 TV와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주요한 경력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경력 방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공직선거법〉 제73조).

관련법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TV 및 라디오에 광고물을 제작해 방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② 후보자 토론

가. 후보자 토론 일반

후보자 토론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을 시작으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선거방송의 하나이다. 후보자 토론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은 매우 크며, 후보자 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후보자 토론 기획과 제작 전반에 걸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작자는 토론방식, 사회자 진행, 패널의 선정, 시간 할당, 질문의 준비 등 후보자 토론 전반에 걸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사회자 및 패널의 선정, 토론의 형식, 질문의 내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KBS 내외로부터 자문을 얻는 등 세심한 준비를 통해 후보자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법정 TV 토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 행해지는 대담회 및 토론회는 해당 법률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제작한다.

③ 투표 당일 방송 및 개표방송

가. 투표 전일 방송

투표가 임박한 선거 전날에는 폭로에 대한 보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한다. 특히 폭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까지 폭로 대상자의 반론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데스크 등 보도 책임자와 상의해 결정한다. 이는 ‘반론을 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주장을 기사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사례

1998. 6. 4 지방선거 당시, ○○당에서는 △△당의 000 후보의 가정 문제가 복잡하다는 흑색선전 성명을 냈으나, KBS는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 이 성명 내용은 선거 후 보름 만에 허위로 판명됐고, 성명을 발표한 ○○당 부대변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 발표에 후보나 정당의 이름이 포함될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의 성명을 인용 보도했을 뿐이라고 해서 언론기관이나 취재 기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나. 투표 당일 방송

모든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투표 당일 오전 0시를 기해 종료되며, 투표가 마감되는 순간까지 투표 상황에 대한 사실보도를 제외하고는 유권자의 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

투표 당일의 방송은 선거과정을 공정하게 균형 잡힌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전반적인 투표과정에 대한 차별한 사실 보도가 필요하며, 특히 투표 당일의 방송이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개표방송

투표종료에 즈음해서 방송되는 개표방송은 선거방송의 마무리이자 클라이맥

스이다. 시청자는 선거결과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알기 원한다. 이러한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KBS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신속·정확한 개표방송을 준비해야 한다. KBS는 개표방송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선거의 결과에 대해 성급한 예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KBS 개표방송은 정확성을 제일의 가치로 한다. 예측조사 결과 예상 득표율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경합’으로만 밝혀야 하고, 특히 총선의 경우 정당별 의석수 예측에서는 경합지역을 신중히 다뤄 보도한다. 개표 결과, 예측조사가 틀렸을 경우에는 개표방송이 끝나기 전에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을 한다.

개표방송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개표과정 중계 등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하나의 종합 이벤트 방송이다. 개표과정과 개표결과를 시청자에게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경제 뉴스 및 프로그램 기준

- ① 기업의 도산, 은행의 금융파탄 등과 관련된 보도는 특정 기업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나 예금인출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보도 시점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경제 불안과 관련한 상품의 매점매석 소동 등을 취재할 때는 시민 생활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연히 불안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는 삼가야 한다.
- ③ 상품 관련 사고는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한 뒤에 방송해야 한다. 신상품을 방송할 때에는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지 뉴스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특정기업에 유리한 방송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④ 각종 경제지표, 통계 관련 정보 등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지표의 속성, 통계 자료의 객관성 검증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는 경영자의 주관적인 경기예측을 수치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편향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수로서 과학적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경제 프로그램과 이해관계

경제 뉴스와 프로그램은 시장을 움직여 시장 참가자의 금전적인 손익으로 연

결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작자는 이해 충돌 방지의 원칙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며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도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작자는 자신이 다루는 상품이나 기업과 이해관계를 맺을 수 없다. 또한 취재에 의해 얻은 정보를 방송 이외의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① 경제 프로그램의 취재대상은 영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제작자는 취재 대상에게 이용되고 있지 않은지 늘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취재 대상의 이익에 반하는 취재·보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 ② 증권 거래의 내부자 거래 규제 준수는 물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결코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획득한 정보를 시장에 앞서 개인적으로 상거래에 이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
- ③ 개인의 주식 소유는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주식 관련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작자는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는 주식 거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전통 문화·예술 프로그램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술은 우리 조상들의 예지와 예술적 재능이 축적된 소중한 자산이다. 전통예술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새 예술을 창조하는 바탕이자 밑거름이다. KBS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전통 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육성함으로써 새 문화예술 창조에 이바지해야 한다. 또한 순수 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지향하며 폭넓은 분야를 다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대중문화 프로그램

제작자는 대중의 수요를 적절히 파악해 내는 안목을 필요로 하며 다양성을 높은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인권에 대한 개념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작자는 문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서로 다른 문화적 기호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방송이 진정한 의미 교류와 문화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문화와 예술 부문의 취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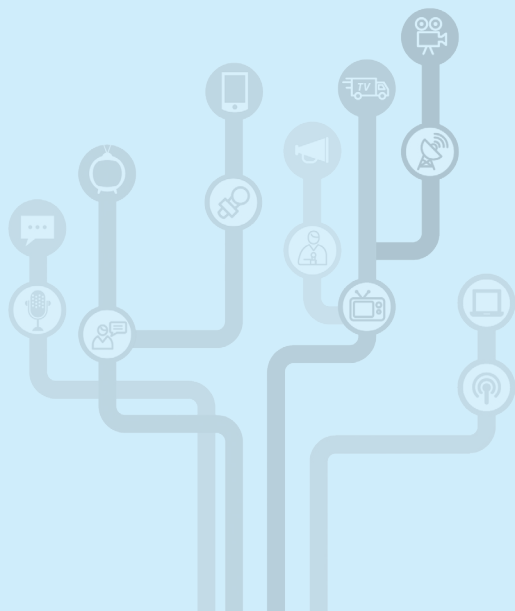
문화와 예술 부문을 취재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그 속에 담긴 예술성과 철학이 어떻게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표출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아이템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선정되었는가?
- ② 정보는 정확히 전달되는가?
- ③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는가?

- ④ 주관적인 해석에 의한 비평을 하지는 않았는가?
- ⑤ 시청자들의 문화 향수 욕구에 부응하고 있는가?
- ⑥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는가?
- ⑦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공익과 인권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는가?

19

자연



방송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가급적 모든 파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자연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을 통해 이해를 돕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본 원칙

- ① 자연 프로그램은 모든 사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진실성과 정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자연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획의도를 가지고 제작될 수 있으나 제작 과정

에서 생명 존중, 자연 친화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 ③ 자연의 생물들은 환경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종과 개체군이 축소되고 있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 세부 지침

2-1. 기획

- ① 제작자는 보호를 요하는 천연기념물과 특정 야생 동식물을 포함한 야생 생물들의 생리·생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 ② 자연생태 보존지역에서 촬영을 하거나 천연기념물과 특정 야생 동식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환경부, 문화재관리청, 산림청 등 해당 관계기관의 허가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 ③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작자는 이를 위해 점검하고 대조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2-2. 연출

자연 프로그램에서의 연출은 자연현상의 관찰, 기록 등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담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말한다. 이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가상의 세계를 다루는 드라마와는 구분된다. 자연프로그램의 연출에는 세팅촬영, 재연 등의 표현방법도 포함된다.

2-3. 촬영

- ① 동물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행동을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먹이와 냄새, 소리 등을 이용하여 촬영할 수 있으나, 대상동물이 제작팀의 간섭을 느끼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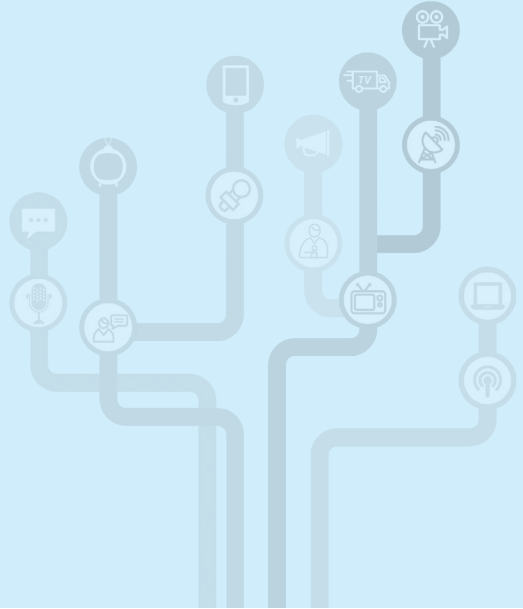
- ② 자연 상태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한 동물의 생태를 보여주기 위한 세팅촬영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허용범위와 대상 등에 관해 책임프로듀서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그 사실을 시청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③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과다한 연출을 해서는 안 된다. 연출은 사실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되어야 하며, 세팅촬영, 재연 등의 연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범위, 제작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책임프로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또한 연출된 사실을 시청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④ 촬영을 위해,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자유의지를 박탈한 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⑤ 촬영을 위해 주변 식생을 훼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최소화 하고, 촬영 후에는 최대한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 ⑥ 해외 촬영 시 외래종의 식물종자 등을 반입해 국내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⑦ 카메라가 원래의 사건을 촬영하지 못한 경우 제작자들은 사실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재연을 할 수 있다. 단 그 내용이 재연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4. 편집

- ① 자료 그림을 활용할 때는 자료가 조작되지 않고, 적절하게 촬영되었는가를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꼭 밝혀야 한다.
- ② 희귀 또는 멸종위기 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당 종의 서식장소와 시기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③ 프로그램 제작자가 동물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일대기를 보여주기 위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의 촬영본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편집된 동물에 하나의 이름을 부여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내내 동일한 동물을 보고 있다고 믿도록 해서는 안 된다.

19-1

동물 출연



프로그램 제작자는 동물이 출연하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동물은 소품이나 도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인식하고 동물의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특히 동물의 연기를 연출하는 드라마 촬영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1. 기본 원칙

- ① 모든 프로그램은 동물이 출연할 때,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의 동물 학대를 예방하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동물이 신체적으로 위협에 처하거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연기 장면을 연출할 경우, 최대한 CG작업을 통해 구현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도록 한다.
- ③ 살아있는 동물에게 인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산 채로 먹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 제8조

-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희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촬영 전 단계

- ① 동물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동물 촬영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자는 출연하는 동물의 상태, 동물의 공급자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말의 경우 그 이력사항(마명, 마필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 ② 동물 촬영 전에는 제작진과 출연자에게 동물보호법 및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숙지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당부하고, 동물을 소품으로 여기거나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한다.
- ③ 드라마에 출연하는 동물은 가급적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훈련된 건강한 동물을 섭외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동물의 경우나 4개월령 미만의 어린 동물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촬영에서 배제한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말과 기타 동물에 타야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훈련을 통해 숙련된 출연자만 탈 수 있도록 한다.
- ⑤ 드라마에서 동물이 출연하여 연기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제작진, 연기자, 훈련사가 동물 연기의 방식과 안전에 대한 합의를 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한다.
- ⑥ 동물 촬영을 관장하는 책임자는 동물 훈련사 및 촬영현장의 담당자와 함께 촬영장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동물을 위협하는 유해한 요소를 제거한다.
- ⑦ 사전에 촬영장과 가까운 동물병원의 위치를 파악해놓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와 고양이 이외의 동물은 취급하지 않는 병원이 많으므로 특수 동물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나 출장 수의사를 미리 알아두도록 한다.
- ⑧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환경(소음 등)을 유지하고,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촬영 단계

- ① 방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동물의 연기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예상 가능한 안전사고에 최선의 대비를 한다.
- ② 촬영 시 각 동물 중에 따른 본능과 습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촬영 중간 단계와 촬영 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물과 먹이를 제공한다.
- ③ 동물이 촬영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치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물 촬영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④ 제작진은 해당 동물의 책임자(보호자 또는 훈련사)를 현장에 상주시켜 동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드라마의 경우 위험요소가 예상되는

촬영 시에는 반드시 수의사를 상주시키도록 한다.

- ⑤ 출연 동물의 본능과 습성에 반하는 비정상적·반사회적 구속을 하지 않는다.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전신마취제의 사용을 금한다. 다만, 동물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만 수의사의 결정으로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다.
- ⑥ 출연 동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이상이 발견될 시 즉각 다른 동물들과 격리조치하고, 가능한 빨리 촬영장에서 철수시킨 뒤 동물병원으로 이동해 검진 및 치료를 이행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보호하다가 이동시키도록 한다.
- ⑦ 말채찍, 말고삐, 말안장 등의 도구들은 안전하고 인도주의적으로 사용하되 나무막대기, 전기충격기 등 비정상적인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⑧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때리거나 동물에게 고향을 지르는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⑨ 동물 촬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물 촬영 관장 책임자가 이행 점검을 하고 촬영 과정과 촬영 후 동물 상태, 복귀 장소 등을 CP에게 보고한다.
- ⑩ 동물이 위험한 장면을 연기한 드라마의 경우에는 엔딩 또는 해당 장면에 “동물 연기 장면은 제작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라고 안내할 것을 권장한다.

4. 드라마 연기사 종별 주의사항

4.1 집고양이

- 고양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촬영할 때 적어도 10주령 이상의 고양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 연기를 위해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훈련된 고양이에 한해서 드라마에 출연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촬영에 이용되는 개인

- 고양이 역시 훈련된 고양이와 같은 원칙들을 적용한다.
- 촬영장의 모든 고양이들(엑스트라나 배우, 스태프가 데려 온 개인 고양이 들을 모두 포함)은 촬영에 나오기 최소 2주 전에 광견병, 고양이 백혈병 FPV, 고양이 헤르페스 바이러스(FHV-1),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FCV)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 촬영장의 모든 고양이들은 기생충이 없는지 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피스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독감이 발생 하는 경우가 있으니, 증상이 보이는 고양이들은 즉시 촬영장에서 철수시키고 수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한다.
 - 촬영장의 위생 관리에 신경 쓰며, 특히 16주 미만의 어린 고양이가 촬영에 쓰일 때는 주변을 살균 소독하고 참여하는 스태프와 출연진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 다른 종의 동물과 함께 촬영해야 하는 경우, 고양이는 이에 미리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

4.2 개

- 연기를 위해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훈련된 개에 한해서 드라마에 출연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만일, 제작자가 개인 소유주(출연진 및 스태프 포함)로부터 개를 섭외한 경우에는 기질, 건강, 그리고 상태에 유의해야 하며, 훈련된 동물 배우와 마찬가지로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지침을 적용 받는다. 개의 소유자나 동반자 모두 그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안전과 효율을 위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드라마제작에 경험이 있는 동물 훈련사를 고용하여, 훈련사를 통해 모든 개를 공급받고, 촬영장에서 개의 안전, 위생이 훈련사의 전문적인 책임 하에 관리될 것을 권고한다.
- 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어도 16주령 이상의 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 개들은 촬영 최소 2주 전에 광견병, 파보, 디스템퍼, 케넬코프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 훈련사를 포함하여 개의 연기와 관련되는 스태프들은 진드기, 벼룩, 모기가 발견되는 장소를 인지하고 진드기, 벼룩 등과 같은 외부기생충 예방과 심장사상충 예방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질병과 장내 기생충을 예방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촬영 전 동물 공급자는 위항의 정보와 모든 건강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전에 자격을 갖춘 수의사에게 실질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 촬영장의 위생 관리에 신경 쓰며, 특히 16주 미만의 어린 강아지가 촬영에 쓰일 때는 강아지 주변을 살균 소독하고 참여하는 스태프와 출연진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 촬영현장에서 동물이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나 탈출이 발생한 경우 동물의 안전한 포획을 대비하는 안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개들이 고양이 또는 다른 종류의 동물들과 함께 작업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동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동물과 촬영해야 하는 경우, 개들은 반드시 이에 대해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a. 개에게 물린 사람에게 반드시 의사에게 검진을 받아야 한다. b. 다른 동물에게 개가 물렸을 경우, 개는 수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c. 의료적으로 중대한 사고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4.3 조류

- 인간과 다른 새들에게 조류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촬영장의 새들은 반드시 조류 질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장 최신의 검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 위험할 수 있으므로 새의 주변에는 유리판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유리 창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새의 방사(풀어서 날리는 것)에 관하여 a. 길들여진 새는 야생으로 영구히

방사될 수 없다. b. 장면 연출을 위해 새들이 방사되어야 한다면, 그 이후 반드시 다시 포획되거나 방사하는 구획을 봉쇄하여 탈출을 막아야 한다. c. 조명이 켜진 장소에 있을 수 있도록 훈련되었거나 방사 구역이 봉쇄된 것이 아니라면, 해가 진 후에 새를 날리면 안 된다. d. 호밍(비둘기 귀소성)을 지닌 비둘기는 낮 시간에는 반드시 방사해주어야 하며, 해가 지기 전에 새가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방사 시각을 계산(거리와 속도)해야 한다. e. 훈련된 호밍 비둘기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호밍 비둘기는 반드시 띠로 표시되어야 한다. 펫샵에서 구입한 비둘기는 호밍 비둘기가 아니며 집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f. 새의 연출된 방사, 호밍 비둘기의 비행 시에는 비, 구름, 강풍 등 날씨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방사 구역에 매와 같은 포식자가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 닭을 포함한 새들은 서로에게 배설할 수 없는 컨테이너에만 두어야 한다. 나무 새장이나 상자는 질병의 전염을 촉진하기 때문에 새들을 수용하는 데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테더링(새의 발에 줄을 묶어두는 것)은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동물 훈련사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새들이 줄을 묶는 것에 저항하거나 불편해 하면 즉시 풀어주어야 한다.
- 닭싸움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4.4 어류

- 안전과 효율을 위해 경험이 있는 동물 훈련사를 통해 드라마제작을 위한 모든 어류를 공급할 것을 권고한다. 부득이하게 개인 소유주(출연진 및 스태프 포함)로부터 어류를 섭외한 경우에도 본 지침의 모든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어류의 어항과 수족관 설치에 최적의 관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을 권유한다.
- 어류나 수생 동물들이 촬영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어류는 매우 쉽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촬영은 신체적 해를 끼칠 수 있다.

- 상어류는 본래의 환경에 머무르게 하며,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촬영만 하는 것을 권유한다.
- 촬영하는 어류에 맞게 물의 종류, 온도, 맑음, 산소화, 염분 및 ph 등이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이동된 물에 어류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4.5 말과 축산 동물

- 안전과 촬영의 원활함을 위해 촬영을 위해 훈련된 말과 드라마 제작 경험 이 있는 말 전문훈련사를 고용할 것을 권한다. 만일, 출연자나 스태프를 포함하여 개인 소유자에게 말을 공급받을 경우, 그 말 역시 가이드라인의 지침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역사극 등 많은 수의 말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드라마제작 스태프 집단에 말과 관련된 촬영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 소싸움 장면은 소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드라마에 넣지 않기를 권유한다. 만일, 소싸움 장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잘 확인하고, 아주 엄격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연출되어야만 한다.
- 동물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각기 다른 종의 동물들 즉 양, 염소 등은 각각 다른 장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 마구간을 비롯하여 동물을 수용하는 장소의 자재나 마감 널빤지 등은 동물 친화적이어야 한다. 날카로운 모서리나 연결 장치가 위험하지 않게 마감되어야 하며, 널빤지 사이에 동물의 목이 끼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동물들의 나이와 종에 따라 익숙한 기후 상태와 평소의 식습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환경과 조건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 모든 장비와 마구는 안전하고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사용 전후에는 언제나 훼손이 있거나 낡아지지 않았는지 검사해야 한다. 서양 스타일의 잠금 박차(spur)를 사용할 경우, 고무로 된 박차로 모의 촬영을 해 볼 것을 권한다. 직경이 1인치 이상인 박차나, 너무 날카로운 박차, 톱니바퀴로 잠그

- 는 박차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 강한 입마개나 긴 재갈의 레버(long shanks)를 사용해야 하는 말은 촬영에 적합하지 않다.
- 말의 걸음걸이에 이상을 주는 어떤 장치나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상을 입히거나 화학약품의 사용, 약을 주입하는 등 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금지한다.
 - 채찍, 스틱 등과 같은 훈련도구들 역시 안전하고 인도주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전기 충격을 주는 전기봉이나 전기 칼라는 훈련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촬영 시, 말의 이동은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말이 스트레스를 갖지 않도록 긴 시간 동안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촬영 시간 사이 충분한 휴식을 갖게 해야 한다.
 - 훈련되지 않은 어떤 연기자나 스태프도 말을 타서는 안 된다. 말을 타야 하는 출연자는 적절하게 훈련을 받아 충분히 숙련되어야 한다.
 - 스태프나 촬영장을 구경하는 일반인들이 말을 쓰다듬거나 말에게 음식을 주거나 돌보려고 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 말에게 물에 빠지는 연기를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점프를 하는 연기는 오직 점프를 훈련한 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말이나 동물이 집단으로 달리는 경우의 촬영에서, 말이 달려야 하는 공간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동물이 부딪힐 수 있는 난간은 없는지, 밟을 수 있는 날카로운 물체는 없는지, 말의 훈련사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은 서로 원격으로 의사소통 가능해야 한다. 말과 함께 마차, 차, 열차 등이 함께 지나가거나 부딪혀야 하는 경우 촬영은 세심히 계획되어, 여러 번의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
 - 탈출 장면, 총이나 화약, 대포가 사용되는 장면, 로데오 장면, 경주 장면 등에 말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두 관련 장면의 안전에 대한 훈련사, 관련 스태프, 제작자의 협의가 필요하고, 해당 촬영에 경험이 있는 스태프와 훈련사가 고용되어야 한다.

4.6 파충류

- 파충류는 살모넬라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 전후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따뜻한 물과 비누가 촬영장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촬영에 사용되는 특정한 종에 대한 경험이 있는 훈련사가 고용되어야 한다. 독이 있는 등 위험한 파충류를 다룰 때에는 사전에 안전에 대한 회의를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독이 있다고 하더라도 뱀의 입을 봉합하거나 송곳니를 자르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4.7 양서류

- 양서류는 살모넬라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 전후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따뜻한 물과 비누가 촬영장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촬영에 사용되는 특정한 종의 양서류에 경험이 있는 훈련사가 고용되어야 한다. 양서류는 매우 민감하고 외부 물질이 쉽게 침투 가능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사람 피부기름, 염분, 열은 양서류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양서류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서류와 최대한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촬영 시, 그리고 촬영 사이 적절한 거주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양서류의 건강에는 수질이 중요하다.
- 촬영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4.8 곤충과 거미류

- 촬영을 마친 곤충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촬영장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 촬영을 위해 준비된 곤충이 빛을 향해 날아가지 않도록 조명 위에 필터, 그물 또는 스크린을 설치해 놓아야 한다.

- 모기와 같은 침습적 곤충과 거미류는 특히 방사되지 않아야 한다. 토착이 아닌 외래종들은 절대 방사해서는 안 된다.
- 곤충과 거미류의 호흡기는 섬세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살충제를 포함하여 화학 물질이 있는 주변에서 촬영하면 호흡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곤충과 거미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절대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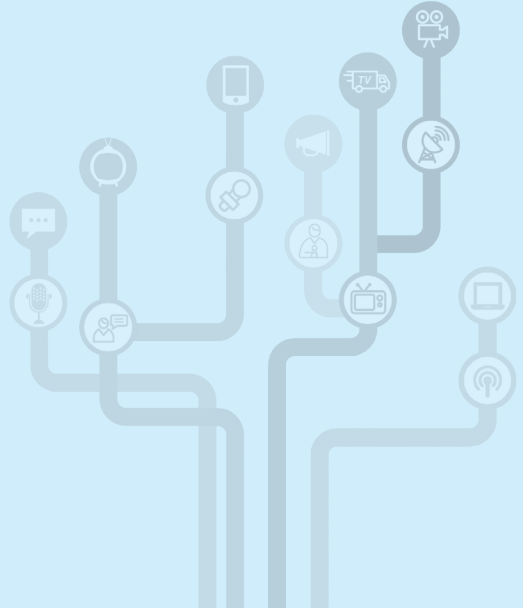
4.9 영장류(유인원류, 원숭이류, 원원류)

- 촬영 장소에 야생동물이나 길고양이 등 길거리 동물이 나타나는 경우, 만지거나 동물의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10 야생동물

-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서식지에 있는 모습이 다큐멘터리적인 방식으로 촬영되는 것을 제외하면, 촬영을 목적으로 야생동물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유도하면 안 된다.
- 야생동물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20 환경



환경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환경(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의 교란으로 인해 인간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오는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환경문제를 다룰 때는 특히 환경오염이나 교란이 일어나는 현장을 세밀히 기록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막거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1. 기본원칙

1-1. 정확한 용어와 개념, 단위의 사용

환경보도나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환경이, 생태계가, 강이 …) 오염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등이 있다. 이런 표현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들이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이런 표현이 방송에서 자주 반복되다 보면 시청자들은 이런 단어에 식상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고, 또한 언론에서도 더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곤 한다.

자연계의 물질과 에너지의 정상적인 흐름이 무너지는 정도에 따라 교란, 오염, 파괴, 죽음 등의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고려할 것은 자연적인 요인인지 혹은 인위적인 요인인지의 여부다. 또 환경 피해의 객관적인 정도와 피해 복구의 (기술적인) 가능성도 용어 선택의 기준이 된다.

단위의 정확한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오염도를 나타내는 단위 가운데 ppm, ppb 그리고 ppt는 각각 천 배의 농도 차이가 난다. 별 문제가 아닌 오염 수준인데도 단위를 잘못 사용해 큰 오염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상당히 심각한 오염수준도 단위를 잘못 사용할 경우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다.

1-2. 환경 위해성 평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환경보도와 프로그램 취재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환경문제는 1차적으로 대상 환경 자체의 피해 정도를 가늠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오염이 사람에게 미칠 위해성 및 피해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환경 자체의 피해는 그리 어렵지 않게 감지될 수 있으나 환경오염이 사람에게 미치는 위해성은 쉽게 평가하기 힘들다. 때문에 각 환경오염 경로별로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취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위해성 평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위해성 평가 방법을 상의해 실험이나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고 피해 정도를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실험을 설계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

1-3. 환경비용과 편익 분석

환경문제를 다룰 때 흔히 부딪치는 문제가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서로 상충되는 점이다.

개발과 보존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환경을 보존했을 때의 편익과 개발했을 때의 비용 등을 고려한 심층적인 취재가 필요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보존이라는 명제가 절대선(絶對善)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언론에서 환경문제를 다룰 때의 중심 가치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환경을 보존하는 대신 개발을 할 때 그로 인한 생태적 교란이 그리 크지 않고 개발로 인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 매우 크다는 것이 충분히 검증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전문가의 취재 협력

환경 분야는 수질, 대기, 폐기물, 생태, 유해 화학물질, 환경보건 등 그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문가보다는 해당 분야의 이슈별로 전문가를 찾아 취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 분야의 오염원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자료에 대한 해석이나 예측, 실험, 시뮬레이션 등 각 단계에서 분야별로 자문단을 두어 취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오염 물질로 인한 인체 유해성 부분은 그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환경보건 분야나 독성학, 유해 화학물질 등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1-5. 환경 세부 분야

환경과 관련하여 고려할 세부 분야는 물, 대기, 폐기물, 생태 분야 등이다. 물의 경우 수량과 수질의 변화에 주목하며 이러한 변화가 삶에 미칠 영향을 살핀다. 대기오염문제는 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뿐만 아니라 바람이나 기온, 지형, 인구와 건물 밀집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서 취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기물의 경우 토양이나 지하수, 대기, 해양 등의 생태계에 1차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주목한다. 기타 자연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동식물의 보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야별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프로그램 제작 기획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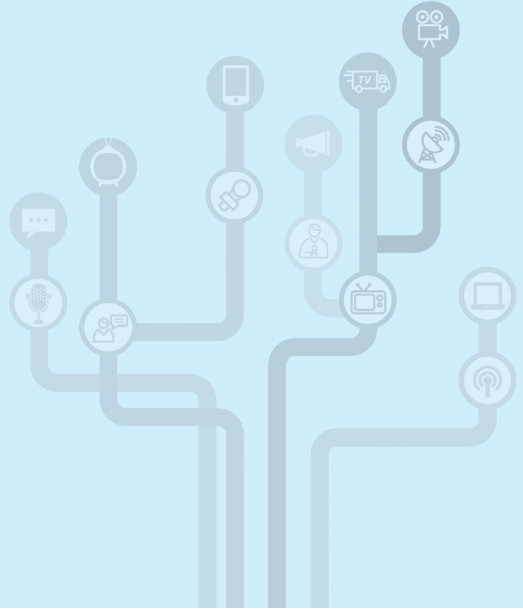
2. 취재·편집 시 유의 사항

- ① 오염 현장에 대한 취재 시,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나 관계기관의 담당자 등 확인 대상을 광범위하게 해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접촉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나 자문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 ② 취재대상이 되는 산업체나 기관, 그리고 생태계 보존지구 등을 출입 취재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촬영 허가를 받고, 가능하면 관련 기관의 담당자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일반 환경단체나 개인이 확보한 환경 관련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보도해야 한다.

- ④ 국책사업 등의 개발과 환경보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 제작자의 편견이 개입되어 한쪽에 치우쳐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개발과 보전 논리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한 뒤 보도하거나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 ⑤ 편집 시 현장의 영상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현장의 과거 영상자료나 다른 곳에서 찍은 비슷한 유형의 영상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환경오염 현장 고발 등의 보도에서는 시청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료화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 자료화면을 쓸 경우에는 자막 등을 통해 자료 화면임을 밝혀야 한다.
- ⑥ 영상자료를 비롯한 모든 취재 자료는 입수 경로가 투명해야 하고 외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방송에 사용할 경우에는 자료 제공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⑦ 오염 현장에 대한 취재 시, 취재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접근해야 한다.

21

음식과 조리



방송에서 다루는 음식과 조리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 전체의 식생활과 건강, 음식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

재료를 선택하고 조리하여 음식을 만들고, 또 그 음식을 제공하고 섭취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룰 때에, 위생과 영양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음식문화와 관련해서는 품위 있고 예의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실질적으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음식점’ 혹은 ‘음식점에 준하는 업소’(포장마차나 이벤트 행사장 등에서의 임시가설 판매소 등을 포함한다)에서 조리되는 음식을 말한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마을잔치, 경로잔치 등과 일반 가정에서의 음식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다루는 ‘음식’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1. 음식을 소개할 때의 제작자 유의사항

- ①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음식점의 위생, 친절도, 서비스 등을 반드시 사전 답사하고 평가하여 취재하도록 한다.
- ② 소개되는 음식은 양질의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한다. 단 기이하고 진귀한 음식 등을 화제로서 소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음식을 소개할 때 해당 음식점에 대한 간접광고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 ④ 음식에 대한 마케팅이나 서비스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제공되는 음식의 품질과 함량이 균일하고 정확한 것인지 유의해야 한다. 시청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방송을 시청한 후 그 업소와 음식을 찾았을 때 품질과 서비스가 방송에서와 같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⑤ 소개되는 음식점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되어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소여야 한다. 단 포장마차나 행사장 등에서의 임시가설 판매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프로그램에 협찬을 제공하고 있는 음식점을 협찬의 대가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 ⑦ 취재의 대가로 물품이나 현금,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음식재료의 선택과 가공에 관한 유의사항

- ① 혐오스럽고 비위생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재료는 보여주지 않거나 가려야 한다.
- ② 피가 흐르는 상태의 식재료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거나 가려야 한다.
- ③ 포유류나 파충류의 경우, 온전한 개체를 직접 절단하는 모습은 화면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생선회의 경우, 살아있는 생선을 최초로 절단하는 모습

은 화면에서 가급적 배제하도록 한다.

- ④ 불에 태워지거나 절단되어 해체된 포유류나 파충류의 모습 또한 혐오감과 잔인성 여부에 유의해서 편집하도록 한다.
- ⑤ 연체류나 갑각류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의 식재료를 직접 불에 굽거나 삶는 모습은 혐오감과 잔인성 여부에 유의해서 편집하도록 한다.

3. 조리에 관한 유의사항

3-1. 조리 관계자에 관한 사항

‘조리 관계자’라 함은 방송에 등장하는 조리사 및 음식을 서빙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 ① 조리 관계자는 머리 수건, 장갑, 앞치마 등을 갖춘 위생적이고 청결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 ② 조리 관계자는 과도한 화장을 피해야 한다. 또한 매니큐어를 칠하거나 반지를 낀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조리 관계자가 음식의 간을 볼 경우, 반드시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3-2. 도구 및 장소, 설거지에 관한 사항

- ① 음식의 조리는 가능한 한 조리대에서 하도록 하고 조리대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플라스틱 바가지 또는 합성수지로 된 도구를 사용하여 끓는 음식을 젓거나 합성수지를 원료로 한 망 등에 재료를 넣어 우려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 ③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일회용기(종이컵, 나무젓가락 등)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④ 설거지하는 모습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설거지 장면을 방송할 때에는 설거지가 주방 바닥이나 식당 바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 ⑤ 조리과 동시에 조리대 옆에서 청소가 행해지지 않도록 한다.
- ⑥ 주방에서 잔반의 모습이나 그 처리과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음식의 효능, 효과와 관련된 유의사항

- ① 음식의 효능, 효과와 관련된 사항은 가급적 내용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 ② ①에 관한 언급이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자료 등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공신력 있는 인터뷰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③ ②의 경우에도 과용, 과섭취 시의 부작용 등도 함께 제시하여 그 효능과 효과가 과신되지 않도록 편집해야 한다.

을 다루는 데 신중해야 하며 과학프로그램에서 특정 종교 및 세계관을 비하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1. 신기술과 기상 정보

- ① 학술,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은 그 전문성을 존중하되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 ② 하루에 수십 건씩 신기술에 관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시청자의 이익에 부합되고 사회에 유익한 것인지를 가려내어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③ 신기술은 국내, 혹은 국외에서 공인을 받은 기관의 검증을 받은 것에 한해 보도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인 기관과 함께 취재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④ 신기술, 신상품의 경우, 보도할 만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보도할 때에는 간접광고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표와 제조회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⑤ 기상 보도는 매시간 빠르게 변하는 기상 정보를 신속히 취재 보도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태풍 등 위급상황 시에는 재난방송 매뉴얼에 따라 보도한다.

2. 의학

- ① 의학 프로그램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흥미 위주의 보도는 삼가야 한다. 또한 의료 행위나 약품 등을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방송에서 편지·전화·온라인·모바일·SNS 등 간접대면 방식으로 의학 상

답을 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증상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시간을 배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한다.

- ③ 취재 대상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을 위주로 하되 어느 한곳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화하며, 개인의 연구 성과는 분과별 학회나 전문기관의 확인과정을 거쳐 방송한다.
- ④ 새로운 의학정보는 국내외 학회를 통해 발표되어 인정을 받은 것만 다루도록 한다.
- ⑤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의 고른 발전을 위해 보도에 균형을 유지한다.

3. 소비자부문

- ① 소비자가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소개보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 가치 등에 관한 정보 위주로 방송한다.
- ② 안전하지 못한 상품이나 좋지 못한 서비스를 고발할 때는 반드시 공인기관(예: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정확한 검증을 한 후 방송한다.
- ③ 시청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불만을 제기하며, 나아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 ④ 공인된 기관의 조사나 검사 결과, 안전하지 못하거나 불량한 상품 또는 제조업체가 다수 적발될 경우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한두 가지 상품 또는 업체만을 거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가능하면 전체 명단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전부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에는 명단을 발표하는 공인기관의 홈페이지를 안내해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지식을 얻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 ⑤ 공인된 기관의 공식적 발표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제3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검증하도록 한다. 공인기관이라도 충분히 못한 검증이나 검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식기관의 공식적 발표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예: 쓰레기 만두소, 포르말린 통조림, 기생충알 김치 사건 등).

- ⑥ 소비자의 제보나 고발의 경우 관련된 상대 업체나 원한이 있는 개인 등에 의한 무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을 거쳐 신중하게 보도함으로써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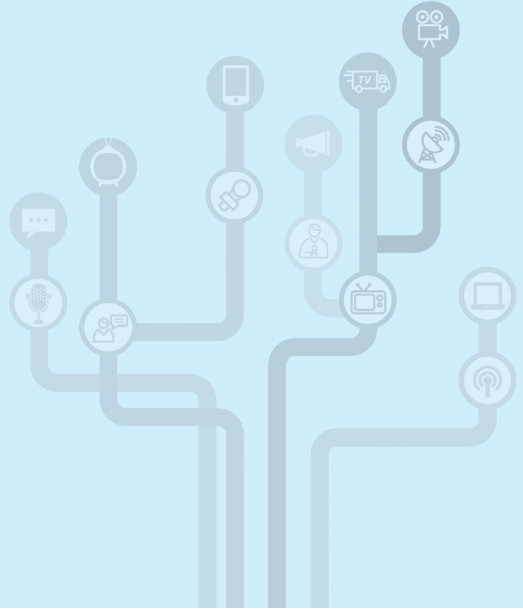
사례

풀무원 농약 사건

2004년 10월, '풀무원 녹즙에 농약을 친 유기농 원료가 사용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풀무원과 원료를 공급한 적이 있는 한 농민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고 보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물의가 빚어진 적이 있다.

23

재난방송



1. 재난보도의 목적

KBS 재난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또한, KBS 재난보도는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재난의 복구와 구조를 촉진하고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1-1. 피해 최소화

KBS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의 전달과 함께 예상되는 재난의 유형과 대처 요령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1-2. 혼란 방지

재난방송이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1-3. 복구촉진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통해 피해확산을 막고, 대피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의 복구 활동에 도움을 줌으로써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한다.

2. 재난보도의 적용 범위

KBS 재난방송은 다음과 같이 재난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 ① 태풍, 홍수, 호우, 산사태,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등과 이에 준하는 자연 재난
- ② 화재, 붕괴, 폭발, 육상과 해상의 교통사고 및 항공 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원전 사고 등과 이에 준하는 인적 재난
- ③ 전기, 가스,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식수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이에 대한 테러
- ④ 급성 감염병, 인수공통(人獸共通) 전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창궐 등 질병 재난
- ⑤ 위에 준하는 대형사건, 사고 등 사회적 재난

3. 일반 준칙

3-1. 피해 최소화

재난방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① 재난 등의 발생, 진행 상황
- ②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의 경우 기상상황 및 기상 특보 발표 내용
- ③ 재난 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 ④ 정부나 지자체가 발표한 재해예측지도(hazard map) 등 방재 계획
- ⑤ 그 밖에 재난 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

3-2. 정확한 보도

재난 상황에서 부정확한 보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다. 보도 경쟁에 치우쳐 무리한 취재로 정확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재난 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적 가치가 큰 정보라고 판단된 경우 상급 책임자에게 보고 후 보도 여부를 결정하되, 보도 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고지한 후 보도하고 사실성의 범위와 함께 추후 확인 여부를 밝혀야 한다.

3-3. 신속한 보도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난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정보는 빠른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도

할 수 있다. 유용한 정보라도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정보는 보도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난보도에 적용되는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질병 재난, 사회 재난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경우에는 그 목적이 재난 예방과 추가 피해 방지임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3-4. 공식 발표자료 보도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 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따른다. 그러나 당국의 공식발표라 할지라도 그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 최대한 검증한다.

- ① 재난 등에 따른 피해 통계, 사상자 및 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발표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②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피해 통계, 사상자 및 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 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명확히 밝힌다.
- ③ 자체적으로 취재해 방송할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3-5. 유언비어 발생 및 확산 방지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며, 추측성 보도는 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도록 한다. 특히 SNS에 떠도는 유언비어나 괴담 등 미확인된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다.

3-6. 단편적 정보 보도 시 주의 사항

- ① 재난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때는 가능한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현장 목격자의 말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3-7. 선정적 보도 지양

- ① 사실과 관련 없는 주관적인 논평이나 감정 표현을 자제하며 침착한 보도 태도를 견지한다.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즉흥적이거나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특히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불안, 초조, 걱정, 공포, 우울, 어둠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재난을 감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선정적인 뜻을 내포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특정 대상을 과장되게 묘사하지 않는다.
- ③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비탄에 빠져 있는 장면,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삼간다. 또한,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를 자제한다.
- ④ 재난의 본질과 관계없는 일부 생존자의 흥미성 내용과 이미지 등 과거 신상 공개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한다.
- ⑤ 공익에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비탄에 젖어 있는 인물을 담은 자료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공익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는 보도 책임자와 의논 후 결정한다. KBS 재난보도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8. 취재원에 대한 검증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거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한다. 재난 발생 시 급박한 취재 여건상 충실한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평소 검증된 재난 전문가들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검증하여 활용한다. 취재원을 검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취재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가?
- ② 취재원이 고의 또는 실수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 ③ 취재원은 어떤 경위로 해당 정보를 입수했는가?
- ④ 취재원의 정보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 ⑤ 특정 취재원의 정보는 문서 자료나 다른 취재원 등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가?

3-9. 비윤리적 취재 금지

취재를 할 때는 취재진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신분을 사칭하거나 숨기는 등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취재는 하지 않는다.

3-10. 피해자 배려와 인권 보호

- ①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②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실을 알기 이전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다.
- ③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 ④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나 그 가족 등에게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 촬영 계획 등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촬영내용을 방송할 때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를 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피해자와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나. 피해자와 가족의 신상 공개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다. 그 밖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정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 ⑤ 인터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하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들이 대표자를 정했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고 보도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인터뷰에 응한다 할지라도 질문 내용과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 ⑦ 질병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차별·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사람의 감염은 물론이고, 구제역 등 가축의 전염병 발생 시에도 관계 시설을 실명으로 할 지 여부는 전염병 확산 억제, 필요성, 인권보호의 필요성, 보도 내용 자체의 정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3-11. 중복·편중 보도 지양

동일한 영상 및 내용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등 재난 보도에 있어 중복성, 편중성, 단순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3-12. 과거 자료 사용 시 주의 사항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사고의 기사·영상·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건·264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부득이 자료화면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3-13. 예방 정보 제공

- ① 재난보도는 사실 전달뿐 아니라 새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위험에 처할 지역 및 예상 시간, 예상 피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전달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②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대피요령 및 대피방법, 대피처 등 대응 방법을 알리고 유사한 재난 발생 시 피해 사례와 예방법, 비상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도 방송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3-14. 감염병 보도

- ①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②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③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 ④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한다.
- ⑤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⑥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⑦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⑧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를 함께 보도한다.
- ⑨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 수, 의심 환자 수, 접촉자 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⑩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생기관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 ⑪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 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 결과물인지 확인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실험 중인 약인지, 임상실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
- ⑫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⑬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⑭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15. 오류정정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3-16. 컴퓨터 그래픽(CG) 사용 시 주의 사항

컴퓨터그래픽(CG)은 시청자에게 사안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선에서 사용해야 한다. 지나치게 사실적인 묘사로 자극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지양한다.

지진 재난의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자막의 크기와 색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시청자가 지진의 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3-17.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방송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노약자, 심신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의 특정 계층에게도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달방법을 강구한다. 또한, 시청자나 일반인은 물론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의 규모와 정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재난 지도 등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18. 재난관리 당국과의 협조체제 구축

- ① 방재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 기관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방재와 사후 수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재난현장 취재는 긴급한 인명구조와 보호, 사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관리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라인, 포토라인 등 취재 제한구역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 ③ 취재지원 차량의 활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용도에 그쳐야 하며 구조인력의 이동이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④ 항공취재를 위해 항공촬영을 시도할 때는 구조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3-19. 현장 데스크 운영

충실한 재난 보도를 위해 필요시 현장 데스크를 두며, 본사 데스크는 현장 상황이 왜곡되어 보도되지 않도록 현장 데스크와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4. 재난보도준칙 교육

4-1. 일반 교육

- ① KBS 기자 및 PD, 아나운서 등 제작진은 평소 직무 교육으로 재난보도준칙을 교육받아야 하며,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전에 다시 한 번 재난보도 준칙을 숙지하도록 한다.
- ② 사내는 물론이고 사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재난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제작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③ 가능하면 재난보도 담당 기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평소 전문 지식을 쌓도록 지원한다.

4-2.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준칙 체계화

재난방송 후 모니터링을 통해 준칙의 준수 여부 및 개선점들을 토의함으로써 준칙을 체계화하고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차후 준칙 개정 작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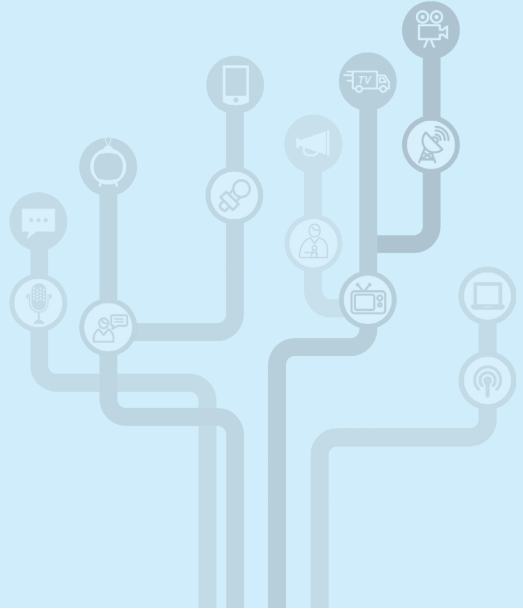
5. 취재진 안전 수칙

- ①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내외에서 사전 교육을 받거나 회사가 제정한 준칙 등을 통해 재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취재 현장이 취재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재에 앞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③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호 장비를 준비해 두도록 하며,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한다.
- ④ 재난 현장 취재진의 안전, 교통, 숙박, 식사, 휴식, 교대 보상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사후 필요한 심리치료나 건강검진 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⑤ 병원, 임시 피난처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의 시설관리자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안전상의 요청이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에 따른다.
- ⑥ 감염성 질병을 취재할 때는 취재진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취재에 의해서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감염성(독성)이나 감염력의 강도, 잠복기간이나 감염 방법 등 병원체의 성질을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충고를 구해서 취재계획을 세운다. 취재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대책을 세운다.

- 가. 병원체의 성질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상에 있는 사람과의 대면 취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전화에 의한 취재 등을 검토한다.
- 나. 해외의 전염병 유행지를 취재할 때는 계획 단계부터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로부터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한다.
- ⑦ 원전 관련 사고를 취재할 경우 원전 사고시설 부근의 취재는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는 휴대용 방사성 기기를 갖추는 등 안전에 충분히 유의한다.

24

스포츠



KBS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한국 스포츠의 지속적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목표에 따라 스포츠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건전한 여가와 오락 제공과 함께, 아마추어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중계제작 프로그램

1-1. 일반지침

- ①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경기를 균형감 있게 중계하도록 노력한다.
- ②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아마추어 경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되 청소년 선수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 ④ 국제 종합대회나 국가대항 국제대회의 경우, 국가의 주체성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세심한 주의를 하되 경기결과에만 너무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⑤ KBS가 중계권을 획득한 국내외 대회는 KBS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선 보편적 시청권이란 원칙하에 중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⑥ 승부를 예측하는 여론조사 보도는 희망사항을 반영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조사를 프로그램에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⑦ 스포츠의 상업화를 경계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사행심이나 배금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2. 제작지침

- ① 경기장 시설물이나 운동복을 이용한 기업광고 노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27.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참조】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의 현실과 산업적 효과도 적절히 감안해야 한다.
- ② 협회 관계자나 행사 관련 주요 인사들의 정치적 논리나 개인 홍보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
- ③ 심판의 판정이 애매한 경우 과학적 분석 방법을 동원해 가능한 한 명쾌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 ④ 아나운서 및 해설자는 지나친 과장이나 거친 어휘, 또는 습관적, 고식적인 비유, 그리고 진부하고 식상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경기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 ⑤ 아나운서 및 해설자는 선수들의 기술이나 퍼포먼스를 두고, 명확한 기록

이나 기준 없이 특정 성(性)을 다른 성과 비교하여 더 우월하다고 표현하거나, 반대로 실력을 폄하하고 능력에 제한을 두는 등의 표현을 삼가야 한다.

- ⑥ 아나운서 및 해설자는 선수들을 표현할 때 여성성과 남성성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혼성 경기의 경우, 남·녀 선수가 각자 부여받아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고 둘 다 경기력에 있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性)의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의존적이라거나 그 역할도 보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특정 성(性)의 선수가 다른 선수에 의해 보호받고, 돋보이게 되는 존재로 언급하는 일 또한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⑦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카메라로 비추지 말아야 하며, 중계 및 해설에 있어서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 사용을 삼가야 한다.
- ⑧ 경기 내용이나 성적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외모, 나이, 사생활 등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⑨ 중계 스태프는 각자가 KBS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품위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⑩ KBS가 주최하는 대형 스포츠 행사에서는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나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 스포츠 취재

- ① 팀에 속한 선수나 감독 등에 대한 취재는 아마추어와 프로 모두 각 협회와 구단, 소속팀 등의 홍보 담당자를 통해 사전에 공식적인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취재원의 자발적인 협조 하에 개인적인 취재를 할 수도 있다.
- ② 국제경기와 전국체전 등 종합 대회는 ID카드 발급이 필수적인 경우가 대

부분이어서 사전에 해당 협회나 구단 등에 ID카드를 신청함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③ 취재원과의 인터뷰는 가능한 한 현장성을 살릴 수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재원 또는 구단이 공식 회견장이나 별도의 장소를 원할 경우에는 그곳에서 한다. 제작자는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사전에 질문 내용을 취재원에게 알려 적절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 ④ 경기장 취재 시 경기 진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대회 주최 측이 정한 장소에서 취재를 하고 영상촬영 또한 허락된 곳에서 해야 한다. 다만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대회 주최 측에 취재와 영상취재 편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영상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취재 데스크 또는 영상 데스크와 협의한다. 기사 내용에 과거 자료임을 알 수 있는 멘트가 없거나 과거 자료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막을 통해 자료화면임을 알려 시청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⑥ 방송사들 간에 풀(pool) 방식으로 중계된 방송 화면의 사용은 중계 화면 수신 가능 여부와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스포츠 기획부서에 자문하도록 한다.
- ⑦ 중계권료와 관련된 중계화면은 제작부서장 또는 데스크와 협의해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파악한 뒤 사용한다. 특히 국제경기의 경우 중계화면 사용 규정이 국가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에 앞서 스포츠 국제 업무 담당자의 조언을 받도록 한다.
- ⑧ 중계권이 없는 대회는 뉴스방영권을 확보하여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계권과 뉴스방영권을 구입할 수 없는 대회는 중계권사와 협의해 뉴스용으로 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화면 제공사가 화면 제공을 자막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25

영상자료의 이용과 처리



1. 영상자료의 이용

1-1. 영상자료 이용 절차

제작자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자료관리 부서에서 관리, 보존하고 있는 영상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① 이용하는 영상자료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내용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제작과 관련되는 사항 이외에 간접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확한 용도를 밝혀야 한다(예: 시사용, 참고용).
- ② 제작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상자료를 개인적으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외부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영상자료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2차적 활용 및 유통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영상자료를 이용하는 제작자는 KBS 소장 영상자료의 저작권 한계와 법률 저촉 여부, 인권침해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이 있을 시, 자료관리 부서 및 저작권 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1-2. 영상자료 관리

영상자료 이용자는 이용하는 영상자료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① 영상자료의 분실, 훼손, 오염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가 발생할 때 제작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3. 보도영상의 외부 제공 시 유의점

- ① KBS 보도본부의 영상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국회·청와대·검찰·국방부·사건사고 등 취재 시 촬영 팀을 타사와 풀(pool)로 운영한 경우
 - 나. 행사나 기자회견, 스케치 등 독점 가치가 없는 영상에 대해 영상취재 부서장이 해당 취재부서 부장과 합의 후 상호협조 차원에서 타사 제공을 승인하는 경우
 - 다. NHK 등 영상제공 상호협약을 맺은 외국 언론사에 제공하는 경우
- ② KBS 단독 인터뷰나 단독 촬영 화면 등 특종성 영상은 보도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단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가. 사전에 취재원으로부터 초상권 등과 관련해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나. KBS에서 방송되지 않은 부분이 제공되지 않도록 원본이 아닌 편집본으로 한다.

- 다. 사용목적과 범위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라. KBS 로고나 'KBS 영상제공' 등 출처 표시를 요청한다.
- 마. 보도본부장은 타사와의 협조관계, 특종에 대한 홍보, 유료제공 때의 수익 등을 고려한 뒤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외부 제공을 승인한다.
- 바. 보도영상담당부서는 외부제공 때 요청기관과 요청인, 요청시기, 요청자료, 접수자, 제공 분량, 제공 결정권자, 제공 방법과 시기 등을 기록하는 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 ③ 보도본부에서 영상물의 유료제공을 결정한 경우, 국내기관은 KBS미디어, 해외기관은 본사 콘텐츠사업 부서에 보도운영 부서를 통해 의뢰한다.

1-4. 인서트 화면과 영상자료의 구별

단순히 인서트(insert)로 사용되는 자료화면과 영상자료의 사용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 ① 영상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영상자료'라는 사항을 화면에 명시한다. 뉴스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인서트(insert)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영상자료'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역사적 사건(예: 한국전쟁 영상자료)의 경우에도 반드시 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촬영된 취재 내용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자료'라는 표시를 하여 시청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과거의 영상자료를 재사용할 때 본래의 촬영의도와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 ③ '영상자료'라고 표시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특히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 인물, 상품 등이 포함

된 영상자료의 사용은 주의가 필요 하다.

1-5. 저작권 관계 유의 사항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영상자료의 경우, 저작권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가급적 자료관리 부서나 저작권 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타 방송사나 외부기관이 제공했거나 KBS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경우, 그 기관이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된 자료가 대부분으로 의도적인 편집이나 일방적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출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외부자료 사용

2-1. 시청자 제공 자료

시청자가 제공한 자료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작자는 시청자 제공 자료가 방송 목적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촬영 일시, 장소, 내용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한다.

시청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사용조건과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한 뒤 사용해야 한다. 시청자가 제공하는 비디오 등 UCC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나고 UCC를 중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생겨나는 추세이므로 제작자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료 제공자와 사전에 계약을 맺도록 한다.

2-2. 그래픽 이미지 자료

그래픽 이미지 자료란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심벌마크, 로고타입,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이 조합된 로고를 말하며, 기업, 공공기관, 각종 행사 등의 마스코트를 포함한다. 방송제작 등을 위해 그래픽 이미지를 자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그래픽 이미지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외부 검색엔진을 통한 그래픽 이미지 자료를 다운로드 사용하는 것은 변형 또는 왜곡된 이미지나 저작권이 없는 자료의 무단 사용 가능성이 높아 법적 분쟁과 시청자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

그래픽 이미지 자료는 해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사소개, CI, 상징과 같은 홍보용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다운로드 항목이 없거나 공식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업, 기관 또는 행사주최 측에 공식 이미지를 요청 후 제공받아 사용토록 한다.

그래픽 이미지 자료는 KBS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 제작 목적 외 사용이나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방송프로그램 담당PD는 외주제작사 등과 계약 시, 위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픽 이미지 자료는 ‘이미지 변조’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사용자가 최종 검증해야 한다. 또한, 기타 법률적 문제(상표권, 저작권, 간접광고 등)가 우려되는 경우, 제작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3. 영상자료의 처리

3-1. 영상자료의 의미

‘영상자료’라 함은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촬영 원본, 편집본과 이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본, 프리뷰 노트, 큐시트 등의 문헌 자료를 포함한다. 방송제작 시 촬영, 습득, 구입한 영상자료는 다음 방송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록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의 보존은 ‘포스트 프로덕션(후반 제작)’의 한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KBS의 재산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기록한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작자는 프로그램 제작 시, 영상자료의 관리와 보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2. 방송 종료 후 영상자료의 처리

방송 종료후 영상자료의 처리는 <방송법>과 <언론중재법>, <KBS 콘텐츠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 ① 방송프로그램은 방송 종료 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방송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방송 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 후 6월간 보존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7항(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 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해야 한다.

〈KBS 콘텐츠 관리규정〉 제16조(콘텐츠의 전송·이관)

- ① KBS 직원이 업무수행 중 취재, 구입, 기증을 통하여 획득한 영상자료는 방송 종료 후 자료관리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
- ②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법〉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자료관리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

- ② 취재, 촬영된 영상자료는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여 제작자는 제작 중 습득한 자료의 보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료는 제작자 개인이 보관하지 말고 KBS 내의 자료관리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 ③ 제작자는 원활한 2차 사용과 기록 보존을 위해 자료의 촬영일시, 촬영장소, 촬영내용, 연출자, 촬영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자료관리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
- ④ 취재 중 습득한 영상자료가 저작권 문제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를 고려해서, 자료를 이관할 때는 향후 재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사용 범위와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
- ⑤ 방송자료의 재사용자는 재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사용범위, 한계 등을 사전에 잘 파악하고 사용해야 한다.

사례

〈다큐멘터리 극장 - 큰스님 성철〉편(1994년 1월 9일/16일)

식민지시대 태고종 스님들의 법복에 대한 해석의 잘못으로 '전통적인 법복을 식민지 시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부정확한 재연을 한 것에 대해 태고종단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 사과 방송을 했다. 담당 제작자는 영상자료실로 자료를 이관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명기하여 주의 의무를 다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프로듀서가 시급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상황에서 담당 제작자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위에 놓여 있던 편집 원본을 빌려 전후사정을 모른 채 문제의 장면을 재사용함으로써 다시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

26

소셜 미디어 이용 원칙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



1. 소셜 미디어 이용 원칙

KBS의 직원들도 개별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영방송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갖는 다양한 사회적 책무와 영향력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KBS의 신뢰도와 평판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KBS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공식 페이지인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KBS가 운영하는 페이지임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지에 KBS를 연상할 수 있는 요소(사용자 계정, KBS 브랜드, 프로그램 명) 등을 노출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KBS의 이

미지와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보다 많은 콘텐츠를 KBS의 플랫폼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관련 링크를 포함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콘텐츠는 비공개 또는 삭제하더라도 온라인상에 노출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이용 가능성을 가정하여 작성하고 게시해야 한다.

1-1. 개인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 원칙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 시에도 사내 규정, 취업 규칙, 윤리 규정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개개인의 사소한 실수가 개인과 KBS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공영방송의 직원으로서 그에 맞게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
- ② 개인의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활동이더라도 본인이 게시한 글을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③ 사적인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관점의 의사 표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④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내용, 회사 내부 정보 등을 공공연히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⑤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부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⑥ 소셜 미디어 상에서도 기본적인 윤리 규범과 상호 간의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을 비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⑦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 상에서 KBS와 관련된 갈등이 발

생하는 경우 관리자와 논의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공식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 원칙

공식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은 KBS 및 KBS 프로그램 홍보, 콘텐츠 및 뉴스 게시 등 관련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과 TV와 라디오 등과 같은 전통적인 플랫폼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 ① KBS의 성공적인 소셜 미디어 활동을 위해 유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공식적인 소셜 미디어 활동은 KBS 브랜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인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통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활동은 피해야 한다.
- ③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게재되는 내용은 운영 부서장의 감수를 거쳐야 한다.
- ④ 소셜 미디어 계정의 보안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3. 이용 시 유의사항

① 주요 내용

- 가. 소셜 미디어 이용자에게 KBS의 공식페이지라는 점이 명확히 구별되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목적, 서비스 방안, 활용 플랫폼 등은 마케팅 담당자뿐만 아니라 제작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 다. 소셜 미디어 페이지, 사이트 등을 서비스하기 이전에 관련 부서 간 업무 분장, 필요한 사내 리소스, 서비스 종료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 라. 사이트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 마.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중립적이어야 하며, 이용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 사. 원칙적으로 해당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제정한 개인정보정책 및 이용약관을 따라야 하지만 필요시 KBS의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 아. 타 사이트에도 KBS 브랜드를 노출시켜야 하며, 관련 콘텐츠는 브랜드 이미지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 자. 소셜 미디어 상의 게시물에 KBS 홈페이지와 플랫폼으로의 링크를 연결하여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차. KBS 콘텐츠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의 제반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카. 특정 단체나 기업 등을 팔로우하거나 친구로 추가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타. 게시물을 포워딩하거나 리트윗하는 경우 특정 의견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서비스 출시 전 고려사항

소셜 미디어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기 이전에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가.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적이 분명한가? 이를 KBS의 마케팅 전략과 부합되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
- 나.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핵심 타깃층이 명확한가?
- 다. 소셜 미디어 전략 수립 시 각 사이트별 이용자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했는가?
- 라.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가? 유사하더라도 KBS 또는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효용이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 마. 기획 당시 의도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는가?

- 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유지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가?
- 사. 목적을 달성하고 난 후 적절한 서비스 종료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가?
- 아. 성과측정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 자. 시간 또는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③ 로고 및 브랜드 사용

타 사이트에 KBS 콘텐츠 및 뉴스 기사를 게시할 경우 KBS 브랜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BS의 정체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KBS 로고는 홈페이지의 관련 페이지 링크를 가능한 한 포함해야 한다.
- 나. KBS 로고 및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KBS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뢰도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다. KBS 브랜드 사용에 있어 저작권, 마케팅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KBS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KBS에서 운영하는 공식 페이지임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이용약관, 관련 법령, 저작권 준수

타 사이트상의 이용자 보호 및 조정 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소셜 미디어에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심의 기준에 의거하여 범죄 등의 극단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 글이나 코멘트 등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은 제반 규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KBS 저작물 및 UCC를 게시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타 소셜 미디어의 제반 규정과 이용약관 상의 허용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정리해서 처리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 가. 타 사이트에 게시하기 전에 원저작자와의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을 게시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나. 일부 사이트의 경우 TV, 라디오 또는 인터넷(모바일)에서 상업적인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 다.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게 KBS 콘텐츠와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만 게시되어야 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권한을 회수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⑤ 친구 추가, 팔로우

외부 제휴 또는 사회 활동을 위해 특정 단체나 조직, 기업을 팔로우하거나 친구를 추가할 때 대상이 신뢰할 수 있는지,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정 단체나 회사를 팔로우하거나 친구 맺기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KBS가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⑥ 신뢰성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정보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므로 게시하기 전에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미흡하여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시 또는 공유하는 경우 KBS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 만약, 잘못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이를 신속히 정정하고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⑦ 링크 전략

KBS의 소셜 미디어 전략은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KBS 콘텐츠 간에 밀접한 관련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콘텐츠를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적게 소비하는 사람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우리의 콘텐츠를 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만 콘텐츠가 소비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플랫폼에서 보다 많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링크를 포함해야 한다.

⑧ 콘텐츠 분류 및 메타데이터 관리

KBS가 제공하는 콘텐츠 등은 사전에 이용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KBS 홈페이지와 일관된 형태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⑨ 광고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배너 광고와 같이 KBS의 편집권한이 미치지 않는 광고 섹션이라고 하더라도 유해한 광고(음란, 도박 광고 등)의 경우 관련 부서를 통해 즉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

제작자는 KBS의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에 제작, 유통할 때에도 KBS 콘텐츠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KBS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유통할 시에는 해당 플랫폼의 특성과 운영방침을

참고하되 KBS 콘텐츠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작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한 내용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공사의 담당부서가 제정한 <KBS 디지털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과 <콘텐츠 유통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27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1. 간접광고

간접광고란 직접광고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일반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의미한다. 그동안 방송에서의 간접광고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2009년 <방송법>에 ‘간접광고’ 규정을 두고, 2010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방송법시행령 제59조)으로 정한다.
- 7.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1-1.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규정

간접광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에 유의하면서 제작에 임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 ① 간접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장면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3.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 ②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그 밖에 간접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 ③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2. 정보와 간접광고의 구분

간접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의 개발 단계, 공연이나 상영의 경우에는 실시되기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내용 소개를 정보로 볼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이거나 공연 또는 상영 중인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를 다루어야 할 경우라도 광고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경쟁관계에 있는 대상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가상광고

가상광고란, 직접광고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텔레비전의 일반 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를 의미한다. 그동안 방송에서의 가상광고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2009년 <방송법>에 가상광고 규정을 두고, 2010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1. 가상광고에 대한 심의규정

가상광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가상광고)에 유의하면서 제작에 임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가상광고)

-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난 등에 대한 방송이나 긴급속보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하게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다만,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되거나, 운동경기(이)와 관련된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계하는 장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운동경기의 경우 선수와 심판의 장비를 포함한다) 위에 노출하는 내용. 다만, 개개인의 얼굴 식별이 어렵고,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청객이나 관중 위에 노출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의 중요한 배경·소품, 자막 위에 노출하거나 이를 변형·왜곡시켜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5. 그 밖에 가상광고를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 ② 가상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가상이미지의 삽입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상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가상광고 자막은 제외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가상광고 상품 등의 거래정보(가격, 구성, 위치·연락처, 행사기간 등 거래와 직접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를 자막(가상광고 자막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가상광고 상품 등의 구매·이용 권유정보(품질·효능·기능·보증 등 구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업적 표현을 말한다)를 자막(가상광고 자막을 제외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언급하는 내용
 4. 출연자 등이 가상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실제로 시현하는 내용
 5. 그 밖에 프로그램 안에서 가상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 ③ 가상광고가 출연자 등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구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가상광고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2. 가상광고 시 주의점

가상광고에 있어 특히 주의할 사항은 가상광고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화면의 16분의 1(6.25%) 이상의 크기로 ‘가상광고 고지’를 해야 한다.

가상광고는 방송화면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경기 중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하면 안된다. 다만, 개개인의 얼굴 식별이 어렵고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청객이나 관중 위에 노출할 수 있다.

28

방송 이벤트와 협찬



1. 방송 이벤트

KBS가 실시하는 사업, 외부에서 실시하는 방송과 관련이 있는 행사나 사업을 통칭하여 방송 이벤트라고 한다. 단 행사나 사업의 성격이 있는 방송 이벤트 중에서 정규편성의 방송프로그램은 별도로 한다.

KBS는 방송과 관련이 있는 각종 방송 이벤트(행사 및 사업), 즉 학술, 문화, 예술, 체육, 국제교류 등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외부의 단체나 기관에서 KBS에 방송 이벤트 실시 의뢰 및 요청이 있을 때, 그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명백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행사)이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나 집단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는 이를 실시할 수 있다.

KBS가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모든 방송 이벤

트는 사내 관련 위원회(부대사업심의위원회, 편성제작실무회의, 편성제작회의 등)에 상정하여 공식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실시한다.

1-1. KBS가 실시하는 방송 이벤트

- ① KBS는 국가적인, 혹은 공적 성격이 강하고 방송과 연계되는 각종 방송 이벤트는 직접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KBS가 직접 실시하는 방송 이벤트는 주관 혹은 주최로 표기하고 외부의 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송 이벤트는 공동주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단 공동주최 형태의 방송 이벤트에서는 그 비용을 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③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방송 이벤트라 해도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들어 있는 홍보물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거나 불필요하게 이름을 호명해서는 안 된다.

1-2. KBS가 지원하는 방송 이벤트

- ① KBS는 방송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적인 행사, 또는 순수 문화예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외부에서 실시하는 방송 이벤트를 위해 정신적, 인적, 물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명백히 상업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송 이벤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 ③ KBS가 지원하는 방송 이벤트에 대해서 실비 형태의 방송제작비와 행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3. 방송 이벤트의 협찬

- ① KBS는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방송 이벤트에 대해 외부로부터 행사비

와 방송 제작비를 협찬 받을 수 있다.

- ② 방송 이벤트에 대한 협찬을 받을 때는 KBS의 사규에 따른 사내 관련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방송 이벤트의 실시를 위해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방송프로그램의 종료 시 1회에 한해 고지할 수 있으며, 협찬고지의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 ④ 방송 이벤트의 고지를 위해 예고 스포트를 방송할 경우에도 별도의 수탁 송신료 및 스포트 제작비를 받을 수 있다.
- ⑤ 예고방송(방송 스포트)에 협찬자를 고지할 경우 수식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고 종료 시 1회에 한해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 명 등을 밝힐 수 있으며 자막은 TV의 하단 또는 우측 4분의 1 범위 내로 하되, 협찬고지의 세부 사항은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 ⑥ 방송 이벤트 방송 중에 협찬주를 위해 행사장에 별도로 제작, 게시된 현판·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의도적으로 화면에 담거나 홍보성 고지를 해서는 안 된다.

2. 협찬품 관리

협찬이란, 공사가 방송 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하며,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협찬품 제공이라고 한다.

2-1. 협찬품의 기준

- ① 출연자, 방청인, 시·청취자 등에 지급하는 협찬품은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 ② 방송 내용에서 협찬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해당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되며, 협찬품의 종류 및 가격을 선정할 때에는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③ 현금성 협찬품(상품권 등)은 위탁 업무 및 용역 대가, 고정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협찬품 운영

- ①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잉여 협찬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타 프로그램에 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협찬품 지급방법은 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 현장에서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지급을 할 수 있다.
- ③ 현장지급분은 사용처, 금액, 수령인 서명 등이 포함된 증빙자료를 구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협찬고지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의 고지 관련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2-3. 캠페인 스팟 협찬

- ① 협찬금으로 제작·방송하는 캠페인 스팟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KBS의 방송 목표, 방송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② 협찬사의 선전, 홍보 또는 영리 추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는 협찬금을 받아 캠페인 스팟 형식으로 방송할 수 없다.
- ③ 캠페인 스팟을 협찬할 수 있는 범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에서 허용하는 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 한다.
- ④ 협찬 캠페인 스팟은 종료 시 1회에 한해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 크기는 화면 하단 또는 우측 4분의 1 범위 내로 제한하되, 협찬고지의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 ⑤ 협찬 캠페인 스팟의 허용 여부, 방송 채널, 횟수, 협찬금액 등은 KBS 내부 지침에 의거, 소속 본부장 결재로 시행한다.

2-4. 스포츠 프로그램 협찬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은 국내외의 주요 경기대회 중계 또는 단위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실시되며 스포츠 방송과 관련한 협찬은 시청자 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공영방송의 위상을 저해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① 협찬의 조건 및 방법

- 가. 협찬 조건은 방송 이벤트의 협찬 기준에 따른다.
 나. 협찬유치는 대회 개최(주최) 측, 중계권 소유 측, 스폰서 측과 협의하여 관련회의를 거쳐 확정, 시행한다.
 다. 대회 예고 방송 시 대회 명에 협찬사의 타이틀을 인정할 경우, 예고 스팟 횟수는 협찬금에 따른 방송 횟수만큼 정확하게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내외 주요경기의 기준

- 가. 종합대회 방송
- 하계올림픽 경기대회(4년 주기)
 - 동계올림픽 경기대회(4년 주기)
 - 아시아경기대회(4년 주기)
- 나. 주요 국제대회 방송
- FIFA 월드컵 대회

-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 국제 마라톤대회
- 주요종목 세계 선수권대회 (2년 주기)

다. 주요 국내대회 방송

- 프로 야구대회
- 프로 축구대회
- 프로 농구대회
- 프로 배구대회
- 프로 골프대회

라. 기타

- 민속씨름대회
- 전국체육대회
- 축구대표팀 초청 평가전
- KBS배(기) 대회
- 대통령배(기) 대회
- 해외 스포츠 이벤트: 메이저리그, 유럽축구선수권, 프리미어리그, PGA, LPGA 등
- 그 외 계기성 이벤트 대회

방송통신위원회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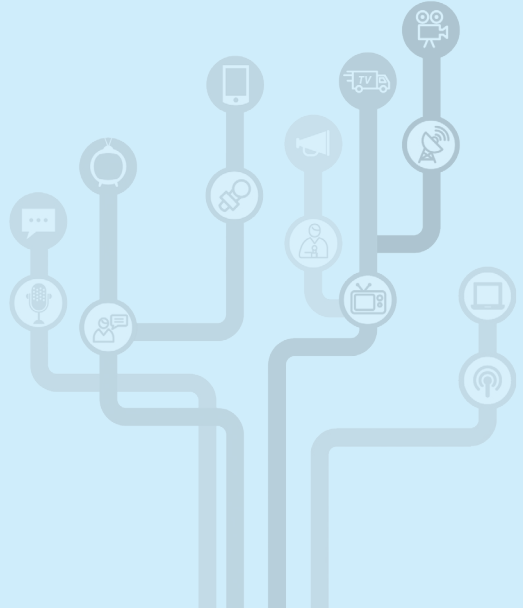
1. “협찬”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협찬주”라 함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찬고지”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라 함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말한다 (SBS는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5.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라 함은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를 말한다.
6. 영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최”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이에 수반되는 책임까지 지는 행위이며, “주관”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행위이며, “후원”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 영리의 목적 없이 금전이나 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영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익행사”라 함은 일반 대중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음의 행사를 말한다.
 - 가. 문화예술(음악회,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무용, 콘서트, 판소리, 풍물, 창극, 마당놀이, 연극제, 영화제 등)
 - 나. 서화전, 미술전, 사진전 등
 - 다. 지역복지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 라. 스포츠행사
 - 마. 교육관련 행사(강연회, 강습회, 경진대회, 역사·문화탐방 등)
 - 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익행사로 인정하는 행사
8. “프로그램 종료시”라 함은 편성단위가 되는 당해 프로그램의 종료 시를 말한다. 다만, 수 개의 독립된 방송내용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경우, 각 방송내용물의 독립성이 뚜렷하고, 그 방송내용물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제작한 것인 때에는 해당 방송내용물의 종료 시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8조(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 ① 영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이하 '캠페인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캠페인 종료 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 ② 영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행사협찬(이하 '행사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 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 ③ 영 제6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프로그램제작협찬(이하 '프로그램제작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 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 ④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 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예고종료 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영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 내 시상품 또는 경품의 협찬고지(이하 '시상품등의 협찬'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프로그램 종료 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및 시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 ⑥ 영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 내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의 협찬고지(이하 '장소 등의 협찬'이라 한다)는 프로그램 종료 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등의 경우 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29

저작권



독창성과 창의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물의 권리에 대해 개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작자는 여러 사람의 정신적, 문화적 창작품을 매개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만큼 항상 저작권 관련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저작권과 관련된 국내 법 규정은 그 역사가 짧은 이유로 아직 판례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저작권 실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제작자는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저작권 담당 부서와 상의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작에 필요한 외부의 저작물(영상자료 등)을 확보할 때는, 해당 자료가 삽입된 프로그램이 KBS의 매체를 통해 방송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케이블, 위성, DMB, 인터넷, 모바일 기반 매체 등을 통한 방송, DVD로의 제작 및 유통, 도서

출간 등 2차적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외국음악을 드라마에 삽입할 경우에는 해외 판매(또는 해외에 서비스 되는 OTT) 시 해당 곡을 다른 음악으로 대체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1. 용어의 정의

1-1. 저작권

문학, 미술, 음악, 사진, 영상과 같은 인간의 사상의 산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저작권이라 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분된다. 기획서 초안이나 공식, 작동 설명서와 같은 아이디어가 아닌, 인간이 창작한 표현(expression)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1-2.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범위는 방대하다. 대표적인 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지만 그 밖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 ① 문예: 소설, 시, 시조, 수필, 논문, 강연, 각본, 신문 기사, 노래 가사
- ② 음악: 대중가요, 클래식, 동요, 가곡
- ③ 연극: 연극, 무용(춤), 무연극(마임)
- ④ 미술: 회화, 서예, 조각, 판화, 도안, 공예
- ⑤ 건축: 건축 모형, 설계도
- ⑥ 영상: 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사진
- ⑦ 사진: 각종 사진과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
- ⑧ 도안: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 ⑨ 2차 저작물: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작품
- ⑩ 편집 저작물: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작품

2. 저작권 보호의 예외

2-1. 비 저작물

저작권법상 또는 판례상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비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 ① 저작물에 포함된 사실, 정보, 아이디어
- ② 저작물의 제호(짧고 간단한 글로 표현한 타이틀)
 - 제호 자체는 짧아 대체로 저작물성이 부인되므로 서적이거나 영상 저작물의 제호를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 저작물의 제호는 내용의 표절 주장 등 이의 제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시청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짧은 문구라도 문학적 성격을 지닌 독창성 있는 문구라면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판례

제호의 저작권 부정(서울민사지법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판결)

창작 안무가가 자신이 창작한 무용극의 제명(‘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을 동일 제명의 영화와 소설로 제작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호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례

짧은 문구의 저작물성 인정(서울중앙지법 2019.9.6.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

현대백화점은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다. 그런데 이 문구는 김씨가 2009년에 발매한 앨범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와 동일한 문구였다. 법원은 위 문구는 “용어의 선택이나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2.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 ①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사회의 공공 재산으로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② 원칙적으로 개인(자연인)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은 저작자 생존 시와 사후 70년, 단체(법인)가 권리를 소유한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된다. 영화나 방송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는 공표(상영 또는 방송)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 ③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57년부터 적용(당시 사후 30년 보장)되므로, 실무적으로 1956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 1956년 이전에 공표된 단체명의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방송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미국 등 해외 저작물은 법개정으로 인해 보호기간의 계산이 우리 저작권법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저작권 담당 부서에 문의한 후 이용한다.

2-3.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일반적 의미에서는 보호 가능한 저작물이지만 국가 정책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저작물이 있다.

- ① 법령
- ②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 ④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위에서 나열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⑤ 공개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4. 공공장소의 예술작품

공개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예술 작품이나 건축물은 별도의 저작권 처리가 없어도 자유롭게 촬영, 방송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개장소란 공중에 개방된 장소로 호텔 라운지와 같은 곳은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장소에서 촬영 시에는 주변에 조각품 등의 미술품이 화면에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판례

호텔 내 공간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 104292 판결)

A호텔 라운지는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만 A호텔의 내부 공간으로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호텔 내부에 전시된 원고의 저작물(조각품)을 자유롭게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2-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유명 그림의 도난사건 보도를 위해 배경형태로 그림을 방송 또는 사진기사로 게재하거나, 전시회나 음악회 개최장면을 보도할 때 TV 배경화면으로 전시된 저작물이나 음악회의 연주음악이 나가는 것은 저작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모든 시사 보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사건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2-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뉴스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외부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참고하거나 소개, 논평하는 경우가 있다.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 보도나 비평 프로그램에서 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합리적 이용수준에

서 인용할 수 있다. 이때도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 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된 것을 말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공표된 저작물
 -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은 제외된다.
- ② 인용의 필연성 존재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
- ③ 명확한 주종관계
 - 인용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며 증빙, 예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데 그쳐야 한다.
- ④ 변형, 재구성 없이 원형 그대로 이용
- ⑤ 출처의 명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판례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국내의 한 월간지가 ‘사진예술 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는 제목 아래 일본의 한 시사주간지에 우리나라 사진작가의 누드 사진이 실렸다고 보도하면서 위 누드 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재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평 기사보다는 사진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도록 확보형식으로 구성하여 보도 목적의 정당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7. 저작물의 공정 이용

2011년 12월 <저작권법>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일정 범위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 ①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즉 상업적인지, 교육적인지, 이용이 공익적 가치를 갖는지의 여부
-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즉 저작물이 사실적 저작물인지, 공표된 저작물인지, 패러디의 경우인지 여부
-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즉 저작물의 이용 정도 및 핵심 여부
-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3. 저작물 이용절차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3-1.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 ① 저작권 처리(이용 허락 등)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한다.
- ②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권리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권리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은 면책되지 않는다.
- ③ 권리자와 협의하여 이용을 허락받는다(무상 또는 유상)
- ④ 허락을 받을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계약서, 이메일, 문자, SNS 답변 등)
- ⑤ 저작물 창작한 자가 권리자가 아닐 수 있다. 저작권의 양도, 상속(증여) 등의 권리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

소설을 드라마화 할 때, 소설가가 소설에 대해 영상화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했다면, 그 권리를 인수 받은 사람과 협의해야 한다. 단 저작 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으므로 원작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은 원저작자(소설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계약으로 합의사항을 명백히 표명해 두어야 한다. 구두 계약의 경우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장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2. 각본이나 음악 등을 프로그램을 위해 새롭게 만드는 경우

- ① 각본가나 작사가, 음악 제작회사 등에 각본의 집필, 음악제작 등을 의뢰한다.
- ② 의뢰 상대방과 집필 등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촉료나 사용료를 지불한다. 계약체결은 계약 업무를 간소화하고 계약상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이용한다.

4.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저작권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1. 저작권 보증

저작권은 부동산처럼 권리의 득실 변경을登記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권리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계약서에 저작권자임을 보증하도록 하고 저작권에 관하여 제3자의 권리 주장이나 분쟁 발생 시 계약 상대방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넣어 둔다.

판례

드라마 대본 작가 저작권 위반 사건(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드라마 대본작가가 타인이 쓴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KBS와 대본작가가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 KBS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사항에 명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가 있었다.

저작권 보증조항 예시

(계약 상대방) ○○○는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상기의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이익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4-2. 저작물 이용방법과 범위

외부 저작물, 특히 소설 등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할 때 작품의 해석이나 방송사의 사정으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때가 있다. 만일 이런 필요성이 예상되면 그 내용을 수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후에 작가의 저작인격권(moral rights) 중 동일성 유지권 주장으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 저작물, 특히 영상자료 등은 이후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서 지상파 이외의 매체에 공급되거나 DVD,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도서 출판, 극장용 영화 등 2차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권리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이용 횟수와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사용료 수준을 낮추도록 한다.

4-3. 프로그램의 권리 귀속

제작된 프로그램은 KBS 방송 이외에도 활용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권리 문제를 처리한다. 프로그램은 새로운 창작물인 만큼 모든 권리를 KBS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 제작사와 제작한 프로그램의 경우 일부 권리나 수익의 배분을 고려할 수 있다. 권리 관계는 사용 매체와 권리 유형을 자세히 열거해 줄수록 권리 행사가 용이하고 분쟁의 소지도 사라진다.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방송권(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DMB방송 등), 디지털 음성 송신권 등을 비롯한 공중 송신권
- ② 복제·배포권(비디오, CD, DVD 등)
- ③ 공연권(영화상영 등)
- ④ 전송권(인터넷, IPTV, 모바일, OTT 등)
- ⑤ 2차 저작물 작성권(자료사용권, 번역물 작성권, 편집물 작성권, 부가사업 등)
- ⑥ 도서출판권 등
- ⑦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모든 권리

위에 예시한 권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권리도 포함하되, 해외권리를 별도로 명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를 명확히 해둔다.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관계는 위에서 예시한 것보다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KBS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참고하고, 계약 체결 전에 저작권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저작권 담당부서를 경유해야 한다.

4-4. 이용 대가와 지불 방법

이용 대가의 크고 작음은 때때로 '계약 내용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지급 금액을 기재하고 세금 포함 여부도 밝혀 둔다. 선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계약 금액에 대해 약속어음을 공증하거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 폐지, 방송횟수 단축 등의 사유로 출연료나 이용료의 삭감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에 따라 정산, 반환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

4-5. 계약 해제의 문제

계약은 지켜지기 위해 존재하지만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깨지기도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배상 예정조항을 두어 해결하면 좋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사안에 따라 위촉료나 작품료(이용료)의 2~3배로 정하면 된다.

5. 저작물의 이용

요즘은 국내 저작물뿐만 아니라 해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당사자 간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KBS의 국제적인 위상도 치명적인 훼손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에 빈번히 사용되는 저작물들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단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5-1. 시, 소설, 수필 등 문예 작품

KBS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문예작품 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협회 회원의 작품은 작가와의 개별 협의 없이 실 사용시간 5분 이하 범위에서 방송에 이용할 수 있다. 작가의 회원 여부 확인은 저작권 담당 부서나 해당 협회에 하면 된다. 단 소설이나 웹툰은 저작권 유무를 확인하고 원작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해야 한다.

사례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주청취 대상으로 소설작품을 선정하여 낭독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원작자의 허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설을 사용하던 중, 원작자가 무단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5-2. 회화, 조각, 서예 등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을 취재·보도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의 동정을 보도하면서 미술품이나 사진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오락, 감상의 목적으로 촬영, 방송하고자 할 때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무대세트의 경우도 미술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세트 제작 의뢰 시 저작권 보증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한다. 제작자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더라도 세트 제작사 등 용역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관리, 감독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사례

2002 월드컵 당시 특집 프로그램에 축구선수가 출연하고 그들의 사진이 동 프로그램에 사용된 후, KBS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지나간 월드컵 이야기와 관련하여 축구선수 사진을 허락 없이 배경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진 저작권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다른 프로그램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KBS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5-3. 음악

KBS는 음악저작권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와 음악 사용에 관한 포괄 협약을 체결하여 협회 회원의 음악 및 상호 관리약정을 체결한 외국 음악을 방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된 프로그램이 유튜브나 다른 외부 채널에 판매될 경우 외국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나오고 있다(특히 드라마). 따라서 방송 이외에 유튜브나 OTT에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채널에서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제작 전에 받거나 국내 음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특정 음악의 방송사용 가능 여부 확인은 저작권 담당 부서나 음악저작권협회 등으로 하면 된다.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해서는 음반산업협회 및 음악실연자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보상금)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허락 등의 개별적인 처리가 필요 없다. 라이브러리 음악은 일부 음원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음원작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한 음악감독이나 외주업체가 권리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례

오래 전에 방송 되었던 드라마가 유튜브에 올라가자, 그 영상을 본 러시아 작곡가가 무단으로 자신이 음악이 쓰였다고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러시아 음악과 같이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 국가의 음악은 음악저작권단체가 관리하는 곡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원곡을 편곡하거나 개사해서 방송에 사용할 경우에는 원곡 작곡가나 작사가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가사를 희화화해서 사용하는 등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5-4. 영상물(영화, 비디오, 사진 등)

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 관리 단체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권리 처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표된 영상물일 경우 보도, 비평 목적의 적법한 인용(발췌 사용)은 가능하다. KBS가 이미 방송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 영상에 대해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호한 경우 저작권 담당 부서와 협의한다.

사례

주로 한국의 야생화를 촬영하는 촬영작가에게 공급받은 '한국의 야생화' 관련 영상물을 환경다큐프로그램이나 KBS ID프로그램에 사용해 오다가, 당초 제공 목적 이외의 여러 프로그램(환경스페셜, 일기예보 등)에서 180여 회 이상 무단으로 영상물을 사용하자 작가가 3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직원과 KBS가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KBS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관련 소송을 합의 종결했다.

유튜브 영상을 방송프로그램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 유튜브 영상은 게시자가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권리자가 누구인지 출처를 표시할 때도 단순히 '유튜브'라고 하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편집 영상의 경우 여러 명의 원 저작자가 있고 유튜브 게시자는 이들을 편집하여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권리 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는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외부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아기 강아지가 밥을 먹는 짧은 장면을 사용했다. 방송을 본 유투버가 시장단가를 훨씬 넘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작진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했다.

6. 저작권 침해 등 이의 제기 시 대응

6-1. 이의제기 종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청자 또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 아래와 같은 경우는 권리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사실관계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① 아무 연락 없이 자신의 저작물이 방송되었다.
- ② 허락은 했지만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표시한다’, ‘사례비를 지급한다’ 등의 허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 ③ 자신의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형을 했다.

6-2. 대처 방법

저작권에 관한 이의 제기는 저작자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격적인 말투가 많다. 따라서 문서 또는 전화를 불문하고, 항의를 받은 경우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통해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구두계약이나 구두 승낙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과 주고받은 의견은 그 내용과 일시를 메모로 남겨둔다 ②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경우에는 문자, 메신저(SNS), 이메일, 팩스 등으로 상대방에게 보내고 그 원본을 남겨 본인이 보관할 필요가 있다.

7. 저작권자로서의 방송사업자(프로그램과 2차 활용)

프로그램은 방송 이후에도 해외 수출, 국내 타 플랫폼과 매체에 제공, 인터넷, OTT 플랫폼, DVD, 도서출판, 음반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의 2차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KBS 프로그램이나 영상자료 등의 판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사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에 프로그램이나 영상자료를 공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상의 유통(방송권의 판매, 도서 출간, DVD·비디오·음반의 제작배포 등)과 온라인상의 유통(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매체와 디바이스) 모두 KBS 미디어가 본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항과 관련하여 외부의 문의가 있는 경우는 본사 담당부서나 KBS 미디어와 협의하도록 안내한다.

외부에서 KBS 프로그램이나 영상자료의 무상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본사 담당부서가 이용 목적, 용도, 효과, 외부 단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공 여부와 제공조건을 정한다. 제작부서는 임의로 외부에 제공하지 말고 콘텐츠 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도록 한다.

8.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에서 저작물 이용

8-1. 음악

KBS가 계약한 음악(음악저작권단체)은 프로그램에 인서트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음악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권리처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KBS에 대해 서비스에 따른 음악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

다. 따라서 신생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음악 사용료를 처리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8-2. 인터넷/모바일 전용 콘텐츠

KBS는 방송용 제작만을 위해 음악저작권자와 등과 계약하였기 때문에, 방송 송출용이 아닌 인터넷/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권리처리가 필요하다. 자세한 권리관계는 저작권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도록 한다.

8-3. 기타 콘텐츠

음악 이외의 사진이나 외부 영상물은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에 이용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파악된 다른 콘텐츠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하다.

9. 재송출에 따른 주의 의무와 글로벌 스탠더드의 준수

9-1. 재송출에 따른 유의사항

KBS 1, 2TV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은 방송 종료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

지상파 방송 이후 이들 재송출 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예를 들면 저작권의 제한이 있거나 지상파 방송 직후 국민 건강이나 안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제작진은 즉시 재송출 관련 부서에 통보하

여 편성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례

KBS 프로그램 <스펀지>에 소개된 '진드기 퇴치법'을 보고 국내 시청자가 이를 따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며칠 뒤 미국에서도 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

9-2. 글로벌 스탠다드의 준수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화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 위성, 케이블은 물론 각종 유무선 휴대 통신 장비를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시·청취자가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실시간 또는 VOD로 동일한 방송을 듣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이 된 경우라도 정치 체제, 문화와 관습, 인권,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사례도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심한 경우 국가 간 외교적인 분쟁이나 마찰, 국제소송 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 방송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까지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

특정 프로그램에 우스꽝스런 흑인 가면을 쓰고 트럼펫을 연주한 장면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 흑인이 이를 시청하고 인종차별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항의한 사례가 있었다.

9-3. 방송의 디지털화와 유비쿼터스 그리고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

디지털화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시청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방송에 참여하는 길이 훨씬 넓어

졌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작동하기 쉬운 캠코더와 같은 디지털 장비가 양산 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이 진화함에 따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가 방송 뉴스 소스나 프로그램에 활용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작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이를 위해 가급적 공신력 있는 업체를 통해 확보하고, 사용 전에 출처와 내용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UCC를 방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KBS의 여러 매체를 통해 재송출 또는 재전송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30

외주제작 및 외부 제작요원



KBS를 통해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책임은 KBS에 있다. 따라서 KBS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외주 제작사와 KBS의 외부 제작요원들은 KBS의 방송제작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 외주제작 담당 프로듀서의 책임

KBS의 외주제작 담당 프로듀서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닌다.

- ① KBS를 대표하여 외주 제작물을 감수하는 책임을 지며 외주 제작사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통해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외주제작사의 제작 시설, 연출자 등 제작 능력과 그동안의 제작 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제작사가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외주제작 운

영 및 상생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 ③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편성을 고려하여 제작을 추진해야 한다.
- ④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원가 개념에 의거한 비교·분석, 저작권의 2차 활용 계획 등을 포괄하는 경영 마인드를 지녀야 한다.
- ⑤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완성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
- ⑥ 계약 업무 등 제작 외적인 분야에 대한 행정 능력을 겸비해야 하며, 정치·경제·사회 등 시대상황의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주제작사

- ① 외주제작사는 공영방송 KBS가 추구하는 방송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 ② 외주제작사의 제작시설, 연출자 등 제작능력과 그동안의 제작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제작사가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외주제작 운영 및 상생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 ③ KBS와 외주제작사는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명기된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외주 제작사는 즉시 KBS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는 등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KBS는 계약사항과는 별도로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의 수습에 임해야 한다.

3. 외부 제작요원

- ① KBS의 방송 제작에 관계하는 외부 제작요원은 KBS의 제반 규정과 방송

기준, 원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준하여 제작에 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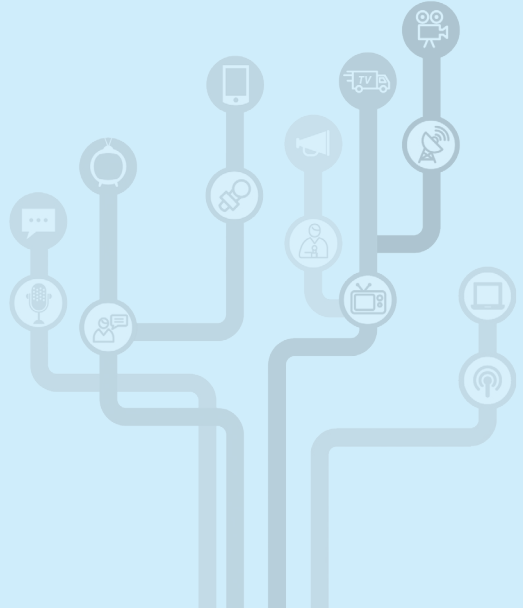
- ② 외부 제작요원은 방송제작 활동 중에 KBS의 제작자와 마찬가지로 품위를 유지하고 KBS와 관련된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외부 제작요원은 방송 제작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문제나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즉시 KBS의 제작자와 상의해 처리해야 한다.

4. 외주 프로그램 관리

- ① 외주 프로그램은 생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사전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내실 있는 사전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KBS의 외주제작 담당 프로듀서는 프로그램 기획, 아이템 및 출연자 선정, 촬영 및 녹화, 종합 편집 등 제작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감수한다.
- ③ 외주 프로그램을 시사할 때는 공영방송 KBS의 방송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획의도와 제작방향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제작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외주제작운영 및 상생지침>을 기준으로 조치를 취한다.
- ④ 외주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KBS와 외주 제작사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저작권을 배분하며, 보유한 저작권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1

방송심의와 평가



모든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제100조에서는 해당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86조는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108조 제1항 20호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와 ‘방송사 재허가 심사’의 중요 평가요소로 반영된다.

따라서 방송심의회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절차임과 동시에, KBS의 대외 평가 및 유지에도 중요 요소가 됨을 감안하여 제작진은 심의규정 및 심의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심의회가 제작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간섭이나 통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방송품질의 향상을 통한 최상의 시청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제작진과 심의 부서는 심의 과정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1. 방송심의회

방송프로그램이 송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송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심의는 <방송심의회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심의한다.

- ①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회에 관한 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위 '①항'의 준수를 위해 <KBS 방송프로그램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은 심의부서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생방송 및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 지역국에서 제작·송출하는 프로그램, 특수방송(3라디오, 한민족, 국제방송) 등 심의부서가 해당부서에 위임한 프로그램의 사전 심의는 해당 부서 위임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위 '②항'의 사전 심의를 위해 제작진은 해당 방송원고, 드라마 대본, 큐시트, 녹음 및 녹화 테이프(파일 및 필름 포함)를 심의부서 또는 위임받은 부서장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 드라마 대본 : 녹음 또는 녹화 3일 전
 - 방송원고, 큐시트 : 녹음, 더빙 및 녹화 1일 전(단, 심의부서장이 지정하는 특집프로그램의 경우 3일전)
 - 녹음 및 녹화 테이프(파일 및 필름 포함) : 방송 1일 전
- ④ 심의부서는 심의지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심의지적평정위원회를 둔다.
- ⑤ 방송된 프로그램이 심의규정 등의 위반 사안이나 방송차질이 발생한 경우, '심의지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⑥ 심의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담당자 및 관련자의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 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물 제출 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나. 프로그램 사전심의 결과의 중요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제작, 방송하는 경우
 - 다. 제작부서에 위임심의된 프로그램 가운데 사후심의에서 중요한 사항이 지적된 경우
 - 라. 당해 연도 심의부서의 경고 누계 3회 이상인 경우
 - 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명령을 받은 경우

2. 방송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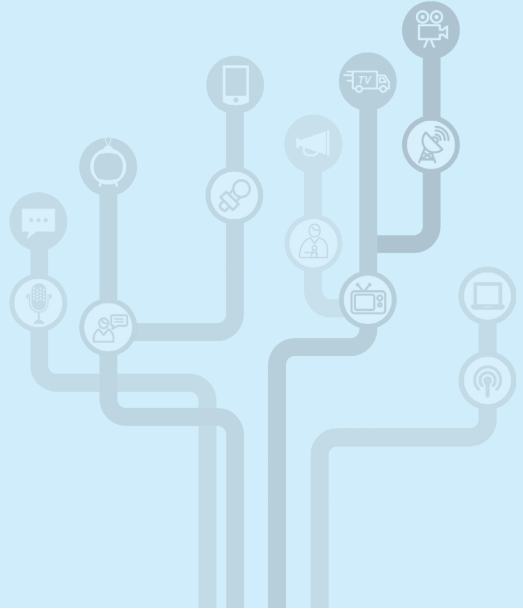
방송프로그램의 송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심의는 최종 송출단계에서

차질 없는 방송여부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심의부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및 사후심의 내용을 사내 전산망의 심의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 ② 심의부서는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우수 프로그램상’을 시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 ‘방송 대상’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관련 시상에 해당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32

방송의 사후 처리



방송의 사후 처리는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의 사후 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출연자나 방송에 관계했던 사람은 제작자를 신뢰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방송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잘못된 사후 처리로 인해서 야기되는 제작자 개인이나 방송사의 경제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다. 제작자의 성의에 따라 얼마든지 완벽한 사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제작자는 방송의 사후 처리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1. 행정 처리

1-1. 각종 전도자금 정산

- ① 제작진행비, 장소사용료, 지급 수수료 등 각종 전도자금은 방송 후 조속히 정산 처리한다. 전도자금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산하되 사용할 때마다 수

령하였던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근거자료로 삼는다. 또한 부득이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빙과 담당제작자의 사유서를 첨부한다.

- ② 사용하지 않은 전도자금은 방송 후 즉시 재무 담당부서에 반납한다.

1-2. 큐시트 및 대본 보관

방송된 큐시트 및 대본은 별도로 보관한다.

1-3. 관련 자료 보관

방송을 위해 신규 제작 혹은 임차한 영상, 음악, 음향, 도서, 전산자료 등은 소관부서가 지정한 형식과 방법에 따라 해당 부서로 제출하여 보관, 활용하도록 한다.

1-4. 제작 관련 소요경비 집행

- ① 각종 용역업체(조명, 특수장비, 동시녹음, 인력 용역업체 등)의 사후 처리 경비에 대한 청구서를 수령, 그 경비를 지출한다.
- ② 청구서는 실제 사용한 내역과 차이가 없는지 정확히 검토하도록 한다.

2. 출연자 관련 업무처리

2-1. 출연자에 대한 예우

출연자에게는 방송완료 즉시, 방송 내용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감사를 표시한다.

2-2. 출연자의 불만에 대한 처리

방송 내용에 대해 출연자가 불만을 보일 경우,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당제작자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불만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한다.

2-3. 출연 내용 변경 시 통보

녹화방송인 경우, 제작완료 후 방송 내용이나 일정 등에 변동이 생기면 출연자에게 통보하여 양해를 얻도록 한다.

2-4. 출연료 처리

출연자에게는 방송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례가 지급되도록 조치한다. 출연료의 대리 수령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와 관련 서류 및 영수증을 해당 부서에 제출한다. 대리 수령서류는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지급 처리한다.

2-5. 출연 녹화물 제공

- ① 사전에 출연 녹화물 제공을 약속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사본을 송부한다.
- ② 제작자가 출연자에게 복사본을 송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6. 출연자의 출연 관련 자료 반납

출연자가 출연 시 가져왔던 자료는 가급적 제작완료와 동시에 반납하도록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도록 한다.

2-7. 출연자의 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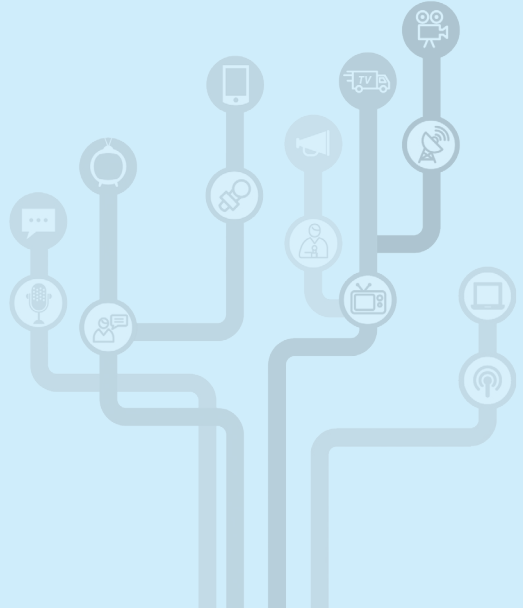
출연자로부터는 출연, 방송과 관련하여 절대로 물품 또는 금전을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만일 담당제작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편 등을 통해 반환함으로써 공영방송 제작자로서의 품위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2-8. 출연자 명부 관리

출연자는 가급적 회사 전체적으로 명부를 관리하는 것이 좋으나, 개인적으로도 명부를 작성하여 사후의 방송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3

시청자 서비스



공영방송은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방송이다.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은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어떤 방송에도 요구되는 가치이지만 공영방송은 상업방송보다 더욱 엄격히 공공성, 공익성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오늘날과 같은 다매체·다채널 시대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영방송의 존재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가 부담하는 수신료에 의해 운영된다. KBS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수신료의 부담자인 시청자에게 환원되는 것이며, KBS가 제작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제작자는 최종적으로 시청자에게 책임을 진다.

따라서 KBS의 제작자는 시청자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제작과 서비스에 임해야 한다.

1. 시청자 존중

- ① 제작자는 시청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청자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② KBS는 시청자에게 방송에 관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시청자 업무 전담부서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③ 시청자 부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특히 접수된 민원이나 불만사항은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 ④ 시청자 부서는 시청자 의견을 정리해 제작부서 등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통보된 사항을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⑤ 시청자의 시각을 대변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고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도록 한다.
- ⑥ KBS의 모든 부서 종사자들은 시청자와 관련된 업무를 친절하고 성의 있게 처리해야 한다.

2.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기준

- 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와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 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 서비스도 제공받아서서는 안 된다.
- ③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후원 및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 ④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저작물은 방송신청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이거나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저작물이어야 하

고,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야기되지 않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 ⑤ 방송신청인이 KBS에 제출하는 영상물 파일은 방송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시청자 항의 처리와 서비스

3-1. 전화 통화

- ① KBS는 시청자가 주인임을 인식해 상담전용 전화를 이용하여 시청자들이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시청자의 전화 가운데 방송에 대한 항의나 의견, 문의, 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전화는 상담실에서 주로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를 안내한다.
- ③ 시청자 상담실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3-2. 인터넷 홈페이지 등 운영

- 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해서 시청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 및 제작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② 인터넷 서비스 등은 KBS 소식을 비롯해 프로그램, 각종 생활정보, KBS 견학, 사업 및 행사, 방청 안내 등 다양한 시청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작자는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되는 의견은 간혹 전체 시청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다. 따라서 제작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시청자의 의견을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4. 시청자 요구 및 항의 전화에 대한 대응

- ① 시청자의 전화를 받는 KBS의 모든 직원은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요구와 항의에 대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답해야 한다.
- ② 사죄 요구나 명예훼손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문제는 상담자가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신속히 해당 부서를 안내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해 사안을 처리한다.
- ③ 항의의 대상이 된 방송 담당자의 이름은 취재원의 보호,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알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모든 시청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 둔다.
- ⑤ 음주자의 전화 또는 욕설, 반말 등 언어폭력을 쓰는 시청자의 전화는 정중히 거절한다.
- ⑥ 시청자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상담자가 스스로 처리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관계자 동의하에 전화를 안내해 준다.

34

방송에 의한 피해 구제 및 분쟁의 처리



오보나 인권침해로 인한 시청자의 정정 요구나 제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비용이나 패소에 따른 배상액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잘못된 방송, 인권을 침해하는 방송은 시청자의 신뢰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제작자는 제작의 전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보도와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에 대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성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언론·출판의 사후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민법>,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에 나누어져 있던 언론 침해의 피해구제 제도가 통합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언론중재법>, <민법> 등에 따른 피해구제수단과 절차는 이하 상술함).

1. 오보와 분쟁의 자율 규제

- ① 오보와 분쟁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방송사의 자율적인 노력이며, 그 중 하나로 제작자는 오보와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심의평가 담당부서의 사전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오보를 자체적으로 확인한 경우, 제작자는 데스크 및 책임 프로듀서와 협의하고 담당 부서장의 책임 아래 자체 정정보도 등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결정, 실행한다.
- ③ 오보나 인권침해에 대해 시청자나 당사자의 항의를 받을 경우, 우선 담당 제작자가 1차적으로 대응하고 데스크 및 책임 프로듀서에게 보고한다. 필요하다면 부서장이 항의에 대해 직접 대처한다. 사실을 엄밀히 조사하여 만일 KBS에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사과하고 처리할 것인지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해당 부서장이 판단한다.

2. 언론피해자의 권리와 언론사의 항변사유

2-1. 민사적 해결

①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가. 피해자의 입증사항

-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 및 행위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는 점과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반론보도로 불충분한 경우에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한다는 측면에서, 위 법률이 정정보도 청구에 고의, 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합헌(2005 헌마 165 결정 등)이라고 판단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에서는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 언론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상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날짜가 달랐으니 그 부분을 고쳐 달라는 청구와 같이 지엽말단 혹은 사소한 사실에 불과한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예: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에 도박을 장려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재재판 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②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중재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달리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보도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언론사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반론을 게재하되 그 자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가. 피해자의 입증사항

- 피해자가 보도내용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이 성립한다. 청구인은 언론보도내용이 허위라든가 언론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나.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위 정정보도의 경우와 동일하다.【〈언론중재법〉제15조 제4항】

③ 추후보도청구권

〈언론중재법〉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 ①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 등)의 방송 방법

- 언론사 등이 피해자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모바일에 게재하여야 한다.
-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 등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 정정보도 등은 그 사실공표가 행해진 동일한 채널, 또는 홈페이지 등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다만 실제 협의과정에서 음부즈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으로 해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과 홈페이지/모바일 등에 공개한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④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민법> 상의 명예훼손 특칙

<언론중재법> 제5조(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한다)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 ① 언론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입증사항

- 피해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며 그 중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언론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이 성립한다.

나. 언론사의 거부사유

- 언론사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 ①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② 언론 보도가 진실한 사실일 경우 또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권 및 정보보도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8. 3-1. 명예훼손' 참조】
- 한편 위의 거부 논리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외 인격권일 경우에는 각 인격권의 특징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논리를 추출해 본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의 경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언론사가 입증하거나 보도가 진실성(상당성)이 있고 공익적 목적이었다면 언론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개별 사례에 따라 언론 보도의 공익성과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인격권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⑤ 금지청구권(방송금지가처분)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③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사의 보도로 인격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언론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으로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

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결정)이어야 하는바,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언론사는 방송하려는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진실(상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2-2. 형사적 해결

〈형법〉은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서 면책사유(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도 규정하고 있다.【‘8. 3-1. 명예훼손’ 참조】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처벌되지 않으므로 언론사는 〈형법〉 제310조의 면책사유를 주장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이므로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위에서 살펴본 민사적 권리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

3. 언론분쟁 처리 절차(주로 민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3-1. 자체 처리 절차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언론 보도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 등)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3-2. 언론중재위원회의 처리 절차

- ① 언론사의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위 신청(추후보도청구는 제외)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언론사에 정정보도 등을 먼저 청구한 때에는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조정제도와는 별도로 <언론중재법> 제24조 이하에서 언론중재제도도 두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와 피해자 쌍방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중재부의 중국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언론조정과는 달리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결정에 불복하지 못하는 점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② 언론중재위는 언론조정신청에 대해 i)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ii)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성립결정을, iii)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조정불성립결정을, iv)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단, 언론조정기일에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며 언론사가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 취지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
- ③ 위 i)과 iii)의 경우에는 언론사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ii)의 경우에는 조정결정문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면 된다. 문제는 iv)의 직권조정결정의 경우인데, 이 경우 당사자는 결정 정보 송달 후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어느 일방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정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어느 일방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된다. 중재부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중재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중재결정은 확정되며, 이 경우

결정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만일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에 중재불성립 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중재부는 그 결정문 정본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다.

3-3. 법원에서의 처리절차(〈언론중재법〉상의 소송절차)

- ① 피해자는 〈언론중재법〉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한편, 피해자는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과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면서 ‘...까지 정정보도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매 1일 1,00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단 강행규정은 아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 ② 언론사 패소판결에서 정정보도 등을 인용하면서 ‘판결송달일’로부터 이행 강제금을 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언론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됨을 유의해야 하며, 이러한 점 때문에 사실상 언론사가 항소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언론조정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반론보도문의 자구 수정이나 내용 축소 등을 주장하는 것이 언론사에 유리할 것이다.

사례

KBS가 패소한 1심 판결문의 내용에 '판결정본 송달 후 1주일 이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으면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매 1일 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었다. 이 판결에 대해 KBS가 항소하여 약 6개월을 지나는 동안 이행강제금이 약 5억 원에 달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반론보도를 수용하고 소송비용 보전명목으로 KBS가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4. 분쟁과 관련한 사내 조치사항

4-1. 논리적 대응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방송과 관련된 민원은 소송 이전에 직접 담당 제작자들에게 접수된다. 이 단계에서 제작자와 당사자가 주고받는 유·무형의 내용들은 모두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 요구가 있거나 언론조정 신청이 제기될 경우 합의처리를 진행시키는 것과 아울러 법률 분쟁까지 갈 경우에 대비해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고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내 법무 담당 부서와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하는 데 그 절차를 세부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등의 피해구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 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한다.
- ② 이후에 상대방이 소송절차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때는 언론중재위의 중재기록이 중요한 자료(특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많음)가 되므로 신중하게 대응한다.
- ③ 정정 또는 반론방송을 한다고 해도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정 또는 반론방송을 합의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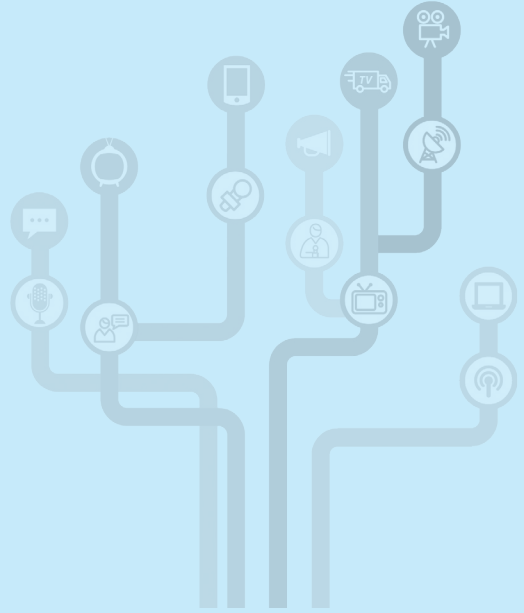
4-2. 손해배상 책임의 고액화와 내부 구상권 문제

현재 1,000~3,000만 원 선에 머무르고 있는 손해배상액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때 담당 실무자, 편성 담당자와 방송국 간의 내부 구상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일단 방송국이 전액을 배상하고 담당자들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다시 내부적으로 분담하게 된다. 따라서 오보로 인한 분쟁의 문제는 KBS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작자 개인에게도 상당한 인사상·재산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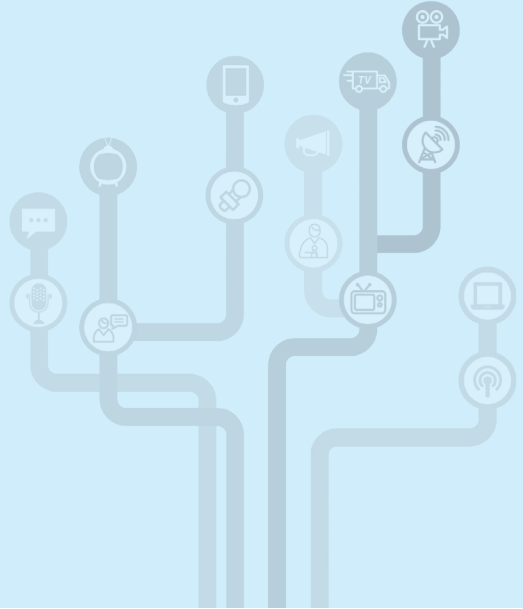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용자에게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록



- 방송기준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안내서

방송기준



제정 1973.3.3

개정 1995 3.29 규정 제562호

개정 1998.9.30 규정 제669호

개정 2002.11.27 규정 제836호

| 전문 |

한국방송공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이에 방송문화를 선도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올바른 국민여론을 형성함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기간방송으로서 공영방송 본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송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 일반기준 |

모든 프로그램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1. 최고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2. 사회적 의견과 문화의 다양성을 구현한다.
3. 오늘의 세계공동체와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시사성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방송한다.
4.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건전한 정서와 의식을 함양하고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이바지한다.
5. 전통문화를 개발하여 그 가치를 고양하며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한다.
6.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한다.
7. 한국인의 근로정신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한다.
8. 시청자들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9. 표준말과 고운말을 개발, 사용하여 우리말 순화와 발전에 이바지한다.

| 편성기준 |

1. 유형별 프로그램, 국내제작 프로그램, 외주제작 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율은 방송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하되, 특히 국가기간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편성 비율의 조화를 추구한다. <개정 2002.11.27>
2. 주시청시간대에 보도 및 교양, 교육프로그램을 가급적 많이 편성하여 오락프로그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3. 주시청 시간대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급적 최대한 편성한다.
4. 가족시청 시간대에 가족전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의 프로그램은 방송하지 않는다.
5. 어린이 및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을 오후 9시 이후에는 편성하지 않는다.

6. 프로그램 내용상 특별히 혐오감을 유발하는 장면이 포함되거나 성인대상 프로그램 중 어린이와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프로그램 방송 개시 전에 반드시 그러한 내용임을 고지한다.
7.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에 걸맞는 적절한 장기계획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방송한다.

| 프로그램 기준 |

1. 보도프로그램은 우선 공정·정확해야 하며, 개인의 자유와 명예를 최대한 존중한다.
2. 교양프로그램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유익하고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3. 예능프로그램은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과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을 밝고 윤택하게 함은 물론, 참된 윤리와 도덕성을 고취하여 건전한 생활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한다.
4. 대외방송은 우리나라의 긍정적 이미지를 고양하고 정당한 여론을 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 방송기본계획에 관한 처리기준 |

1. 방송기본계획은 가능하면 예산안 제출 시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2. 방송기본계획은 시행 1개월 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방송기본계획에 따른 세부내용(프로그램편성)은 시행 1개월 전에 이사회에 제출·보고해야 한다. 세부내용 중 방송기본계획에 변경이 있는 부분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는 보고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197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정 2008. 6.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19호
개정 2008. 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30호
개정 2010. 2.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55호
개정 2010. 8.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80호
개정 2010.11.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81호
개정 2012.12.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 90호
개정 2014. 1.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
개정 2014.12.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
개정 2015.10.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3호
개정 2016. 7.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1호
개정 2016.12.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3호
개정 2019. 9.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6., 2014.1.9., 2016.7.28.>

1.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 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4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
2.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6.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7시부터 9시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공휴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단,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18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한다.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8. “외주제작사”란 법 제2조제27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7.28.>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1.9.]

제4조(심의의 방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의 사항이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2.18.>

② 삭제 <2008.9.2.>

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심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④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⑥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⑦ 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⑧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⑨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⑩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⑪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⑫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 ⑬ 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⑭ 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⑮ 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⑯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①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기준

제1절 공정성

-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①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 ② 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

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신설 2015.10.8.>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3.]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

하여야 한다.

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제목개정 2014.1.9.]

제2절 객관성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출처명시) ①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9., 2014.12.24., 2015.1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4.1.9., 2016.12.22.>

③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④ 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⑤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2016.12.22.>

⑥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종료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가 종료된 후 방송하는 등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6.12.22.>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보도형식의 표현) 방송은 보도·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이외에서 뉴스·공지사항·일기예보 등을 발표하는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보도프로그램 등으로 오인되거나 실제상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9.23.>
- ④ 방송은 기존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9.>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인권 보호)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2016.12.22.>
- ④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4.1.9.]

제21조의2(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① 방송은 범죄사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발인, 참고인, 증인 및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사항 및 단체의 명칭·주소를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9.9.23.]

-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등)** ①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9.23.]

- 제22조(공개금지)** ①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당사자(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9.9.23.]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囚衣)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④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12.12.6.>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신설 2012.12.6, 2014.12.24.>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① 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1. 재난 등의 발생·진행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난 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난 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②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 등의 원인·책임 등을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4.>

③ 사업자가 재난 등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 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직접 취재하였음을 방송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4.12.24.>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방송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하 이 절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 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2.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피해 사실을 알기 이전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 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전문개정 2014.12.24.]

제24조의4(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방송은 피해자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해자 등의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 한 내용
2.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전문개정 2014.12.24.]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5조(윤리성) ①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생명의 존중) ①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2015.10.8.>

③ 방송은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3. 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과도한 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성행위 또는 외설적 내용 등

에 대한 과도한 표현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전문개정 2014.12.24.]

제28조(진전성)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8.]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제29조의2 삭제 <2019.9.23.>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2.>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2016.12.22.>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

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법령의 준수) ①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9.]

제34조(표절금지) 방송은 국내외의 다른 작품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2.6.]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5조(성표현)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③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 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 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6조(폭력묘사) 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14.1.9.>

④ 방송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 방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9.]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삭제 <2014.1.9.>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신설 2015.10.8.>

7.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①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흥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마약류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의2(자살묘사) ① 방송은 자살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② 방송은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은 자살자(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와 자살 미수자를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4.1.9.]

제39조(재연·연출) ①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에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을 통

해 실제상황인 것처럼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③ 방송은 허구의 소재를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제 존재했던 사건·사고가 아님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④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하거나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피해자·가해자 또는 당사자 등의 배역에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 방송은 성기, 성병, 피임 또는 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①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
2.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
3. 위험성·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4.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
5.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 등을 비교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
 7.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8.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홈페이지 등을 고지하는 내용
- ② 방송은 의료행위 등을 목적으로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상담자 또는 시청자가 증상에 따른 상담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 또는 약사(藥師)를 선정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자격과 전문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의료인 또는 약사를 소개할 때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력·전문 과목 등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한 특정인의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시청자가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8.]

제42조의2(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① 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 외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② 방송에서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문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에서의 자문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그 자문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방송 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문행위를 방송하는 때에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방송시작 직전 및 직후에 자막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방송 중에는 음성으로 이를 고지하여 시청자가 자문내용을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함에 있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9.]

제6절 어린이·청소년 보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수용수준) ①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 ②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③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출연)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잘못된 흡연·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 ⑤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 ⑥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제45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는 때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9.]

제7절 광고효과 등 <개정 2010.2.18, 2016.12.22.>

제46조(광고효과) ①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거나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2.>

1.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이하 “상품 명 등”이라 한다)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2.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3. 상품명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하거나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상품을 새롭게 제작하여 노출하는 내용

② 방송은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상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그 밖에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③ 보도·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리적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등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2.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3. 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예상수익, 사업전망, 관련 상품 등의 효능·효과 등을 보장 또는 과장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은폐·축소하는 내용

④ 방송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상품 등 또는 상품명 등의 노출이나 언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품 등을 의도성 없이 배경·소품으로 노출하는 내용
2.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하는 내용
3. 제47조에 따른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4. 제48조에 따른 가상광고 또는 가상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전문개정 2015.10.8.]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9.]

제46조의3(안내·고지 자막) ① 방송은 상품 등을 자막으로 안내·고지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8., 2016.12.22.>

1. 재난·질병·세무 또는 선거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2. 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로써 「협

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행사. 다만, 행사명·일시·장소 등 행사안내를 위한 고지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3. 사업자의 자사 직원채용·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자체 정보
 4. 수돗물·전기·가스 중단, 지역 공사안내, 성금모금 또는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
 5. 그 밖에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사업자나 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및 방송법령에 따라 고시된 공익적 목적의 정보
- ② 방송은 제1항제2호의 안내·고지 자막 및 자사 프로그램 예고자막을 지나치게 크게 고지하거나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

[본조신설 2014.1.9.]

제46조의4(중계방송 등) ①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경기장·행사장 등에 실제 설치된 광고물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반복하여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하여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단체와 공동으로 새로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자는 협찬주 및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단체의 후원사(이하 “후원사”라 한다)와 관련되는 상품명 등을 반복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자는 후원사 명칭 등에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시간이 제한되는 상품 등이 포함된 경우 그 노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가 중계방송의 결과를 보도하거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8.]

제47조(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장면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3.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②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간접광고 상품의 노출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그 밖에 간접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

③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2.>

[본조신설 2015.10.8.]

제48조(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난 등에 대한 방송이나 긴급속보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하게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다만,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되거나, 운동경기(이와 관련된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계하는 장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운동경기의 경우 선수와 심판의 장비를 포함한다) 위에 노출하는 내용. 다만, 개개인의 얼굴 식별이 어렵고,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청객이나 관중 위에 노출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의 중요한 배경·소품, 자막 위에 노출하거나 이를 변형·왜곡시켜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5. 그 밖에 가상광고를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 ② 가상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가상이미지의 삽입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상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가상광고 자막은 제외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가상광고 상품 등의 거래정보(가격, 구성, 위치·연락처, 행사기간 등 거래와 직접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를 자막(가상광고 자막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가상광고 상품 등의 구매·이용 권유정보(품질·효능·기능·보증 등 구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업적 표현을 말한다)를 자막(가상광고 자막을 제외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언급하는 내용 <개정 2016.7.28.>
 4. 출연자 등이 가상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실제로 시현하는 내용
 5. 그 밖에 프로그램 안에서 가상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③ 가상광고가 출연자 등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구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광고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2.〉

[본조신설 2015.10.8.]

제49조(시상품) ①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등에 광고 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협찬주 또는 광고주 등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으로 사용하거나 시상명과 함께 방송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거나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자가 주관·후원하거나, 사업자 이외의 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스포츠 경기를 사업자가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가상광고주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과 함께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6.12.22.〉

[전문개정 2014.1.9.]

제50조(상품판매) ①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 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 제46조 및 제46조의3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방송언어) ① 삭제 <2015.10.8.>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2015.10.8.>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9., 2014.12.24.>

제52조(외국어)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순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9.]

제9절 기타

제53조(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①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방송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된다.

④ 기부금품을 모집한 방송은 모집금액, 사용주체,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의 처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출연자의 계좌번호를 노출하는 등 등록된 모집자가 아닌 자의 기부금품 접수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9.23.>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 ① 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정보서비스 안내 시(수 회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프로그램마다)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 중 이용된 유료정보서비스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자막 및 음성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9.>

④ 생방송에 한하여 유료정보서비스가 이용된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에서는 그 이용 관련 자막이 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방송 등에서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9.>

제55조(생방송과 녹음·녹화방송의 구별) 시사·보도·토론·운동경기 중계 등의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중 일부가 사전 녹음·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방송사고)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9.]

제56조 삭제<2014.1.9.>

제57조 삭제<2014.1.9.>

제58조 삭제<2008.9.2.>

제3장 심의절차

제1절 일반절차

제59조(제재조치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기구 설치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반일시
2. 위반사실
3. 제재조치 종류
4. 삭제<2008.9.2.>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정보의 제공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① 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또는 제재조치 명령(이하 "제재조치 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② 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등은 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기구설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사자 등에게 위반사실·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의견진술을 대리할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⑧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100조 제1항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다. 사업자 등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사업자 등의 마지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7.28.>
- ⑨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연속프로그램 등) 위원회는 연속프로그램이나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회의 방송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 제재조치 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 등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 등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재조치 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7.28.>

제6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기구설치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동법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재심청구) 기구설치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 등은 법 제100조 제6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제2절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절차

제66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해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

② 삭 제 <2014.1.9.>

③ 삭 제 <2014.1.9.>

④ 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유해표시가 된 방송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한다.

⑥ 삭 제 <2014.1.9.>

⑦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⑨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효력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발생한다. <개정 2014.1.9.>

제67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위원회는 사정변경 또는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취소의 통보 및 효력에 대해서는 제66

조 제8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이의신청) ① 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갖춘 서면에 의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년월일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명, 제작년도, 제작국가, 제작사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유
4. 이의신청의 사유
5.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각하,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는 기각,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다.

제4장 보칙

제69조(방송 유사정보의 특례) 위원회는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 규정에서 정한 조항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공표한다.

제70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9호, 2008.6.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 2008.9.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 2010.2.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 201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 201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 201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 201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 201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 2015.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 2016.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 2016.12.22.>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 2019.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는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방송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이다.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 프로그램 제외)이 방송되기 전에 방송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며, 방송심의규정을 적용할 때 그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한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시 시청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정서적 발달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본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례들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방송언어 관련 심의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방송언어 관련 심의규정을 해석하는 데 방송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의 방송심의규정과 본 가이드라인이 방송내용에서 방송언어가 문제가 될 수 있

는 모든 상황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할 수는 없다. 언어는 계속 변화하며 어떤 언어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지 여부 및 해당 언어가 야기할 수 있는 불쾌감의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시청자가 속한 세대나 공동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방송사의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적 책임의 균형을 고려하며 사회통념을 존중한다. 방송사는 방송심의규정의 제정 배경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언어가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원칙

1.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송언어는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정서적·도덕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욕설 등 비속어나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편견·혐오를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은 어린이·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반 시청자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인권감수성과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진 사회 환경 변화에 걸맞은 품위를 갖춘 언어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방송은 올바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전달력 높은 발음으로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달해야 한다.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나 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어문 규범에 맞는 올바른 표현과 함께,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발음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욕설·비속어 등

3. 방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욕설·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이하 욕설·비속어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사용하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욕설·비속어 등이 방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드라마 등에서 등장인물의 특성이나 성격 묘사 또는 극의 전개에서 긴박한 갈등 상황 등을 묘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욕설이나 비속어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4. 남녀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속되게 이르는 표현, 성기나 성행위 등의 성적 표현이 포함된 내용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아야 하고,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음·삐소리·모자이크 처리한 후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방송하지 않아야 한다.
5. 공격이나 조롱·비하의 의도 없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게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욕설이나 비속어가 빈번하게 사용된 내용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방송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욕설·비속어 등에 대한 무음·삐소리·모자이크 처리가 불완전해서 해당 내용을 시청자가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무음·삐소리·모자이크 처리가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영화와 음악 프로그램

7.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방송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언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된다. 외국영화의 대사에 노골적인 욕설(fuck 등)이 포함된 경우, 한글 자막은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 기준에 맞추어 순화된 표현으로 표기해야 한다.
8. 노래 가사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표현을 편집하거나 순화하여 표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욕설이나 비속어로 인지 가능한 입모양이나 몸동작 등이 방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욕설 연상 표현

9.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니지만 발음이나 어감을 통해 욕설이나 비속어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 또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하며, 재미를 위해 의도적·반복적으로 무음·삐소리·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시청자 사연·문자·댓글 등

10. 시청자가 보낸 문자나 사연 또는 시청자 게시판의 댓글의 내용 등을 방송하는 경우, 욕설·비속어 등은 방송에서 제외하거나 순화해서 표현해야 한다.

진행자와 출연자 · 생방송

11. 방송 진행자는 욕설·비속어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출연자(고정 출연자와 비고정 출연자를 모두 포함한다)의 경우도 욕설·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출연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이를 방송에서 제외하거나 순화해서 표현해야 한다. 생방송인 경우 진행자가 상황에 맞게 발언을 제지한 후 순화된 표현을 제시하고 그 사용을 요구하는 한편, 시청자에게 적절한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당 발언의 성격이나 맥락에 따라 진행자의 제지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자막

12. 욕설·비속어 등을 자막으로 표기해서는 안 되며 일부가림처리(X자 표시, 아이콘 등)를 했더라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재미를 위해 의도적·반복적으로 일부가림처리 자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의도적·반복적으로 무음·삐소리·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욕설이나 비속어에 노출된 것과 유사한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무음·삐소리·모자이크 등 처리했더라도 자막 내용 등으로 해당 욕설이나 비속어를 상당 부분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심의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보 제공이나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차별적 언어

13.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외모 등 신체적 차이, 장애,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지역, 신념, 종교, 인종, 민족, 국가 등과 관련하여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조롱·모독·비하하는 차별적 언어의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막

14. 차별적 언어를 자막으로 방송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보 제공이나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화와 드라마

15. 인권 의식이 등장하기 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차별적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표현이 지나치게 반복적인 경우 이를 방송에서 제외하거나 순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안내서

출처: 여성가족부

방송사는 양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 윤리강령과 제작지침, 심의기준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매체별, 장르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가족유형별로 다양한 묘사와 재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방송사는 자체 제작, 외주 제작, 프로그램 구입 등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재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송사는 제작진과 출연자에게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방송사는 의사결정, 인적 구성, 기획·제작 과정 등에서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

된 동등한 참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방송 제작 준수 사항

하나. 주제 선정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1. 뉴스, 토론, 교양과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특정 성의 시각이나 관점이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2. 특정 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소재로 한 방송을 제작할 경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단순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의 인터뷰 대상, 초점보도 대상, 출연자 등이 성별로 균형 있게 대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남녀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특정 성이 보조 혹은 장식적인 역할만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양성의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1.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남자는 씩씩하고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는 등의 이분법적인 묘사나 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프로그램 내레이션이나 자막, 배경 등에 성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3. 한 성이 다른 성을 보조하거나 능력이 뒤처지는 존재로 보여지지 않도록 합니다.
4. 개인의 성취를 묘사할 때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 등 서로 다른 기준을 강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등장인물의 직업이나 지위를 획일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여성만의 책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봅니다.
7. 전통적인 성역할과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이나 여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여성이나 남성의 아름다움을 획일적인 잣대로 규정하고 특정 외모를 혐오의 대상으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9. 한부모·비혼모·조손·이혼·독거·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1.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선정적인 볼거리로 묘사하지 않도록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2. 성범죄를 관용적인 시선으로 다루거나 성희롱과 신체적·언어적 성폭력, 가정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테이트 폭력, 이별 후 폭력 등을 사소한 일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4. 성범죄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5. 성폭력 피해를 순결이 훼손된 일 또는 수치스러운 일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1.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것을 바람직한 남성성으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것을 바람직한 여성성으로 묘사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특정 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특정 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외모 열등감을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색인어	Page	색인어	Page
K		공정성	13
KBS가 실시하는 방송 이벤트	218	공평한 대우	123
KBS의 방송규범	1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30
M		과거 자료 사용 시 주의 사항	184
MC와 출연자의 발언	116	관련 자료 보관	256
ㄱ		국무위원의 방송 출연	135
가상광고	213	균형성	14
가상광고 시 주의점	214	그래픽 및 영상의 가공	118
가상광고에 대한 심의규정	213	그래픽 이미지 자료	198
가이드라인의 의미	9	글로벌 스탠다드의 준수	244
가치판단의 문제	134	글로벌화와 국제 협력의 증진	19
간접 광고	124	기술, 생활과학, 소비자	173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규정	212	기습적 인터뷰	104
감염병 보도	184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233
개인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 원칙	204	기타 인격권 침해	53
검증 보도	139	L	
경제 뉴스 및 프로그램 기준	152	노인	31
경제 프로그램과 이해관계	152	논리적 대응의 필요성	273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234	ㄷ	
계약 해제의 문제	237	다양성	15
공공장소의 예술작품	229	단편적 정보 보도 시 주의 사항	181
공명선거 보도	141	당사자 불특정	56
공식 발표자료 보도	180	대중문화 프로그램	156
공식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 원칙	205	대처 방법	241
공익성과 상당성	58	동반취재	81
공익성과 진실성	57		

색인어	Page
□	
면책특권	135
명예훼손	51
무죄 추정의 원칙	66
문화와 예술 부문의 취재 프로그램	156
미성년자	124
민사적 해결	264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평화 공존·통일 지향	18
ㄴ	
방송 기획의 제한	29
방송 이벤트	217
방송 이벤트와 협찬	217
방송 종료 후 영상자료의 처리	200
방송기준	277
방송심의	25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81
방송심의와 평가	251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317
방송에 의한 피해 구제	263
방송의 사후 처리	255
방송의 영향	36
방송평가	253
방청 출연	122
번역 더빙	117
범죄 전과나 시효가 만료된 사건	72
범죄 피해자의 인권	71
범죄에 대한 보도 및 방송	66

색인어	Page
보도 및 취재 시 유의점	44
보도영상의 외부 제공 시 유의점	196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228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228
보호자의 동의	36
북한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33
분쟁과 관련한 사내 조치사항	273
비밀취재	61
비밀녹음	64
비밀촬영	62
비윤리적 취재 금지	182
ㄹ	
사실, 의견, 진실	21
사회통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16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준칙 체계화	187
소셜 미디어 이용시 주의사항	203
생방송	127
선거 관련 방송 사항	147
선거 여론조사 보도	142
선거방송에 이용되는 여론조사	87
선거방송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135
선거법 준수	138
선거보도의 기본원칙	136
선정적 보도 지양	181
선정적인 소재 선택 및 표현	26
섭외	100
섭외 시 인터뷰에 대한 반대급부 요구	101

색인어	Page	색인어	Page
섭외가 없는 인터뷰	102	언론분쟁 처리 절차	270
성 표현	24	언론중재위원회의 처리 절차	271
소년법	77	언론피해자의 권리와 언론사의 항변사유	264
소비자 부문	175	언어	26
소수에 대한 배려	132	여론조사	85
소수자 차별 방지	29	여론조사 결과 해석 및 보도 시 유의할 점	90
손해배상 책임의 고액화와 내부 구상권	274	여론조사 방법	86
스포츠 취재	193	여론조사 보도	89
스포츠 프로그램 협찬	221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검토사항	89
시, 소설, 수필 등 문예 작품	238	여론조사의 감리	8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230	여론조사의 기획	85
시청자 서비스	259	여론조사의 방법 및 감리	86
시청자 요구 및 항의 전화에 대한 대응	262	여성	31
시청자 전화 참여	128	연예인	123
시청자 제공 자료	198	영상물(영화, 비디오, 사진 등)	240
시청자 존중	260	영상의 가공	118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기준	260	영상자료 관리	196
시청자 항의 처리와 서비스	261	영상자료 이용 절차	195
신기술과 기상 정보	174	영상자료의 이용	195
신속한 보도	179	영상자료의 이용과 처리	195
신중한 표현	115	영상취재와 편집	144
실명과 익명	72	예고 프로그램	116
실명보도 원칙	72	예방 정보 제공	184
실명보도의 폐해와 익명보도의 원칙	73	오락 프로그램에서의 비밀촬영	64
심신 장애자	73	오류정정	186
		오보와 분쟁의 자율 규제	264
		오프 더 레코드	93
○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96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35		

색인어	Page	색인어	Page
오피 더 레코드와 폴 취재	93	익명	37
오피 더 레코드의 성립	94	익명성 보장을 위한 영상가공	119
오피 더 레코드의 종류	94	익명을 사용할 경우의 호칭	74
외부 제작요원	248	인격권 침해 방지 방안	56
외부자료 사용	198	인격권의 침해	51
외주 프로그램 관리	249	인권에 대한 배려	111
외주제작 담당 프로듀서의 책임	247	인권의 존중	15
외주제작 및 외부 제작요원	247	인서트 화면과 영상자료의 구별	197
외주제작사	248	인터넷 홈페이지 등 운영	261
유괴·인질사건	78	인터넷/모바일 전용 콘텐츠	243
유사 여론조사	91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에서 저작물 이용	242
유언비어 발생 및 확산 방지	180	인터뷰	99
음성과 음향	114	인터뷰 준비	100
음성의 가공	115	인터뷰 취재	102
음식과 조리	169	인터뷰 편집	113
음식을 소개할 때의 제작자 유의사항	170	인터뷰시 사전 설명	103
음식의 효능, 효과와 관련된 유의사항	172	인터뷰시 사전에 알려야 할 사항	127
음식재료의 선택과 가공에 관한 유의사항	170	인터뷰에 대한 간섭	103
음악 저작물의 이용	239		
음악과 음향	114	ㄱ	
음악의 사용	114	자막	118
의정활동	134	자연	159
의학 프로그램	174	자체 처리 절차	270
이미지컷	113	작가가 쓴 원고	116
이상과 현실	132	잠입취재	80
이용 대가와 지불 방법	237	잠입취재와 동반취재	80
이의제기 종류	241	장애인 출연자	42
이주민과 외국인	33	장애인	30

색인어	Page	색인어	Page
장애인에 대한 묘사	43	정치 보도의 실제	134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41	정치와 선거	131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44	정치인	123
재난관리 당국과의 협조체제 구축	186	정치인과의 신뢰관계와 유착관계	133
재난방송	177	정확성	13
재난보도의 목적	177	정확한 보도	179
재난보도의 적용 범위	178	정확한 용어와 개념, 단위의 사용	164
재난보도준칙 교육	187	제보자가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녹취한 자료	64
재송출에 따른 유의사항	243	제작 관련 소요경비 집행	256
재송출에 따른 주의 의무와 글로벌	243	제작자의 검토사항	95
저작권	226	제작자의 윤리	47
저작권 관계 유의 사항	198	제작 콘텐츠(UCC)	244
저작권 보증	234	조리 관계자에 관한 사항	171
저작권 보호의 예외	227	조리에 관한 유의사항	171
저작권 침해 등 이의 제기 시 대응	241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89
저작물 이용방법과 범위	235	중계제작 프로그램	191
저작물 이용절차	233	중립성	15
저작물의 공정 이용	232	중복·편중 보도 지양	184
저작물의 이용	237	진행자	121
저작물의 종류	226	질문자의 태도	102
전도자금 정산	255		
전문가	124	ㄷ	
전문가의 취재 협력	165	차별 방지의 대상	30
전통 문화·예술 프로그램	156	차별적 표현에 대한 사과와 정정	34
전화의 차단	128	출구조사	88
정당과 후보의 보도 순서	141	출연 내용 변경 시 통보	257
정보와 간접광고의 구분	213	출연 녹화물 제공	257
정책과 인사	134	출연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	38

색인어	Page	색인어	Page
출연, 인터뷰 시 주의점	36	토론 참가 거부자	125
출연료 처리	257		
출연의 제한	123	ㄷ	
출연자 관련 업무처리	256	편견과 고정관념	29
출연자 명부 관리	258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	12
출연자에 대한 예우	256	편집과 방송의 약속	103
출연자의 불만에 대한 처리	257	편집과 포스트 프로덕션	111
출연자의 섭외	122	편집의 객관성 유지	111
출연자의 용모	124	편집의 공개 여부	112
출연자의 익명성 보장	125	편집의 권한과 책임	112
출연자의 촌지	258	평등과 형평	132
출연자의 출연 관련 자료 반납	257	폭력과 범죄	25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186	표현과 윤리	23
취재·편집 시 유의 사항	166	풀(pool) 취재	97
취재와 인권	47	프로그램에서의 자료 활용	135
취재원 보호	48	프로그램의 권리 귀속	236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익명보도 원칙	49	피해 최소화	177
취재원 비닉권의 부정	49	피해자 배려와 인권 보호	182
취재원에 대한 검증	182		
취재원의 명시	48	ㄹ	
취재진 안전 수칙	188	함정취재	83
ㅋ		해설자	122
캠페인 스팟 협찬	220	해외취재	107
컴퓨터 그래픽(CG) 사용 시 주의 사항	186	행정 처리	255
큐시트 및 대본 보관	256	향응 또는 촌지의 수수	104
		현장 데스크 운영	187
ㄴ		협찬품 관리	219
		협찬품 운영	220

색인어	Page	색인어	Page
협찬품의 기준	219	환경 위해성 평가	164
형사적 해결	270	환경비용과 편익 분석	165
호칭	74	회화, 조각, 서예 등 미술 작품	238
혼란 방지	178	후보의 방송 출연	146
환경 세부 분야	166	후보자 토론	148

KBS  **한국방송**

2020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발행일 : 2020년 9월 3일

발행인 : 양승동

편집인 : 유건식

기획·총괄 : 강영희(공영미디어연구소)

편집위원 : 강영희(공영미디어연구소)

(가나다순) 김명숙(편성전략국)

김신우(제작2본부)

박서현(심의실)

양종우(법무실)

유건식(공영미디어연구소)

이광열(보도본부)

이지운(제작1본부)

최지원(성평등센터)

하동철(공영미디어연구소)

홍순영(라디오센터)

황응구(디지털미디어국)

자문 : 이재진 교수(한양대) · 양승찬 교수(숙명여대)

교열 : 강성곤(아나운서실) · 최용수(공영미디어연구소)

표지디자인 : 김종욱(디지털미디어국)

발행처 : KBS 한국방송

주소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http://www.kbs.co.kr>

전화 : (02) 781-1000

제작 : 명기획 (02) 2278-5846

| 비매품 |